

2 권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여성경제활동 증진

2006. 10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협조부처 :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 I. 추진배경

❖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켜 양성이 자원과 권력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책 혁신시스템 구축

- 정책에 있어서 남녀별 정책적 요구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품질 향상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잠재인력 활용을 제고하여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

□ 1995년 UN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성(gender)과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이 행동강령에 명시

※ 제4차 UN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제204조)

-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정책 결정의 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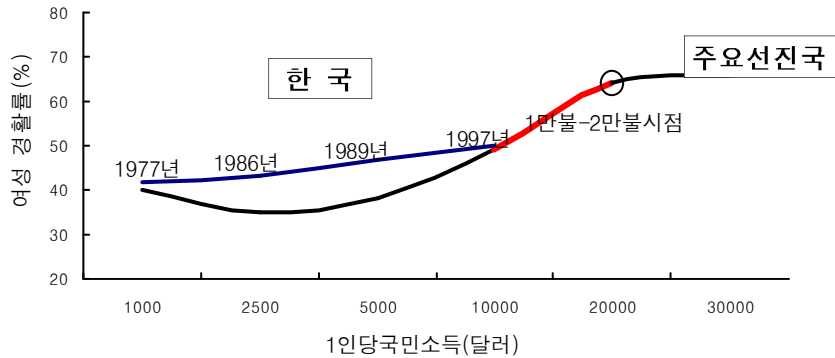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정책과정에서의 몰성적(gender-blindness) 행태 여전

⇒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재구조화 전략 필요

※ 현재 영국, 캐나다, UN, ILO 등 약 40여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별영향평가 시행 중

□ 소득 1만불에서 2만불의 성장시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1만불 달성 이후 10년간 여성경제활동율은 1.4%p 증가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2만불을 달성한 선진국의 경우 성장시기 중 여성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확대

- 노르웨이: 56.7%→70.7%, 스웨덴: 69.1%→80.1%, 미국: 53.7%→63%

- 출산율 저하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전
- 특히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고학력 여성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노동력 부족에 대응

※ 현재 약 1백만명의 대졸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여성 1인당 대졸자의 투자비용을 204.5백만원으로 추정할 때 잠재적 투자손실은 약 204조원 이상으로 추정

## II. 현황과 전망

### 1.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기존의 성 역할을 수용하는 정책에서 1980년대 이후 양성평등 (gender equality)을 이념으로 하는 여성정책으로 발달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95),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립('98),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99), 여성부 설립('01), 성매매방지종합대책('02) 등

○ 그러나 여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부처의 낮은 인식, 남녀평등적 정책 형성을 위한 전략이 부재

-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 도구 마련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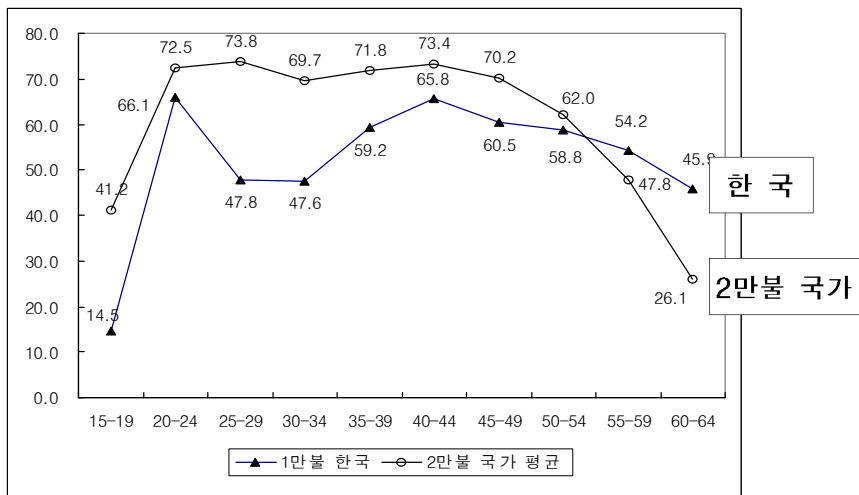
□ 정책의 품질 향상과 정책 고객 집단의 특성에 맞는 정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 증대로 **성별영향평가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증대**

○ 각 기관별로 정책 수립 시행의 기반이 되는 **남녀별 통계 생산·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양성평등 정책 형성 관련 교육 수요가 증가할 전망

## 2. 여성경제활동 증진

□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와 40대가 가장 높고 출산연령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M-curve형태임

<우리나라와 2만불국가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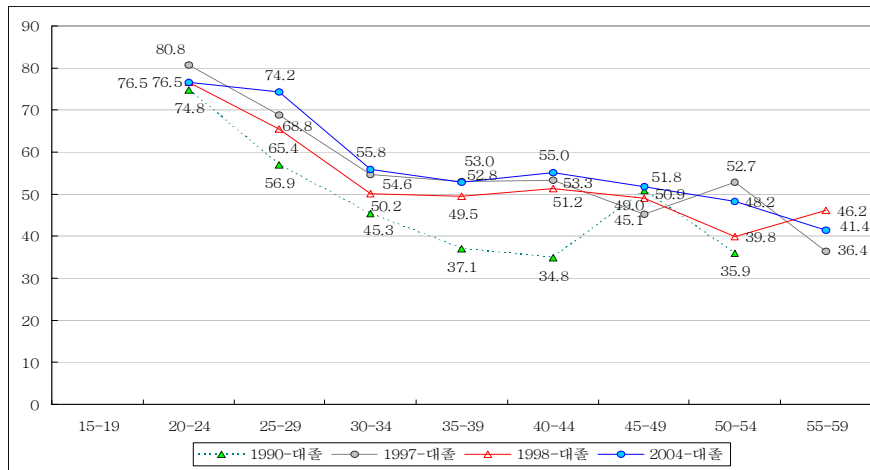


※자료 : OECD(2003), 통계 On-line

○ 특히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57.1%(15-64세)로 OECD 회원국 평균 78.4% 보다 21.3%p 낮음

- 대졸이상 여성 중에서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혼 고학력 여성 인력의 활용은 비슷하나 기혼 고학력 인력의 활용이 극히 낮음
- 대졸이상 여성의 참가율은 20-24세를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육아부담이 완료되는 연령에도 재취업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임(L-curve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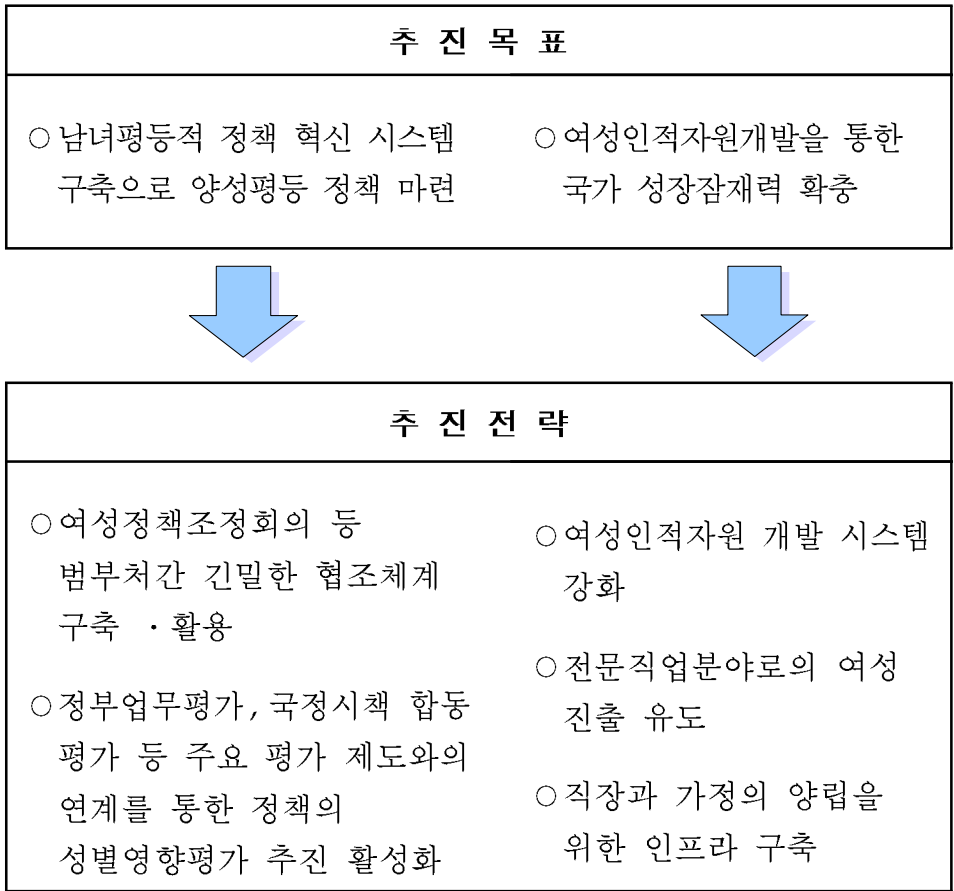
<대졸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 대졸 여성인력 활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결혼 및 출산에 따른 퇴직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인 정책마련, 중장년층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마련,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 완화가 시급함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서비스 수요증가, 여성의 고학력화 및 전문직 증가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서는 여성 차별시정정책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육정책 등의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가능
  - 특히 대졸 여성인력 활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분야별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문화관광, 교육, 공공부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부가가치 전문 사회서비스 부문의 전략적 일자리 창출 필요

### Ⅲ. 목표와 전략



### Ⅳ. 중점 추진과제

#### 1.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활성화

##### 현황과 여건

-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02.12)

—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제1항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개정('03.3)

※ 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10조제1조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심층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04.8월~'05.2월)

-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 기타 형사 및 문화 분야의 10개 주요정책 대상

< 2004년 심층 평가 과제 >

1	수형자 직업훈련 정책	법무부	6	국가 암 관리 정책	보건복지부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법무부	7	재직자 직업훈련 정책	노동부
3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	과학기술부	8	서울시 복지정책	서울시
4	농업인력 육성 정책	농림부	9	충북 장애인 정책	충청북도
5	문화기반시설·생활체육시설	문화관광부	10	전북 노인 정책	전라북도

## ○ 범정부적 성별영향평가 추진('05.3월~)

-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구축 및 기관별 평가 추진
  - 57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3월~)
- 200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지원(4월~8월)
  -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위원의 자문
  - 평가 과제의 적절성 협의

## ○ 주요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제도화

- 「2006년 예산안 편성 지침」 개정('05.3)
  - ※ 「2006년 예산안 작성 세부 지침」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04년에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지적내용과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세출 관련 사항' 중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 요구' 신설
-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중 관련 내용 삽입
  - 정책형성단계의 점검 사항에 '규제, 환경, 부패, 교통, 성별영향평가 등과 그 대책' 포함
- 법제업무 심사 관련 법제처 내부 지침 마련('05.5)
  - 성 차별적 규정 심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정리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법령 심사시 유의 사항」 마련
  - ※ 기본방향
    - ▶ 성별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의 극복
    - ▶ 성별의 차이 고려
    - ▶ 양성의 동등한 참여의 보장

## ○ 2005년 심층 성별영향평가 추진('05.8월~12월)

- 77개 과제 중 8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모범 성별영향평가 사례 발굴

< 2005년 심층 평가 과제 >

연번	기관명	과제명
1	행정자치부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
2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
3	문화관광부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사업
4	노동부	○취업 애로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
5	부산광역시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정책
6	대전광역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7	경상남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8		○아름다운 도시계획 수립

○ 2004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 실적 점검

- 평가 결과 보고서 배포 및 정책 개선시 반영 요청
  - ※ 2004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 실적
- 여성 수형자 대상 정예훈련과정 신설('04.12)
-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촌관광마을 사업 추진시 여성 참여 확대 제도화
-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여성과 유아를 위한 편의·보안 시설 확충 지도
- 국가 암 발생 통계 발표시 남녀별로 분리하여 분석('05. 4)
- 재직자 훈련 중 수강지원금 사업 지원 확대('05.1)

□ 문제점

○ 일률적인 성별영향평가 적용으로 인한 평가 추진상의 애로

- 정부업무평가 지표상 모든 중앙행정기관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업무 성격상 적절한 평가 대상을 찾기 어려운 기관이 존재
  - ※ 평가 적용 대상은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나 '05년 11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37개 기관만 참여(지자체는 100% 참여)

○ 기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중요 사업에 대한 평가 부재

- 한국전력 등 공기업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현행법상 성별 영향평가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평가 과제 선정상의 문제점

- 기관별로 평가가 용이한 과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제한된 사업이 평가 대상이 되는 결과 초래

○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예산 및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환류 방안은 있으나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역부족

○ 체계적 관리 시스템과 인적·물적 자원 부족

- 각 기관의 평가 추진 과제 및 환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미흡
- 국내 성별영향평가 전문가는 극히 소수이며 심층 성별영향평가 예산 변동 폭이 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움.

□ 개선 방안

○ 탄력적인 성별영향평가 적용 기준 마련

- 단순 집행 업무가 대부분이거나 평가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소수인 기관은 소관 업무의 성격에 맞게 성별영향평가 제도화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매년 초 우리부와의 협의를 통해 당해년도 평가 참여 제외

○ 성별영향평가 적용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기타 공공기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 시범 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

## ○ 평가 과제 선정 방법 개선

- 주요 정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자체 평가과제 선정기준을 강화
- 심층 평가 과제를 관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소관 기관에 제시

## ○ 성별영향평가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기관별 평가 계획 및 환류 실적 관리, 컨설팅 제공, 심층 평가 추진, 우수 사례 발굴, 전문 요원 양성 등을 위한 관리 기관 운영
- 성별영향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 내실화 및 전문요원 양성

- 지역별, 정책분야별 성별영향평가 전문요원(공무원 포함) 양성
- 표준화된 성별영향평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교과목 개설

## ○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 제도화 방안 마련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참여 실적을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
- 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과제는 코드화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행 상황 지속 점검
- 정부업무평가, 국정시책합동평가 등 주요 평가제도와 연계 추진
- 예산편성지침,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내용 강화

### 성별영향평가 관련 2005년 제도 개선 사항

#### ○ 2006년 예산안 편성 지침 개정

- '세출 관련 사항' 중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 요구' 신설

#### ○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중 관련 내용 삽입

- 정책형성단계의 점검 사항에 '규제, 환경, 부패, 교통, 성별영향평가 등과 그 대책' 포함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

- 모범 평가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제공
- 대국민 홍보를 통한 모범 평가 사례 소개

□ **예산**

- 매년 5~6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지침 개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보급
-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종합 평가를 통한 모범 사례 발굴

(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015
	확정예산	추정예산	추정예산	추정예산	추정예산	추정예산
공공부문	380	380	380	380	380	1,900
민간부문	-	-				
계	380	380	380	380	380	1,900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일정
도입기 (2005~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대상 정책 선정 기준 강화 및 선정 절차 개선</li> <li>○ 여성정책 추진 체계와 연계 강화</li> <li>○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범 적용</li> </ul>
정착기 (2007~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평가 관리 기구 지정·운영</li> <li>○ 성별영향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li> </ul>
발전기 (2009~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공공부문(공기업 등)으로 평가 적용 확대 검토</li> </ul>

## 2. 여성취업 확대 및 차별개선

### □ 현황과 여건

- 고학력 청년 여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5개 대학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정하여 정부가 지원
- 비경제활동여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은 지자체 소속의 여성회관(117개소) 및 여성인력개발센터(50개소)에서 전담
-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직여성가장창업지원'(노동부) 등을 시행
- 남녀임금격차 등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시행(노동부)

### □ 문제점

- 전국 5개 대학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정부 지원은 전국 4년제 대학 대비 2.5%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센터의 양적·질적 확대가 시급
-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재취업 희망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회관은 단순직종 및 전통적 여성 직종 중심의 단기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인원 및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제한된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기능이 취약

### □ 개선방안

- 고학력 여성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여대생 직업·진로교육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확산 및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 사업 확대 추진 필요

- 5개 대학에서 시범추진하고 대학 내의 여성인력개발 사업의 표준화를 기하며 대학-노동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본격적 확산 추진

※ 5개 대학(4억원) → '06년도 12개 대학(10억원)으로 확대

- 지역의 여성 구인수요와 산업구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며, 성공사례를 지역대학, 센터 등에 보급

※ '05년도 주요프로그램 : 문화예술관광 코디네이터(강릉대), 건강기능식품컨설턴트(연세대), 한지공예전문교육강사(전북대) 등

※ 360명, 3억원('04년) → 1,500명, 14억원('05년)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서비스 영역 직업훈련 실시와 중소기업 여성취업 지원강화, 전업주부 직업성취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실시

- 여성 친화적 일자리인 생태·문화가이드, 생활교육사, 아동 심리상담사 등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유망직종을 발굴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

※ 1,200명, 5.1억원('04년) → 1,500명, 12억원('05년)

- 중소기업 여성 취업지원사업에서는 특별한 기술·기능 없는 여성들에게 단기직업훈련(세무회계, 텔레마케터 등)을 실시한 후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 시행

※ 3,700명, 20억원('04년, 추경) → 1,000명, 5.1억원('05년)

- 전업주부 직업성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신감 회복 및 재취업 의지 강화와 동시에 구직활동 방법과 요령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실시하고 센터, 여성회관 등 직업훈련기관에 보급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업무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

○ 여성 직업훈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의 여성직업훈련 강화, 여성직업훈련 관련 기관간의 포괄적인 지원망 구축사업이 필요

-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의 평가 시 여성 훈련실적 및 성과를 반영하고 인센티브 지급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
- 여성직업훈련 관련 기관간의 포괄적인 지원망 구축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중소기업협의회, 상공회의소 고용안정센터 등 유관기관을 포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지역 내의 채용알선기관-직업훈련기관-기업체 등 취업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직업훈련의 성과를 향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 3. 분야별 고급 여성인력 양성

#### □ 현황과 여건

- 정부의 여성 고용률은 41.6%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8% 보다 낮고, 전체 여성공무원 중 5급 이상은 5.3%(남성 20.8%)에 그쳐 여성의 상위직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 고급 여성인력 양성의 선도부문인 대기업·공기업의 여성 고용률이 2004년에 공기업 20.9%, 대기업 33.3%, 1,000인 미만 기업 37.3%로 저조하고, 특히 관리직 등 고위직 비율은 2.6%('04년)로 대단히 낮은 수준
  - ※ 공기업 관리직 비율 : 한국 2.6%, 영국 31.5%, 독일 34.5%, 싱가포르 25.8%
- 2003년 현재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소 내 여성과학인의 비율은 6.5%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연구개발 인력 중 여성 비율은 11.6%에 불과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인력 진출이 저조함

#### □ 문제점

-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 남성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과학자채용목표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소 내 여성과학인의 비율은 200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하고, 2003년 연구개발 인력 중 여성 비율은 11.6%에 불과하여 인력 양성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 개선방안

- 여성 공무원의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충원 정책과 여성관리자 임용 지속적 확대 정책 등을 추진
  - 정부직에 여성 임용확대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지속 추진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02~'06) 및 기관별 여성 국·과장(급) 1명 이상 임용추진
  - 기획부서에도 여성을 보직토록 권장하는 등 주요보직의 성별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여성공무원의 경력 및 능력개발 강화
- 대기업·공기업 등의 고용평등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 및 정부조달업체는 여성고용목표를 자율적 수립·이행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는 고용평등계획 등 제출 제도 본격 실시
- 이공계 여성인력의 육성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등의 인력개발정책을 확대추진하고, 여성과학 기술인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
  - 25개 정부출연연구소에서 99개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으로 확대 실시('03.4)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확산 추진
  -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04~'08)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제2차 기본계획('09~'13)을 수립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계속 추진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매년 여성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

## 4. 가정과 직장 양립인프라 구축

### □ 현황과 여건

- 우리나라 여성 임금노동자의 구성을 보면 20-25세 비중이 가장 높고, 40-45세의 비중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들이 직장 내 모성보호의 부족,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이 비용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지나치게 높은 양육 책임을 지우고 있어 취업모가 양육과 경제활동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형편

### □ 문제점

- 육아비용의 가계소득대비 비율은 8.3%이며, 비용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이 58.1%에 달하고 있어 육아비용으로 인한 개별 가계의 부모부담이 과다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육아비용 지출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가계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
-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비율이 직장여성 출산자의 약 70%(2003년) 정도이며, 유사산 휴가제·태아검진휴가 등의 모성관련 휴가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등 임신 및 출산 중 모성보호의 사회적 분담화가 미흡
-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 및 가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의 협력이 중요한데 가정친화적인 기업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음.

## □ 개선방안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이용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본보조금 도입(2006년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
- 보육서비스를 확충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추진
  - 0~4세아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07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까지 확대 추진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보육료를 면제하고 이외 계층은 소득수준별로 80~30%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을 '07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은 우선적으로 '06년부터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서 동시에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동생의 보육료 지원 비율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 '05년 지원수준: 0~1세(6만원), 만2세(5만원), 3~5세(3만원) 지원
-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양성 평등한 양육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90일)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중소기업부터 우선시행('06)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06. 1. 1. 시행)
  - 유·사산 휴가 및 태아검진 휴가를 관련법에 규정하는 등 기타 임신, 출산제도를 법제화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은 5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06년)하고, 육아휴직의 부모할당제 또는 아버지 휴가제 등의 양육책임 양성평등 정책의 제도화를 추진

○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정책 추진 요망

- 가족 친화적인 기업에 대하여 '06년부터 '가족 친화적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 가족휴가제, 가정의 날 지정, 직장내 수유시설 확대 등 가족 친화적 근무여건이 민간 기업에 도입되도록 제도화 추진
- '05년부터 정부기관에서 시범실시 중인 시차 출퇴근제 등의 탄력근무제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확대한 후 민간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고, 여성의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 개발·보급을 추진

□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합 계	1,844,850	2,415,554	3,073,341	3,767,856	4,206,190	15,307,791
취업지원 서비스	4,419	4,819	5,219	5,169	4,719	24,345
고급여성인력 양성	1,800	2,000	2,500	3,500	3,500	13,300
인프라 구축	1,838,631	2,408,735	3,065,622	3,759,187	4,197,971	15,270,146

□ 추진일정

- 2006년~2010년 추진 과제별 추진일정
  - 대상별 취업지원 서비스 확충

연 도	추진 일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확대(5→12개)</li> <li>○ 직업훈련 기관의 협력강화와 취업연계 기능 강화 방안 마련</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본격적 확산</li> <li>○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li> <li>○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취업 지원의 본격적인 확대</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회관 등 여성 직업훈련 유관기관을 포괄한 지역협의체 구성</li> </ul>

- 분야별 고급 여성인력 양성

연 도	추진 일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 및 종업원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 고용평등계획' 수립 의무적 시행</li> <li>○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06년 15%)</li> <li>○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역 센터 2개 운영</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07~'11) 시행</li> <li>○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역 센터 4개 운영</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역 센터 8개 운영</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09~'13) 시행</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10년 20%)</li> </ul>

- 가정과 직장 양립 인프라 구축

연 도	추진 일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li> <li>○ 농어촌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li> <l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90일) 전액 국가 부담 실시</li> <li>○ 가족 친화적 기업 인증제 실시</li> <li>○ 배우자 출산휴가제 실시</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세아 차등보육료 지원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까지 확대</li> <li>○ 만5세아 무상보육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까지 실시</li> </ul>

## V. 추진체계

### ■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2-1-1.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수
2-1-2 여성취업 확대 및 차별개선	취업 프로그램 교육 이수율 및 취업률
2-1-3 고급 여성인력 양성	관리직 여성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 달성도
2-1-4 인프라 구축	정부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 만 5세아 무상보육 실시율

#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2006. 10

- 소관부처 : 농 립 부
- 협조부처 : 환경부,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산림청



## <요 약>

### 농업부문

#### 1. 현황 및 필요성

##### □ 생산성 증대가 농가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해 부채문제 등이 심화

- 국가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 가중
- 규모화·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한데 비해 소득안정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
- 교육·의료 등 열악한 농촌생활여건이 인구감소를 유발하고, 인구감소는 생활편의시설 유치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 초래

##### □ DDA 협상의 초점은 개방의 여부가 아니라 개방의 속도와 폭에 있으므로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특단의 국내 대책과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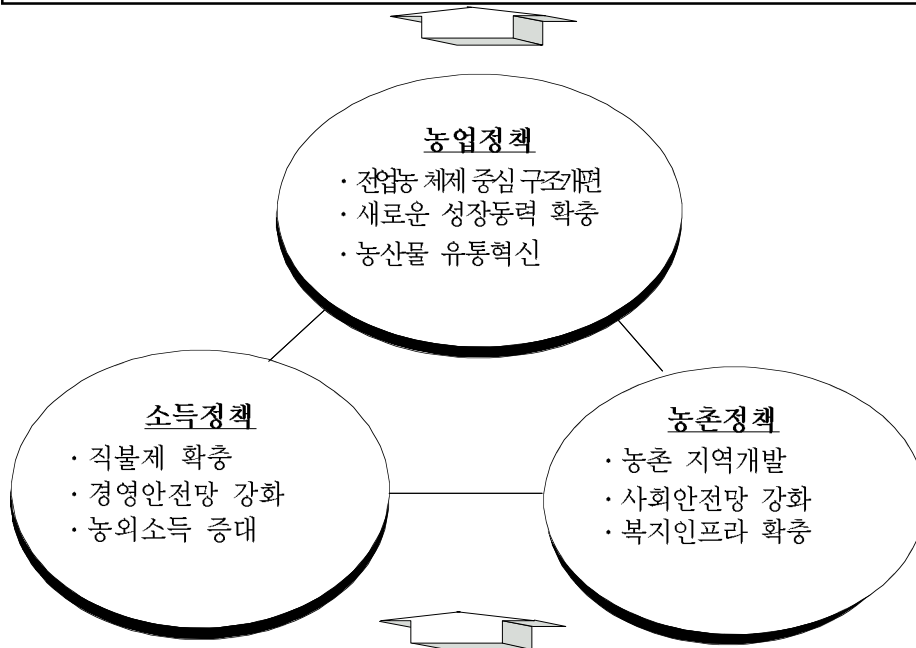
- 구조조정을 완료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개방피해 보완, 구조조정·체질개선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하는 상황
- 개방의 영향으로 급격한 소득하락이 불가피하여 직접지불제 확충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이 시급

## 2. 비전과 전략

〈비전〉

<b>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 업 :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li> <li>◇ 농업인 :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li> <li>◇ 농 촌 :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li> </ul>

〈정책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농업정책과 사회정책의 혼재 → 엄격히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시장원리, 농업인과 농촌: 소득·복지 정책으로 대응</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재정의 산업간·부문간 이익 조정자 역할 강화</li> <li><input type="checkbox"/> 농업인·지자체·정부 등 농정주체간 역할 분담</li> </ul>
--

### 3. 중점 추진과제

#### □ 농업의 체질 강화

##### ○ 시장을 지향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중점 육성
- 전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 규모화 촉진
- 시대 변화에 맞게 농지제도를 혁신
- 수익자 위주의 선진 농업금융제도로 개편

##### ○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고품질 농업으로 발전

-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
- “농장부터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
  - 거점 시설 중심으로 산지 유통을 계열화
  - 시장 영향력을 갖는 파워 브랜드 육성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
- 가축질병 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의 불안 해소

##### ○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 농업혁신을 주도할 기술개발 촉진
-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
- 본격적인 수출농업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
- 농업경영·IT 접목으로 과학영농과 영농효율화를 뒷받침

##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충
- 농가 경영 위험 관리 시스템 강화
  -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사전적 재해 예방 및 사후적 희생 지원 강화
  - 가격 하락에 대비한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정착
- 다양한 농외소득원 적극 발굴
  - 농촌 어메니티 증진 등 농촌관광 활성화
  -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 소득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교육·의료 등 기초복지인프라 확충
  - 농촌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 농어촌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 여성농업인·노인복지 강화
-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 거점개발형 지역개발 전략 추진
  -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 투자유치·인력 유입 촉진

## 임업부문

### 1. 산촌 개발·보전

#### □ 현황과 여건

- 대외적인 경쟁과 개방의 확대로 산촌의 소득과 경쟁력 악화
- 도시화로 상실한 자연, 건강, 청정 농·임산물에 대한 공급처로 산촌지역이 새로운 가치로 재조명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양수요 증가와 웰빙,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고조로 산촌의 조용함, 여유 등 어메니티가 부각됨.

#### □ 개선방안

- 산촌지역주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로 산촌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산촌진흥의 혁신적 주체로 육성
- 산촌진흥지역을 거점으로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개발하여 파급효과를 거양
- 지역의 특산 임산물의 가공·판매, 다양한 산촌자원(자연, 문화, 관광)을 활용한 산촌 녹색관광 도입 등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외소득 증대

### 2. 임업 기술보급체계의 개선

#### □ 현황 및 여건

- 임업기술보급 지도 사업의 특정

- 산주와 임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인 산림조합에서 주관함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밀착 지도 가능
- 임업의 저수익성으로 인한 산주의 무관심,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및 보급 기능의 연계 미흡 및 지도사업과 조합수익사업의 병행으로 인한 지도사업의 부실화
- 최근들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복합경영, 산림휴양 활동의 기회 확대, 산림·숲 해설 및 국민교육기능 등이 강조되면서 임업지도 수요의 다양화

### ○ 현행 기술지도·보급 체계

- 산림청(경영지원과) : 임업지도에 관한 정책수립
- 국립산림과학원 : 임업기술개발과 임업경영컨설팅
- 산림조합중앙회(회원지원부) 및 산림조합(기술지도과) : 임업기술지도원을 통한 임업기술 보급 및 지도 → 산림경영, 상담 및 정보제공, 산주교육, 자금지원, 산주관리 등
- 교육훈련기관(임업연수부, 3개 훈련원) : 산림공무원 및 기능인영림단, 영림기술자, 기술지도원 등에 대한 임업전문기술 교육훈련
- 시·도(산림환경연구소 등) : 지역단위 임업기술개발 및 보급
- 시·군(산림부서) : 산주의 산림사업 직접 지원 또는 산림조합의 임업기술지도 사업 지원

## □ 개선방안

### ○ 산주의 산림경영의욕 고취

- 산림경영이 가능한 10ha이상 산주에 대해 저극적인 산림정책·기술정보 제공 등 특별관리대책 추진
- 중앙 및 지역단위 산주교육, 분야별·품목별 연찬회 실시
- 부재산주의 대리경영 유도 및 산림조합 조합원 가입 권장

### ○ 지도 체계 및 방법의 다양화

- 임업지도 조직체계의 개편 추진

- 산림조합중앙회에는 임업지도 및 보급사업의 환경변화에 걸맞도록 “(가칭)산림경영정보지원센터”를 설치 추진
- 산림조합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예 : 버섯, 밤, 대추, 산채 등) 별 경영지원팀을 설치 추진
- 사이버 기술지도 등 정보화를 통한 지도방법 다양화
- 기술지도원,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인력을 망라한 임업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인적네트워크(Expert-Network)를 구축하여 지도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 ○ 임업기술지도원의 자질향상

- 임업기술지도원의 역할 및 기능 조정
  - 의무적 지도 항목을 설정하여 목표관리제와 연계
  - 관내 독립가·임업후계자 등 임업경영주체와 산주를 핵심대상으로 특별관리하고 산림경영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 임업기술지도원의 전문성 강화
  - 현행 직급별 지도원 구분에 추가하여 품목별 전문지도원(Specialist)과 일반지도원(Generalist)을 구분하여 육성

### ○ 기술지도원 인원 조정 및 인건비 국고지원을 현실화

- 기술지도원의 소요판단 및 인원의 합리적 조정 감축
- 인건비 국고보조금 현실화 : ('04) 57%→('07) 80%
- 임업지도 여건 조성후 다양한 지도사업 프로그램 발굴 지원

## 3. 임업인 육성 및 소득증대

### □ 현황과 여건

- 전국 산림면적(640만ha)의 70%는 국민이 소유한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산림경영에 소극적이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

- 산주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이 약 2ha로 영세 함
- 산림경영에 대한 기대감이 적고, 전반적인 산림투자 의사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
- 정부는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성을 감안, 나무심기, 숲 가꾸기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흡
- 임업인 단체를 통한 사유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진

## □ 개선방안

-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독립가·임업후계자 등을 지속 선발 확대
- 산주들이 산림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소득 품목 개발, 복합경영 등에 필요한 임업기술지도 활성화
- WTO/DDA, FTA 등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임산물에 대한 생산·유통·가공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강화 및 「임산물리콜제」 시행
  -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생산이력제 실시
- 임산물의 정보화·브랜드화·표준화 유도 및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임업 정보화 기반 구축
- 산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주와 만남」 행사 등 산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제공기회 확대
- 자체 산림경영이 가능한 10ha 이상 소유산주를 핵심지도산주로 특별 관리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 전문임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추진

농업부문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그간 추진경과)

### □ '93년도에 UR협상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 분야도 본격적인 개방체제 전환

- 영세한 농업구조, 낮은 농업생산성,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서 개방에 직면
- 특히,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 부족한 유통시설 등 농업SOC가 미약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

### □ UR협상에 대비하여 '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

- 우선, 농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기반정비, 도매시장 등 유통개선, 시설현대화 등 농업 SOC 기반 구축에 중점('92~'02년 82조원 투융자)

### □ 그 결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농업인프라를 단기간내에 어느 정도 정비하고, 한·수해에도 안전영농이 가능

### □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품질고급화 촉진

- 미곡종합처리장,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 확충

### □ 규모화·전문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 내부의 구조조정이 진행

- 규모화된 전업농이 빠르게 증가(3ha이상 농가 : ('91)42천호→('04)82)
- 3ha이상 농가는 도시근로자 가구수준('05:39백만원)의 소득실현

### □ 그러나,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였고, 복지 증진, 지역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약

-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정체
- 수익성, 상환능력 등 수요자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여 일부 농가의 부실초래
- 고령농 은퇴지원 미흡, 평균적 지원 등으로 구조조정의 효과가 미흡
- 교육·의료·주택·농외소득원 등이 도시와 격차가 현저해 농촌공동화 현상 심화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자생적인 경영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농업인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

- 그 결과 농업인의 과도한 정부 의존적 성향이 심화

## 2. 필요성

**□ 생산성 증대가 농가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해 부채문제 등이 심화**

- 국가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 가중
  - 도·농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95 : 95% → '02 : 73)
  - 농가 고령화와 가구원 수 감소로 농외소득 증대도 제약
    - 농외소득비율은 '99년이후 53% 수준에서 정체(일본 86.9, 대만 82.4)
- 규모화·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한데 비해 소득안정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
  - 생산성 향상 및 소비둔화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불안정,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의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

- 자본 투입이 많아 농가의 경영불안요인으로 작용
  - ※ 30~40대, 화훼·과수·축산농가의 부채는 평균보다 1.4~2배정도 높은 수준
- 직불제, 재해보험 등은 시행초기로서 아직 농가소득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취약
- 교육·의료 등 열악한 농촌생활여건이 인구감소를 유발하고, 인구감소는 생활편의시설 유치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 초래

**□ DDA 협상의 초점은 개방의 여부가 아니라 개방의 속도와 폭에 있으므로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특단의 국내 대책과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이 필요**

- 구조조정을 완료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개방피해 보완, 구조조정·체질개선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하는 상황
  - 주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가 커 국제경쟁력이 아직도 취약
- 개방의 영향으로 급격한 소득하락이 불가피하여 직접지불제 확충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이 시급

### 3. 기대효과

**□ 시장 지향적 농업구조로 재편하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

- 경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가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지원
- DDA이후 작동이 어려운 쌀수매제,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대체할 시스템 개발

- 환경보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도록 친환경농업, 농식품 안전성 확보 대책을 과감히 추진
-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특화 발전노력을 지원

**□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하락에 적극 대비하고,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 보상시스템으로 직불제 확충
-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가위험관리 프로그램 개발
-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농외소득원 창출

**□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 균형발전 실현**

- 연금, 건강보험, 상해공제 등 농촌형 사회 안전망 확충
- 교육, 환경, 의료 시설 등 기초 복지 인프라 개선
- 정주·휴식공간으로서 농촌지역 개발 촉진

## II. 현황과 전망

### 1. 현 황

**< 대외적 측면 >**

**□ DDA협상 진행, FTA확대, 경제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 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

- DDA협상, 2004년 쌀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UR때 보다 개방의 폭과 속도의 확대 불가피

- 세계 각국이 양국간·지역간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황

**□ DDA협상에 따라 관세율과 국내 보조는 상당 부분 축소 예상**

- 수매보조금 등 국내 보조가능액(AMS)이 상당수준 감축될 가능성

**< 대내적 측면 >**

**□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 증대**

- 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특단의 자구노력과 지원책이 없다면 호당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
- 농가인구는 지속 감소, 농촌의 고령화 현상도 단기간 내 개선 어려운 실정

**□ 규모화·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

- 생산성 향상 및 소비둔화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불안정,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의 경영위험이 증가
- 농가의 차입자본비중이 높아 경영불안요인으로 작용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 유통 환경이 급변**

-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에 대한 선호가 뚜렷
- 고투입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영농으로의 전환 요구

**□ IT·BT 등 지식·기술혁명이 가속화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역할이 강조**

-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되고, 모든 분야에 IT 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산업구조가 변화
- 지방 분권화의 영향으로 지방의 재량권이 확대

## □ 전원·휴식공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 주 5일제 근무확산 등에 따라 국내관광수요는 계속 증가
  - 국민 국내관광객 : ('02) 연인원 4억명 → ('05) 5 → ('11) 6
- 국민연금시대 도래, 고속도로망 확충 등을 잘 활용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나간다면 쾌적한 거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 2. 전 망

### □ 농 업 : 전업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

- 농가호수는 '02년 128만호에서 '08년 99만호, '13년 80만호로 감소할 전망
  - 농가인구 비중 : ('02) 7.5% → ('08) 4.8% → ('13) 3.4%
- 쌀 전업농/생산비중 : ('02) 41천호/22% → ('13) 70/50
  - 축산전업농/사육비중 : ('02) 13천호/65% → ('13) 20/85
- 쌀 중심의 농업구조가 축산·원예 등으로 다양화
  - 농업 GDP대비 쌀 비중 : ('02) 33% → ('08) 30 → ('1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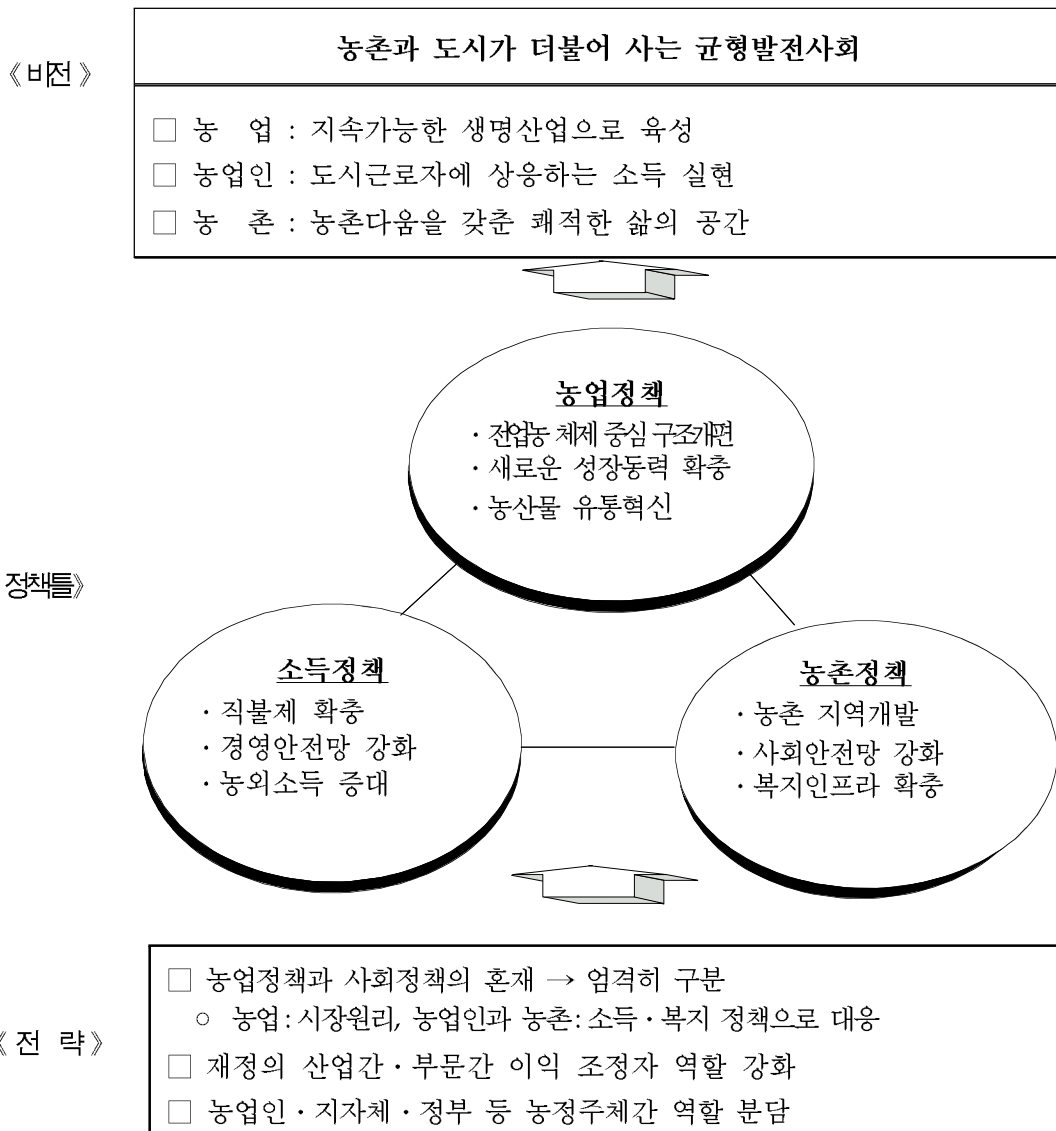
### □ 농업인 :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 실현

- 농가소득 전망 ('02) 2,447만원 → ('08) 3,598 → ('13) 4,268
- 1인당 도·농간 소득 비교 : ('02) 90% → ('08) 104 → ('13) 105
- 농가소득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
  - ('02→'13) : 농업소득 46% → 33, 농외소득 54 → 67

□ 농 촌 : 농촌다움을 갖춘 도·농 공존의 삶의 공간으로 발전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인 복지와 지역개발을 확충하여 농촌인구 20% 수준 유지

### Ⅲ. 비전과 전략



## IV. 중점 추진과제

### 1. 추진과제 선정배경

#### □ 정책대상 : 농업 중심 → 농업·식품·농촌

- 농업부문에 편중된 정책의 관심을 농업·식품·농촌으로 확대
- 농업과 식품산업, 농촌지역개발 등으로 정책의 외연을 넓혀 개방화 시대의 농업·농촌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

#### □ 지원방식 : 전체농가 평균적 지원 → 농가 유형별 정책 차별화

- 모든 농가에 대한 무차별적 경쟁력 제고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경쟁이 가능한 농가 중심으로 정책자원이 집중되도록 제도개편
- 영세·고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 보완대책도 중점 추진
  - 은퇴 이후에도 생계비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농업인 복지·농촌관광 등 농외소득원을 확충하여 재촌탈농 여건 조성

#### □ 투융자방향 : SOC 중심 투융자 → 소득, 복지, 지역개발 중심

-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화된 전업농육성, 고부가가치 기술농업육성, 직불제 등 소득안정과 농촌 지역개발에 중점 지원
- 생산기반정비는 축소, 노후시설개보수·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위주로 내실화

#### □ 소득안정수단 : 정부 주도, 가격지지 → 시장지향, 소득보조

-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에서 시장경제원리 작동, 정부는 시장 실패 보완 역할 수행

- 개별 품목의 수급과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관측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인의 의사 결정 지원

○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문제는 가격지지정책 보다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직접적인 소득보전정책으로 대응

#### □ 정책의 중점 : 생산 중심 → 소비자 안전, 품질중심

○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역점

○ 고품질의 표준화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

- 개별 농가 규모의 한계를 유통의 규모화·조직화로 보완

#### □ 농촌성격 : 농업생산 공간 → 생산·정주·휴양공간

○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범정부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높여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농촌개발로 전환

## 2. 추진과제 선정결과

#### □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

○ 농업의 체질 강화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3.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 <농업의 체질 강화 >

##### □ 시장을 지향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 ○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 시장원리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도록 추곡수매제, 최저보장가격제, 원유가 결정시스템 개편
- 추곡 수매제 개편 및 공공비축제도 도입
  - WTO체제 출범이후 수매보조금 감소(연간 750억원)로 소득지지 효과가 크게 약화
  - 수매제도를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
    - 적정재고 600만석 내외 기준으로 매년 일정수준을 시가 매입·방출
    - 공공비축 물량, 매입·방출방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 검토
  - 수확기 쌀값 안정 및 소득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소득안정장치도 대폭 보강
    - RPC의 수확기 원료벼 매입량을 유통량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합유도 등 구조조정 추진
    - 종전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하락시에도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개편
-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 개편
  - 주요 채소류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계약재배에 의한 최저가 수매방식에서 계약재배 사업의 결손중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
    -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 최소 허용보조 범위내에서 지원
    - '04~'0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6년부터 제도 전환
  - 계약재배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 개선
    - 계약재배 물량 확대('03 : 11→'13 : 20%), 사업주체는 산지농협 중심에서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다양화

- 원유수급 및 가격결정의 시장기능 강화
  - 원유 수급안정을 위해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 조절토록 유도
    - 낙농진흥회의 원유 집유 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 체제로 전환
  - 원유가격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

## ○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중점 육성

◇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신규 정예농업인력을 적극 양성  
 -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매년 4,500여명의 우수 신규인력 유입 필요

- 신규 창업농을 집중 육성
  -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인재를 창업농으로 중점 선발(매년 1천명 수준)
    - 농업관련학교 졸업자 등 35세 미만의 유능한 인력의 창업을 지원
    - 대학생(3~4학년)을 대상으로 창업 연수과정 설치·운영
    - 우수농가에서 1~2년간 농업에 종사한 경우(농업 인턴십) 창업 지원
  -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현행 후계농업인 제도를 개편하여 창업농 위주로 전환하고, 영농정착자금도 대폭 현실화(현행 1억원 → 최고 2억원)
    - 「창업농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 영농 정착을 밀착 지도
    - 여타의 신규 농업인은 경영능력, 사업성을 평가하여 종합자금으로 영농정착자금 지원 (매년 3,500여명 수준)
  -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기능 강화
    - 전문대학과정 위주에서 실제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강화
    - 현행 3년제 학과 과정 외에 전문 직업훈련과정 신설
  - 농협, 유통공사, 대학 등에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교육이수자를 고용한 유통조직, 컨설팅 사업자 등을 우대 지원
- 농업인의 경영혁신 유도
  - 농업인 교육은 집합식 교육에서 현장밀착형 컨설팅 위주로 전환
    - 농업인, 법인 경영체에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단위의 공동컨설팅제도 도입

- 농업인의 경영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농가를 선별·지원
  - 농업인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유도를 위해 혁신운동 참여단체의 교육·홍보비 등 지원방안 강구
  - 전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 규모화 촉진

◇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영위험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

- '13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0천호를 집중 육성
  - 연차별 규모화 지원 면적을 과거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총 124천 ha의 영농 규모화를 지원
  - 쌀 전업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확보를 위하여 임대차사업 중심으로 지원
  - 규모화 지원외에 기술 및 경영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실시
- 자연재해·가격불안 등에 대비한 경영위험관리 지원 강화
  - 쌀전업농의 경영안정 위해 수도작에 대한 재해보험 조기도입 방안 강구
  - 경영회생 지원제도 적극 활용,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전업농의 회생 지원
- 쌀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지원을 과수선도농까지 확대
  - 과수는 FTA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선도농가가 규모 확대를 위해 이미 조성된 과수원을 매입한 경우 규모화 자금을 지원
  - 과수 규모화는 6대 과종(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위주로 추진
- 영농규모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농지구입자금의 금리인하와 원리금 상환방식을 개선
  -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농지관리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 영농규모화 사업에 매매정보 수집·제공, 알선 및 신탁 업무 등 농지은행 기능을 추가하여 농지 유동화를 촉진

## ○ 시대 변화에 맞게 농지제도를 혁신

◇ 식량안보·통일대비 등을 위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뒷받침하도록 농지의 이용·소유규제는 완화

- 적정농지면적 확보와 계획적·체계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업진흥 지역을 재조정하고 정책적인 지원 강화
  - 적정 농지면적은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진흥지역내 농지에 직불금 지급 차등화 등 우대 지원 방안 강구
- 쌀산업의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소유와 이용제도 혁신
  - 농지소유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
- 주말·체험영농(0.1ha), 이농·상속(1ha) 등 비농업인의 소유상한 확대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신고제로 전환, 지역발전특구 등 특정지역내 농지 소유·전용규제 폐지
  -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경목적 소유농지의 임대차·위탁영농 허용
  - 농지이용처분제도는 휴경보상제 및 소유규제완화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완화

○ **농지전용제도를 진흥지역내 영농편의 도모 및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편**

- 농업진흥구역내 농산물의 판매시설 설치 허용 등 허용행위 확대
- 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
-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지조성비제도 개편

○ **수익자 위주의 선진 농업금융제도로 개편**

◇ 정책자금은 대출기관이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서 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일원화하고, 정책자금 공급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단계적 개편

- 정책자금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단계적 통합
  - '07년까지 운영자금 성격의 50%를 종합자금으로 전환 ('13년까지 완료)
- 농특회계 융자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농특회계 관리기관을 독립·운영하고, 정책자금 취급에 경쟁체제를 도입

- (가칭)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하여 농특회계 용자금에 대한 검사·감독체계를 강화
- 점포수 및 점포분포도, 유사상품 취급경험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중은행에 취급권한 부여
- 개방체제의 진전 등에 따른 부실농업 경영체 증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워크아웃시스템 구축
  - 재해,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회생지원을 위해 '04년부터 「경영회생지원제」 상설화
    - 회생이 어려운 농가는 파산신청,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퇴출이 되도록 「농가파산제」 도입을 검토
  - 농업수익성·투자회임기간 등을 고려,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개선
    - 고정금리 방식에서 시중 CD금리 또는 국고채 금리의 일정수준 이하로 연동하는 변동금리제로 전환
  -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
    -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및 자구노력 강화로 신용보증여력 확충
    - 부분보증제 책임제를 확대하여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 □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고품질 농업으로 발전

### ○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

◇ 비료·농약 과다 사용, 집단사육 등 고투입 농법에 의존한 생산방식에서 환경친화적 영농으로 전환

-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차별화 촉진
  - 친환경 농산물 인증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편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물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 다수 농업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친환경직불제 등 정부 지원도 내실화

- 생산비절감 기술, 다양한 친환경농법 등 현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 촉진
- 단지화된 작목반, 규모화 농가를 중심으로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 토양유실방지를 위한 초생띠 조성 등 실천 유도
-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확산하고, 지역별 농업환경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 환경·경관 관리를 강화
  -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 참여농가 대상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확대
  - 사료영양관리를 통해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고 적정 시비량 대비 분뇨 배출과다 시·군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 추진
  - 지역별 농약, 화학비료, 분뇨 등의 환경 위해 정도를 나타내는 농업환경 지도 작성 등 농업환경 계측시스템을 D/B화

○ “농장부터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농산물
  - 재배·수확·세척·포장·운송과정에서 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본격 도입
    - '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한 GAP 관리지침을 마련
    - 참여농가가 GAP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구축·운영
    - 생산자 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인증체계로 정착
  -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적합품의 시장유입 방지
    - 산지 거점 시·군에 정밀분석실을 확충하고 안전성 조사를 확대
    - 안전성 기준 위반자는 D/B화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고, 법적 제재 뿐 아니라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배방법, 농약사용량 등을 소비자에 공개하는 생산이력제를 본격 실시 ('06)하고, 각종 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편
    - 농산물에 대한 기초정보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13개의 각종 표시제, 인증제의 통폐합 추진

- 소비자가 직접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성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농식품안전포털사이트』 구축
- 농업인이 활용 가능한 유해물질 절감기술 등 관련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설정
  - '13년까지 미생물 농약 33종을 추가 개발하고, Codex 기준에 부합하는 미생물관리 및 검정기술 개발·보급
- 축산물
  -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사육단계 :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
  - 사료공장에 위해요소관리기준(HACCP) 적용으로 안전관리 강화
  - 농장단계 HACCP 지침 마련,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 **도축·가공단계 : 도축검사 강화, 도축장 HACCP운영수준 평가제 도입**
  - 도축장 HACCP운영수준평가제를 도입('07)하고, 시설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축산물 가공장에 HACCP 적용 확대
- **유통·판매단계 : HACCP 도입, 식육처리기능사·위생감시원제 도입**
  - 축산물 판매장에도 HACCP를 신규 적용하고, 보관·운반·판매장에 대해 위생관리기준(SSOP) 의무화 추진
    - 식육판매업 신규 개설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 보유 의무화 검토
    - 생산·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물의 이력(출하자, 도축일, 사양관리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쇠고기 생산이력제 도입
-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
  - 거점 시설 중심으로 산지 유통을 계열화

◇ APC, RPC 등 산지유통시설을 유통혁신의 거점으로, 산지공동마케팅조직을 차세대 산지유통주체로 육성

- 생산-유통의 계열화 중심체로서 산지유통조직의 발전 내실화
  - 경영혁신 우수 산지유통조직에 인센티브 자금, 시설 등 집중 지원

-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지속 추진, 조합간 자율합병 촉진
- 우수 산지유통조직은 결속력이 강한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발전 하도록 하여 차세대 기업형 산지유통주체가 되도록 제도화
  - 독립채산·책임경영제·공동계산 정착으로 경영구조 선진화
  - 지역·품목단위 조합간 공동출자·판매사업 방식 제도화
  - 각종 정책자금(고품질 생산, 계약재배, 시설자금 등)을 유통종합자금으로 단계적 통합, 공동마케팅조직에 우선 지원

□ **우수 산지유통조직에 세척, 선별, 가공, 전처리시설 등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가능한 산지유통센터(APC) 설치를 지원**

- 대규모 APC는 지자체 참여 방식으로 군 단위 이상 광역기반 조직, 독립적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공동마케팅조직에 우선 지원
- 활용도가 낮은 APC 등 유통시설을 임차 또는 M&A하는 유통조직에 운영비 및 시설보완 우선 지원
-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시·군 단위 2개 이상 설치지역(49개 시·군)을 중심으로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여 구조조정 추진('05년말까지 7개 시·군 25개 농협RPC 통합, 200→182, △18)
- RPC와 농업인간 고품질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조기 확충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등 우수 도축장 중심으로 도축·가공 일관처리 및 부분육 유통 활성화로 축산물 품질 향상 도모
- LPC 등이 브랜드 경영체 및 대형 판매점과 연계한 유통망을 구축하도록 경영자금 중점 지원
- 도축장의 시장 차별화를 위해 도축장 HACCP운영수준 평가제를 도입, 도축장내에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가공시설자금 우선 지원

- 시장 영향력을 갖는 파워 브랜드 육성

◇ 농축산물 유통의 전략적 축으로서 규모화된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

○ '13년까지 전체 브랜드 농산물의 50%를 공동 브랜드화

- 주요 품목별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전국 대표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 지자체 중심으로 생산자조직, 지역대학, 연구소 등이 지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촉진(초기개발비용 지원)
  - 자조금사업과 연계, 품목별 전국 대표조직을 중심으로 전국대표브랜드(예 : 과수 공동브랜드 "Sunplus")로 발전 유도
  - 지리적 표시의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우수브랜드 평가 및 홍보 강화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브랜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일회성 홍보보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중점 홍보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등 off-line 유통기반 바탕 위에 전자상거래 등 on-line 유통을 접목

- 소비자와 산지간 디지털 유통정보·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중심의 전자 상거래 활성화 촉진
  - 종합유통센터간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하처와 공급망관리시스템(SCM)을 구축
  - 도매시장과 APC, RPC를 연결하는 전자 수·발주 시스템을 도입 하여 거래 효율성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증제도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표준 소비자 보호협약 개발
- 파렛트 출하, 표준하역비 적용 확대 등으로 물류 선진화에 역점
  - 포장재지원 중심의 물류표준화 사업을 공동선별, 파렛타이징 지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우수조직에 집중 지원

- '08년 이후는 파렛타이징 중심의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통합
  - 파렛트 출하자 등록제를 실시, 하역비 차등화·경매우선 등 우대
  -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한 무·배추의 물류표준화 방안을 강구하고, 하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준하역비 제도를 내실화

## ○ 가축질병 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의 불안 해소

◇ 사전예방 위주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발생시 초동방역을 강화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 구제역 위험지역 운항노선 및 출입국자 집중 관리 등 국경검역활동 강화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
- 농가교육·혈청검사 확대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체제 구축
-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강화로 조기 종식 추진
  - 혈청검사·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질병별 SOP 구축 및 발생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방역활동 전개
- 지자체·민간의 방역인력 확충으로 방역주체간 역할 분담
  - 수의보조인력제 도입 등 방역본부 인력 및 예산 확충

## □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 ○ 농업혁신을 주도할 기술개발 촉진

◇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농업 혁신체계 마련  
 ◇ 농림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R&D투자방향과 실행전략 수립  
 ◇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신속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 보급기능 대폭 확충

- 지자체 및 지방대학·산업체·연구기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인력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

- 지역특화작목개발, 교육·기술 컨설팅, 신기술 창업 지원, 지역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 수행
-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클러스터에 대한 R&D 예산 등 재정적 지원 확대
- 현재 기술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농림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핵심 기술분야를 중점 선정
  - 생명공학, 수출지원, 농가소득제고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R&D투자를 확대하되, 생산성 제고 분야는 대폭 축소
- 수확후관리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과 생명공학을 활용한 실용화·산업화 기술에 중점
  - 대상으로 애로기술 조사(연1회 이상)를 실시하고, 관련 기술을 일선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보급
  - 농가에 대한 특화기술보급은 『농촌진흥청 → 도기술원 → 시군센터 → 농업인』 체제에 전문가인 **농과대학교수의 참여를 활성화**
  - 친환경농업, 안전성 확보, 수확후(post-harvest)관리기술 품질고급화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에 중점
  - 전통농업에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접목한 실용화·산업화 기술개발 역점
  - 건강·기능성 식품에 적합한 농산물 발굴 및 가공기술, 전통식품의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 추진
-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보급기능 대폭 확충
  - 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술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림기술사이버시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술거래 촉진

## ○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

◇ 농업과 식품산업간 전후방 연관관계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Food-chain산업으로 발전

- (가칭)「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
  - 식품 규제보다는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식문화 세계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포괄

- 주요내용(안) : 식품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식자재 산업 등 지원방안, 인증제 등 제도 도입, 통계조사, 식생활 가이드 라인 등
- 원료조달-식품생산 과정에서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산업연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식품관련업체(식품제조, 외식, 식자재업체)에 대해 우수 농산물 사용과 연계하여 시설현대화, 원료조달비 등을 지원
  -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에 적합한 원료 농산물 발굴과 기능성 검증을 위한 산·학·연 공동의 연구개발 지원
  - 식품 분야별 생산 규모, 원료 수급, 소비계층 등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
  - 친환경 인증 등 우수 농산물 사용, 원산지 표시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우수식품업체 인증제도」를 도입(민·관합동) 검토
- 전통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전통 식문화의 세계화를 지원
  - 농산물 가공공장(03:623개소)·특산단지(681)는 신규 지원보다는 기존 시설의 현대화, TV 홍보 등 마케팅 지원 등으로 내실있게 운영
  - 한식·전통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업체간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전통 식문화를 세계화**
  - 전통식품 名人제도는 주류 중심에서 장류, 한과류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
  - 민속주·농민주의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지역별로 **전통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가칭) 「전국 전통주 품평 및 시식회」 개최,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지역의 민속주와 특산물을 Package로 홍보
    - 전통주·민속주 등 판매방법 다양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관계부처 협의)
-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및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및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한 판매·수출 등 지원근거 마련
- 학교급식, 국민영양 등에 관한 정책적 뒷받침 강화

-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조례제정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지자체부터 우선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공급지원** 실시
- 농산물 **영양성(또는 기능성)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식생활지침, 표준식단 개발·보급** 등 국민 식생활 개선

## ○ 본격적인 수출농업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

◇ '13년 농식품 수출 50억불을 목표로 시장별, 품목별로 과거와 차별화된 전략적 수출마케팅을 중점 추진

- 농식품 수출 배가를 위해 새로운 수출 전략 수립·추진
  - 외국 대형유통업체 등이 전문생산단지 등과 장기 계약을 통해 한국산 농산물 해외 공급기지를 국내에 구축하는 방안 추진
  - 해외 판촉 활동도 박람회 참가, 판촉전, 해외광고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방식으로 방향 전환
- 농식품 수출 50억불 목표로 수출에 특화된 생산-물류-브랜드 체계 강화
  -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생산단지, 수출 전문 APC 등을 계열화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 수출기지로 육성
  - 수출물류비는 대형 수출업체 중심으로 지원하고, 최소 지원기준('03 : 수출실적 10만불이상)도 단계적으로 상향
  - 수출농산물의 商·物流의 거점인 수출물류센터(광양, 마산)는 초기에는 수출업체·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생산자단체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 검토
- 수출지원조직을 확충하여 수출업체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기능 대폭 강화
  - 유통공사 내에 해외마케팅, 수출 농산물 품질·안전성 확보, 수출 컨설팅을 전담할 조직을 확충
  - 농업인이 겪는 수출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공사가 농산물 수출보험을 대행 관리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 외국의 생산·유통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기술지원단」 운영

## ○ 농업경영·IT 접목으로 과학영농과 영농효율화를 뒷받침

- ◇ IT를 활용한 지식기반 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
- ◇ 농업경영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경영 효율화 도모

- 품종, 재배 기술, 시장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종합정보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품목별 종합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기술, 수급 동향, 소비자 기호, 수출입 정보 등을 One Stop으로 제공
- 농업용 S/W를 적극 개발·보급하여 경영효율 제고
  - 온도·습도, 햇빛, 양액 등 정밀 자동제어 기술을 중점 지원
  - 품목별 경영 및 회계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지원
- 농식품안전 정보체계구축 및 종합정보서비스
  -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위생)·유통·소비와 국경검역이 연계된 농축 식품 안전(Traceability) 정보체계 구현
  - 농식품안전 DB, 농축산물식별코드(RFID) 국가표준, 가축방역GIS정보, 국경검역정보 등의 정보표준화를 통한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운영
-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물류 정보화를 적극 지원
  -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지원 강화
  - 위치추적 기능 등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화를 적극 추진
- 연구기관, 농업계학교, 농가, 지역사회 등을 연결하는 사이버 커뮤니티 구축·운영
  - 온라인을 통해 영농, 행정, e-Learning 학습체제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혁신 지원
- 정책지원자금 지원농가에 대한 경영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농업정책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여 정책 결정 및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활용
  - 농가이력 DB 구축으로 중복지원 방지 및 대상농가의 체계적 관리

- 농지, 농업용수, 토양 등 농업자원 정보화 추진 강화
  - 농지관리 및 토양분석에서 농작물 작황·생태환경·토양오염·용수관리 등으로 활용범위 확대

##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

### □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충

◇ 개방화의 진전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직접지불제를 내실화하고 확대(직불금 '13년까지 농가소득의 10%수준 확대)

#### ○ 농가소득안정 유형

-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 관련 직불제를 새롭게 개편
  - 논농업직불제 → 고정직불제(WTO허용보조)
  - 쌀소득보전직불제 → 변동직불제(감축대상보조)로 통합 개편
-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부금 제도와 논농업직불제의 4ha면적 상한제 폐지
- 가격, 생산량 변동에 따른 농가의 소득변동에 품목단위 직불제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을 검토
  - 농가등록제에 등록된 농가와 정부가 농업소득의 일부를 농가 계정에 공동 적립하고, 재해·가격하락 등으로 소득 감소시 인출

#### ○ 공익적 기능 제고 유형

- 친환경직불제는 토양, 수질보전 등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확충
  - 논·밭으로 분리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합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 중심에서 저투입 농가로 지급대상을 확대
-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직불제 지원대상 정책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 농촌지역 활성화 유형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마을단위의 발전계획과 연계,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발전목표를 수립하는 상향식 발전 유도
  - 경사도, 경지율 등 객관적 기준 적용,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마을 대상 추진
  - 보조금의 30%이상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에 활용
-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경관을 발굴하고 마을·지역단위와의 경관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
  -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농경지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지구단위(최소 5ha 이상)로 선정

## □ 농가 경영 위험 관리 시스템 강화

### ○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대상 재해를 최대한 확대하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축소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재해유형을 대폭 확대
  - 전업화 수준, 재해발생위험 정도,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 연차적 확대
    - 기존 6개 품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에 뽕은감 시범사업 추가('06년)
    - '13년까지 수도작, 시설채소, 임산물 등 30개 이상으로 확대
  - 병충해 등을 제외한 모든 재해로 보험대상 재해 확대
    - '08년까지 폭설 등에 의한 피해를 포함
    - 농가별 평균 생산량 산정방법을 강구한 후 All-Risk방식 도입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여 농가 보험료부담 완화
- 이상기후 등 거대 재해에 대비, 국가재보험제 내실화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등을 일원화하여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
  -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을 포괄하여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 마련
  - 품목별 피해통계 축적, 손해평가방법 개발 등으로 보험기반 구축 및 농업재해복구 지원과의 연계강화

### ○ 사전적 재해 예방 및 사후적 희생 지원 강화

- ◇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재해복구 지원 수준을 현실화
- ◇ 일시적 경영위기의 극복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상설화

- 자연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시설 확충
  -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에 대한 보강 추진
  -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은 '11년까지 조기완료
    - 배수개선 목표를 지표배수개선으로 축소조정(235천ha → 188)
-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충하고, 농가의 조기 회생을 중점 지원
  - 농경지 및 농업시설 복구비는 표준규격시설 및 실제 복구단가로 재해 복구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 재해복구 정부보조율 상향조정 및 용자금리 인하 추진
    - 농림시설복구시 보조율을 50%로 상향조정
  - 재해,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희생지원을 위해 '04년부터 「경영희생지원제」 상설화('04)

### ○ 가격 하락에 대비한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정착

- ◇ 계약재배·출하사업을 내실화하고, '13년까지 34개 주요 품목의 생산자 조직중심으로 자조금 단체 결성을 추진

- 계약재배·출하사업은 참여주체 다양화, 계약방식 개선 등 내실화
  - 사업주체는 공동마케팅조직, 가공식품업체 등으로 다양화
  - 0.3ha 이상 농가, 생산량의 50% 이상 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 소규모 농가(0.3ha 미만)는 작목반 단위로 참여 허용
  - 공동마케팅조직, 우수 산지유통전문조직에 계약재배자금 우선 지원
    - 계약 재배자금 지원품목제한도 폐지
- 품목대표 조직의 자조금 단체화를 촉진하고 사업 범위를 단계적 확대
  - 사업실적, 조직화 연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100%에서 200%까지 단계적으로 차등화
    - 자조금 조성은 연간 출하액의 1% 범위내에서 3%까지 확대 추진
  - 품목대표조직의 사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초기)교육·홍보·판촉, (발전)브랜드 상품화·품질관리, (정착)자율수급안정
  - 재배지역이 전국에 산재된 품목은 시·도단위 자조금 단체를 인정하여 전국단위 조직체로 발전 유도
    - 국비 및 지방비 일부를 매칭펀드로 지원(지방비 20, 국비 30, 자부담 50)

## □ 다양한 농외소득원 적극 발굴

- ◇ 2·3차 산업유치로 '13년까지 농외소득 비중을 67%까지 확대
  - 농촌관광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농공단지 확충 등 적극 추진
  - ※ 2013년까지 연간 150백만명의 도시민을 농촌관광을 통해 농촌으로 유치

-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한 농촌체험·휴양기반 확충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관광의 거점으로 활용('05년까지 123개소, '16년까지 850개소 조성목표)
    - 농산어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보급 및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마을 발굴·홍보
  -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경관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 경관작물 재배지원 시범사업 결과('05~'07)를 토대로 향후 지원대상을 주택·담장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활용하여 휴식·레저·전통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도입 검토
  - 도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배울거리·놀거리·실거리를 종합적으로 제공
- 농촌체험관광 등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추진에 필요한 역량 배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제 도입 및 전문가 자문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
  - 농산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운동, 도농교류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마케팅 전개로 도농교류 공감대 확산
- 1사 1촌 운동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도농교류 모델로 정착
  - 교류실적을 분석하여 미교류 결연사례는 정리하고, 교류활동을 단계화(기초→성장→정착)하여 맞춤형 육성·지원
  - 1교1촌, 1부대1촌, 多사1촌, 1사多촌 등 교류유형 확대·다변화
  - (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민간운동조직으로 육성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칭)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도농교류 홍보, 프로그램 개발, 교육업무 등을 전담 지원하는 도농교류센터 운영

### ○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 지역의 특유한 전통고유기술, 토산품, 관광문화상품 등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산업화로 연결하여 부가가치 창출

- 지자체 중심으로 학계, 산업체 등이 공동 협력하여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
- ※ 향토자원 : 특정지역에 주로 존재하고,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며, 지역의 생활과정을 통해 토착·계승되어온 생활양식과 이를 구성하는 자연자원, 재화, 문화 등을 포괄
- 향토자원을 상품화하여 향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머드팩, 숯 등)

## □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역 브랜드 개발 및 품질 관리 강화

- 지자체와 전문업체간 제휴로 고유브랜드 개발(함평군 나비브랜드 ‘나르다’ 등)
- 자치단체별 품질인증 조례를 마련하여 품질관리 강화
  - 지역 전통 및 특산품과 관련된 향토문화축제를 발굴 지원
    - 관광상품성이 큰 향토축제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
    - 방문객 만족도,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 소득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농공단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 단지로 발전
    - 농촌주민의 취업기회 확충을 위해 단지조성 확대('05: 314개소 → '14:400)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특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적극 유치
      - 생산·체험·관광을 연계한 지역특화단지 육성 강화
    - '94년부터 적용되어 온 입주업체 지원자금 수준을 대폭 현실화
      - (현행) 10억원(시설비7, 운영비3) → (개선) 25억원(시설비15, 운영비10)
  - 특산단지는 지자체 주도하에 목공예·죽제품·모시 등 지역이미지가 강한 소수 정예품목 중심으로 활성화
    -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매 촉진
  - 농촌관광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가공과정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제공, 제품 판매 촉진

## <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 □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도시근로자의 4대 보험(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개선, 농업구조조정 연착륙을 지원

- 연금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은퇴농의 노후생활안정 도모
  -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인상 : ('03) 22만원 → ('05) 44 → ('06 이후) 48
  - 1인당 년 지원액 : ('03) 85,800원 → ('05) 최고 224,400 → ('06) 최고 259,200
-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경감율 22%외에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50%까지 연차적으로 특별 지원
  - 경감 비율 : ('03) 22% → ('04) 30 → ('05) 40 → ('06이후) 50
  - 월 경감보험료 : 8,550원 → 17,540원 → 24,440원 → 33,730원
- 농작업 상해공제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사망 또는 장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사망·1급장해 9,000)하고, 상해 공제료 지원 수준도 확대
    - ※ 사망시 보장수준 : ('03) 300만원 → ('05) 1,500 화 ('06) 2,500
  -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농업인 재해보험제도 도입 검토
- 기초생활보장대상 선정 기준을 농어민 가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확대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농업인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안 강구

### □ 교육·의료 등 기초복지인프라 확충

- 농촌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 농촌에서도 자녀교육을 안심하고 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교육비 부담 등 자녀교육문제로 젊은 농가의 대다수가 이농·탈농 희망

- 소규모학교 운영의 내실화로 농촌 교육의 질 향상
  - 통학거리 내에 있는 2~3개 작은학교를 하나의 학교群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 운영(시설 현대화 및 통학버스 운영 지원)
  - 초·중·고를 하나의 학교로 운영하는 통합학교 확대
  -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시(방과후 지도프로그램과 학력향상 「방학캠프」 운영, 특기·적성교육 및 원격교육 활성화)
  -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확대 : ('03) 57관 → ('13까지) 117
- 농촌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우수고교 육성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인원 확대
    - ('03) 200만원, 10천명/학기당→('05) 학비전액, 12.5천명→('06) 학비전액, 13천명
  - 농촌 실업계·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 전액 지원
    - ('03) 1ha미만 농가 자녀 → ('04) 1.5ha미만농가 자녀 → ('05) 전 농가자녀
  - 농촌 우수고교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시설 현대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선발에 자율권 부여
- 농촌 영유아 교육·보육시설 확충 및 양육비 지원
  - 농촌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
  - 농업인의 0~5세 영유아 양육비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수준(평균 102천원/월)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단계적 확대
-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신·편입학제 확대
    - 교대 정원의 일정비율을 교육감 추천 전형을 통해 선발, 2~4년 장학금 지급후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 의무 부여

- 농촌학교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 사택 확충 및 시설현대화 등 쾌적한 주거편의 제공, 순회교사 교통비 지급 등
- 농촌학교 근무수당 신설 등 농촌근무 인센티브 부여

○ 농어촌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소 중심의 시설·장비 보강 및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 확충  
 ※인구 10만명당 병·의원수 : 시지역 95.6개소, 군지역 32.9개소

- 보건소 중심의 농촌지역 공공 의료서비스 기능 지속 보강
  - 군 보건소에 장비·인력을 집중 보강하고, 농부중 등 농작업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육성
  - 보건지소는 1차의료기관 수준으로 시설·장비·인력 보강
  - 보건진료소는 노인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
- 응급의료기관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확충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건립하고 보건의료원에 응급의료 시설 및 장비를 설치
  -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민간병원을 인수, 공공병원화 추진

○ 여성농업인·노인복지 강화

◇ 여성 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대응,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충  
 ◇ 고령화 추세에 대응,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충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확대
  -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시급한 복지수요 충족
    - 설치계획 : ('03) 18개소 → ('05) 34 → ('08) 163

- 교양강좌,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배움, 모임, 나눔의 장으로 육성
- 산전·산후 건강 및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제」 확대
  - 도시근로여성 출산휴가기간 수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 이용기간 : ('03) 30일 → ('05) 45일 → ('08) 90일
  - 지원수준을 농촌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
    - 지원단가 : ('03) 27천원/일 → ('04) 30 → ('05) 35
  - 출산, 질병, 사고 등에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보건소를 주축으로 한 순회방문진료, 환자수송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체계” 실현
  - 영세 노인가구에 대한 재가노인복지 사업 확대

## □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 ◇ 농촌을 전원주거·휴양·관광 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
- ◇ 농촌지역 개발을 통한 정주생활공간 조성으로 농촌의 활력증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및 마을편의시설, 소득시설을 종합지원(70억원 이내)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09년까지 176개 권역 선정 개발('17년까지 1,000개 권역 개발)
  - 친환경육성형, 전통보전형, 자연생태보전형 등으로 특성화
- 면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정비 위주의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
  - '90~'04까지 770개면 1단계 지원 완료, '05~'13까지 800개면 2단계 지원 추진
    - 면당 3~5년에 걸쳐 30억원 지원('06년 300개면 지원계획)

- 면소재지(중심마을) 기반정비는 연말까지 대상지역 조사·선정후 '0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07이후 10년간 200개소 추진(개소당 70억원 지원)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지역 자연마을(20호이상)에 암반관정을 설치해주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 '94~'05년에 5,097개마을 지원(수혜주민수 1,079천명)
-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경관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 경관작물 재배지원 시범사업('05~'07)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검토

## V. 추진체계

### 1. 예산

#### < 총 투자 규모 >

#### □ 향후 10년간('04~'13) 총 투융자 규모는 119조원 수준

- 예산 96조원(80%), 기금 23조원(20)
- 보조 89조원(75%), 융자 30조원(25)

#### □ 전반기 5년간('04~'08) 총 투융자 규모는 51조원 수준

- 예산 40조원(78%), 기금 11조원(22)
- 보조 37조원(74%), 융자 14조원(26)

※ 전반기 5년간 투융자 소요 51조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단위 : 백억원, %)

구 분	합 계	'04~'08	%	'09~'13	%
예 산	9,630	3,994	41.5	5,636	58.5
- 보조	8,011	3,293		4,718	
- 융자	1,619	701		918	
기 금	2,299	1,057	46.0	1,242	54.0
- 보조	913	418		495	
- 융자	1,386	639		747	
합 계	11,929	5,051	42.3	6,878	57.7
지 방 비	1,663	660		1,003	
자 부 담	621	325		296	

※ 119조 투융자계획 중 5년간 투융자규모 ('06~'10)

(단위 :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합 계
예산+기금	103,289	106,843	109,201	124,888	131,799	576,020

### < 분야별 투융자 규모 >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는 투융자 비중을 확대하고, 생산기반 정비분야는 축소**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03) 20.7% → ('08) 26.2 → ('13) 30.0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03) 8.6% → ('08) 14.4 → ('13) 17.2
- 생산기반정비 : ('03) 32.6% → ('08) 15.7 → ('13) 8.8

□ **직접지불사업 투융자 비중 대폭 확대**

- 직접지불사업 : ('03) 9.4% → ('08) 22.6 → ('13) 22.9

(단위 : 백억원, %)

분 야 별	'03	%	'08	%	'13	%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191	24.8	311	28.5	479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159	20.7	285	26.2	447	30.0
※ 직접지불 사업	72	9.4	247	22.6	341	22.9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6	8.6	157	14.4	256	17.2
○ 농산물 유통혁신	52	6.7	102	9.3	95	6.4
○ 산림자원 육성	50	6.5	66	6.0	81	5.4
○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	32.6	171	15.7	132	8.8
합 계	771	100.0	1,092	100.0	1,489	100.0

## 2. 추진일정

구 분	1단계(2004)	2단계(2005~2008)	3단계(2009~ )
① 산업정책			
농업 체질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제도 개편</li> <li>○경영이양 직불제 : 연금방식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 비축제 도입('05)</li> <li>○최저보장가격제도 개편('06)</li> <li>○농지은행제도 도입('05)</li> </ul>	
친환경농업안 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질비료 공급 : 60만톤</li> <li>○소고기이력추적제 시범실시</li> <li>○산지공동마케팅 조직 : 9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농산물: 5%('05)</li> <li>○70만톤('05)으로 확대</li> <li>○수출농산물 등 시범 실시('05) 후 전품목으로 확대('06)</li> <li>○GAP이력추적관리제 시범 실시('05), 96개 품목확대('06)</li> <li>○전국확대 실시('08)</li> <li>○30개소('08)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로 확대('10)</li> <li>○150만톤으로 확대('13)</li> <li>○80개소('13)로 확대</li> </ul>
새로운 성장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용 공동브랜드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05)</li> <li>○농산물 영양성 표시제 도입('05)</li> <li>○식품산업육성법 제정('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식품 수출 50억불('13)</li> </ul>
② 소득정책			
직불제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불투용자 비중 : 10.2%</li> <li>○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li> <li>○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 실시(25천h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7%로 확대('08)</li> <li>○경관보전직불제('05)</li> <li>○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직불금</li> <li>- 변동직불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9%로 확대('13)</li> </ul>
경영안정 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물재해보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전국 실시</li> </ul> </li> <li>○국가재보험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작, 시설채소, 임산물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li> </ul> </li> <li>○소득안정계정 도입('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13)</li> </ul>
농 외 소득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농촌체험마을 : 32개</li> <li>○농공단지 : 304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7개소('05), 67개소('06)</li> <li>○314개소로 확대('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50개소로 확대('16)</li> <li>○394개소로 확대('13)</li> </ul>

	1단계(2004)	2단계(2005~2008)	3단계(2009~ )
③ 농촌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료 경감율 : 30%</li> <li>○국민연금 보험료: 12등급 소득기준 보험료의 50%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로 확대('06)</li> <li>○중위수 소득 기준 보험료의 50% 지원</li> </ul>	○50%로 계속추진
교육·의료·복지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교생 교육비 지원 : 1.5ha미만농가('03.1ha)</li> <li>○영유아 양육비 지원 : 1.5ha미만 농가</li> <li>○여성농업인센터 : 27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농가로 확대('05)</li> <li>○5ha미만 농가로 확대('06)</li> <li>○34개소('05), 163개소('08)</li> </ul>	○전 농가로 확대('10)
농촌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마을종합개발 : 36개 권역('05), 136개 권역('08)</li> </ul>	○864개권역으로 확대('17)
④ 법령정비			
농업경쟁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법 개정</li> <li>○FTA특별법 제정</li> <li>○농협법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곡관리법 개정('05)</li> <li>○농업·농촌기본법 개정('07)</li> <li>○품질관리법 개정('05)</li> <li>○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5)</li> <li>○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05)</li> <li>○식품산업육성법 제정('07~)</li> </ul>	
농가 소득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li> <li>○부채경감특별법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06)</li> <li>○도농교류촉진법 제정('07)</li> </ul>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li> <li>○산림자원관리법 제정('04)</li> </ul>		

### 3. 평가체계 -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

#### < 기본방향 >

□ 지방자치의 발전, 농가의 경영마인드 확산 및 생산·유통환경의 변화 등 새로운 농정여건에 맞는 투융자시스템 구축

-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지자체·중앙정부 등 관련 농정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책임성 강화

□ 「선심사 후지원」 원칙에 따라 투융자 부실화 방지에 중점

- 모든 농가에 대한 평균적·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경쟁 가능한 농가 중심의 정책지원 집중

□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조정·일몰·통폐합 등 엄격한 피드백 제도화

#### < 사업추진시스템의 효율화 >

□ 사업개발 및 형성단계

- 신규사업 개발 및 기존사업의 통폐합시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제도화하여 현장 적응성 제고
  - 실·국별 전문가위원회 상설기구화, 3개 시·군 이상의 의견수렴 원칙 등
-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일정 규모이상(총사업비 500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부터 정착까지 조언하는 전임 자문관계 운용

## □ 사업집행단계

- 사업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1~2년간의 의무적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전문기관 등 외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피드백
- 사업실시 후 6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분석 후 제도 보완 등 개선조치 추진
- 사업집행중 PCRМ을 활용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체감도 평가 실시
  - 의견수렴 등이 가능하도록 실·국별로 지역별·계층별 PCRМ 구축

## □ 사업평가단계

- 개별사업을 시책·정책별로 그룹화하여 장단기 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도를 측정하는 성과평가 실시
  -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평가 기능 담당
-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등급화하여 예산 및 정책조정에 반영
  - A : 정상추진, B : 예산 및 사업조정, C : 일몰, 통폐합

## <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

### □ 정부 또는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선정 기준과 평가표에 따라 일정점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

- 정부선정사업은 각 실국별 전문가위원회에서, 시·군(시·도) 선정사업은 시·군(시·도) 농정심의회에서 심사

□ **융자사업은 「선심사 후지원」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사업 수행능력사업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대출기관이 재무·비재무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경영능력과 사업성을 평가
-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 금융원리에 따라 농업종합자금을 계속 확대
- 보조와 융자가 병행되는 사업은 현재 행정기관이 선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 확정전에 대출기관의 심사를 선행토록 개선
- 대출기관이 보조금액을 감안하여 융자사업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융자가 포함된 보조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 검토
- 농가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실질적인 경영·기술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애로 조기진단·조치
- 사업지원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경영컨설팅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대출성과 분석 및 경영진단 등 금융서비스도 제공



임업부문



# I. 산촌 개발 · 보전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추진배경

-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역간 불균형발전과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어 산촌의 공동화 현상 심화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
- 대외적인 개방의 확대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 □ 필요성

- 산촌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증가
  - 산림휴양수요 및 녹색관광과 생태관광에 대한 요구 급증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 구축으로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 격차해소 및 국토균형발전 추구
  - 도시에 비해 낙후된 산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원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추구

### □ 기대효과

- 산촌주민의 소득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도농교류를 통하여 농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산촌휴양 및 체험관광과 도시 교류 촉진 등으로 농외 소득 증대
- 산림산업을 지탱하는 배후기지로 육성

## 2. 세부추진 계획

### □ 현황과 여건

- 대외적인 경쟁과 개방의 확대로 산촌의 소득과 경쟁력 악화
- 도시화로 상실한 자연, 건강, 청정 농·임산물에 대한 공급처로 산촌지역이 새로운 가치로 재조명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양수요 증가와 웰빙,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고조로 산촌의 조용함, 여유 등 어메니티가 부각됨.

### □ 문제점

- 산촌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된 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취약
- 산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여 산촌의 정체성과 산촌다움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하드웨어 위주의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

### □ 개선방안

- 산촌지역주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로 산촌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산촌진흥의 혁신적 주체로 육성
- 산촌진흥지역을 거점으로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개발하여 파급효과를 거양
- 지역의 특산 임산물의 가공·판매, 다양한 산촌자원(자연, 문화, 관광)을 활용한 산촌 녹색관광 도입 등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외소득 증대

## II. 임업 기술보급체계의 개선

### 1. 세부추진계획

#### □ 현황 및 여건

##### ○ 임업기술보급 지도 사업의 특징

- 산주와 임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인 산림조합에서 주관함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밀착 지도 가능
  - 임업의 저수익성으로 인한 산주의 무관심,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및 보급기능의 연계 미흡 및 지도사업과 조합수익사업의 병행으로 인한 지도사업의 부실화
- 최근들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복합경영, 산림휴양 활동의 기회 확대, 산림·숲 해설 및 국민교육기능 등이 강조되면서 임업지도 수요의 다양화

##### ○ 현행 기술지도·보급 체계

- 산림청(경영지원과) : 임업지도에 관한 정책수립
- 국립산림과학원 : 임업기술개발과 임업경영컨설팅
- 산림조합중앙회(회원지원부) 및 산림조합(기술지도과) : 임업기술지도원을 통한 임업기술 보급 및 지도 → 산림경영, 상담 및 정보제공, 산주교육, 자금지원, 산주관리 등
- 교육훈련기관(임업연수부, 3개 훈련원) : 산림공무원 및 기능인영림단, 영림기술자, 기술지도원 등에 대한 임업전문기술 교육훈련
- 시·도(산림환경연구소 등) : 지역단위 임업기술개발 및 보급
- 시·군(산림부서) : 산주의 산림사업 직접 지원 또는 산림조합의 임업기술지도 사업 지원

## □ 문제점

- 산림 경영의 초장기성과 부채 산주의 증가로 지도대상 산주가 점차 감소
  - 산림을 경영대상이 아닌 재산적 가치로 소유한다는 비율이 81%를 차지, 매년 부채산주 비율이 매년 증가('71:15.6%→'87:35%→'02:48%)
- 산림조합의 경영악화로 지도업무에 소홀
  - 임업기술지도원 인건비의 국고지원이 충분치 않아 사업중심으로 운영
    - 임업기술지도원 대부분이 숲가꾸기, 산림토목 등 사업부서 중심으로 배치됨으로써 지도사업에는 소홀
  - 관내 임업지도를 위한 산주정보, 산림현황, 산림경영계획 등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효율적인 지도 활동에 애로
- 임업지도 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
  - 전화/통신상담/현지지도 등 민원인 요청 및 방문형태의 임업지도에 중점을 두어 사이버 경영컨설팅 등 찾아가는 임업지도에는 소홀
  - 상시적인 임업인들의 지도 수요를 분석하여 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비
- 임업기술지도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가로의 육성체계 미흡
  - 산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특정소득 유망품목의 생산재배기술,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수종의 선정, 생산된 임산물의 출하 등 유통과정에서의 지원 요구
  - 그러나 조·육림 등 단편적 사업위주의 지도로 산주의 만족도가 낮음
  - 임업기술지도원의 자기개발 및 신기술 습득의 기회 부족
- 정부의 기술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축소
  - 국고보조금 절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건비에 대한 국고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
  - 보조율 : ('78) 80% → ('90) 70% → ('03) 56% → ('04) 57%

## □ 개선방안

- 산주의 산림경영의욕 고취
  - 산림경영이 가능한 10ha이상 산주에 대해 저극적인 산림정책·기술정보 제공 등 특별관리대책 추진
  - 중앙 및 지역단위 산주교육, 분야별·품목별 연찬회 실시
  - 부재산주의 대리경영 유도 및 산림조합 조합원 가입 권장
- 지도 체계 및 방법의 다양화
  - 임업지도 조직체계의 개편 추진
    - 산림조합중앙회에는 임업지도 및 보급사업의 환경변화에 걸맞도록 “(가칭)산림경영정보지원센터”를 설치 추진
    - 산림조합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예 : 버섯, 밤, 대추, 산채 등) 별 경영지원팀을 설치 추진
  - 사이버 기술지도 등 정보화를 통한 지도방법 다양화
  - 기술지도원,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인력을 망라한 임업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인적네트워크(Expert-Network)를 구축하여 지도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 임업기술지도원의 자질향상
  - 임업기술지도원의 역할 및 기능 조정
    - 의무적 지도 항목을 설정하여 목표관리제와 연계
    - 관내 독립가·임업후계자 등 임업경영주체와 산주를 핵심대상으로 특별관리하고 산림경영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 임업기술지도원의 전문성 강화
    - 현행 직급별 지도원 구분에 추가하여 품목별 전문지도원(Specialist)과 일반지도원(Generalist)을 구분하여 육성
- 기술지도원 인원 조정 및 인건비 국고지원을 현실화
  - 기술지도원의 소요판단 및 인원의 합리적 조정 감축
  - 인건비 국고보조금 현실화 : ('04) 57%→('07) 80%
  - 임업지도 여건 조성후 다양한 지도사업 프로그램 발굴 지원

### III. 임업인 육성 및 소득증대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추진배경

-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40만ha(2004년말 기준)중 69%인 444만ha가 사유림으로 소유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 임업의 장기성·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주들은 대부분 산림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 임산물 생산액 : 3조 2,590억원, GDP의 0.4% 수준
- 산주들로 하여금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의 필요성 대두

##### □ 필요성

-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핵심경영주체 육성 확대
  - 10ha이상 산주 및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지속 선발
    - 2004년말 현재 독립가는 350명, 임업후계자는 1,363명 선발
  - 경영주체 확대 추세(임축법개정으로 독립가, 임업후계자 자격완화)
- 국민이 바라는 산림의 경제, 환경, 문화적 기능 등이 최대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가 필요
  - 산지를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독립가·임업후계자에 대해 산림사업비 지원과 동시 교육 정보제공 등으로 산림경영의욕 고취

## □ 기대효과

-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케 하므로 산지자원화 촉진 및 산촌 소득 증대에 기여
- 산림경영자금 및 기술지원으로 사유림 경영활성화 촉진

## 2. 세부추진 계획

### □ 현황과 여건

- 전국 산림면적(640만ha)의 70%는 국민이 소유한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산림경영에 소극적이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
- 산주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이 약 2ha로 영세 함
- 산림경영에 대한 기대감이 적고, 전반적인 산림투자 의사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
- 정부는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성을 감안, 나무심기, 숲 가꾸기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흡
- 임업인 단체를 통한 사유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진

### □ 문제점

- 투자에 비해 소득이 적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산림경영 의지가 적음  
→ 부동산 개념으로 소유 관리
- 임산물의 다양한 가공기술의 취약으로 수요확대에 애로
- 산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경영기술 정보 등 산림행정에 대한 홍보 부족
- 산림사업의 장기성으로 임업정책자금 용자에 대한 금리 부담

## □ 개선방안

-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독립가·임업후계자 등을 지속 선발 확대
- 산주들이 산림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소득 품목 개발, 복합경영 등에 필요한 임업기술지도 활성화
- WTO/DDA, FTA 등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임산물에 대한 생산·유통·가공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강화 및 「임산물리콜제」 시행
  -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생산이력제 실시
- 임산물의 정보화·브랜드화·표준화 유도 및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임업 정보화 기반 구축
- 산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주와 만남」 행사 등 산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제공기회 확대
- 자체 산림경영이 가능한 10ha 이상 소유산주를 핵심지도산주로 특별 관리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 전문임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추진

### 3. 추진계획

- 농림부문

(단위 : 백억원, %)

구 분	합 계	'04~'08	%	'09~'13	%
예 산	9,630	3,994	41.5	5,636	58.5
- 보조	8,011	3,293		4,718	
- 융자	1,619	701		918	
기 금	2,299	1,057	46.0	1,242	54.0
- 보조	913	418		495	
- 융자	1,386	639		747	
계	11,929	5,051	42.3	6,878	57.7

- 임업부문(농림부문 예산에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계
산촌 개발·보전	145	183	211	209	221	232	1,201
임업기술 보급체계의 개선	101	107	124	107	107	107	653
임업인 육성 및 소득증대	326	421	416	414	427	440	2,444
계	572	711	751	730	755	779	4,298

※ 119조 투융자계획 중 5년간 투융자규모('06~'10)

(단위 : 억원)

구분	'06	'07	'08	'09	'10	합계
예산 +기금	103,289	106,843	109,201	124,888	131,799	576,020

#### IV. 성과지표(농업부문, 임업부문 종합)

세부과제	성과지표
2-2-1. 농업 구조조정	농가 호당 경지면적
2-2-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 직접지불제 확대 실적
2-2-3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농촌 복지지원액 증가율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 매출액 증가율
2-2-4. 산촌 개발·보전	산촌주민 만족도
2-2-5. 임업 기술 보급체계의 개선	임업기술지도 실적지수
2-2-6. 임업인 육성 및 소득증대	임산물 생산액 증가율

# 도시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확대

2006. 10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 협조부처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 < 요약 >

- 분야 : 빈곤퇴치
- 이행계획 : <2-3> 도시빈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확대
- 선정사유 : 2020년 까지 “빈민가 없는 도시(cities without slums) 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된 바에 따라 적어도 1억명의 빈민가 거주민들의 생활개선을 달성한다
- 기본방향 : 도시빈민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및 보건, 취업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
- 추진과제 설정
  - 공공임대 주택건설활성화를 통한 도시빈민 생활 개선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도시빈민 생활 개선
-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 '12년 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12년 까지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국고지원을 차등화 하여 사업(예산)집행비율을 '10년 까지 85%달성

##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이 보다 낮은 주거비로 장기 거주할 수 있어 생활 안정과 중산층으로의 도약발판 제공
- 소방차·청소차량의 진입이 곤란하고 안전·위생상으로도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빈민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
-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놀이터, 소공원등 도시빈민의 주거복지시설의 증가로 도시이미지 개선 및 도시미관 상승 효과.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 □ 공공임대주택건설활성화를 통한 도시빈민 생활 개선

- 참여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03.5.28)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
  -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역별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계층간 분리현상이 대두되고,
  - 민간임대주택 또한 수익성 위주로 단기임대에 치중하여 부도로 인한 입주민 피해 등 부작용이 제기되었음.
- ⇒ 임대주택 공급이 서민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 효율화와 운영 시스템 개편에 중점
  -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 ※ 쪽방생활자(전국 9천여명), 무허가판자촌(수도권에만 1만여 가구)
    - ※ 전체가구(1,431만)의 23%(330만)가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112만 가구는 단칸방에 거주
  -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지하셋방 거주자등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등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

###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도시빈민 생활 개선

- '7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집중과 이에 따른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은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많은 도시문제를 제기
  - 특히, 도시빈민층으로 표현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

- 도시빈민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80년대 초반에 불량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주택개량, 한정된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적 이용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 전면철거에 의한 생활터전의 상실, 세입자의 주거불안 야기, 도시계획과의 부조화, 지나친 고밀도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
- 주택재개발사업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노후불량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전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입

## 2. 필요성

### □ 공공임대주택건설활성화

#### ○ 주거여건 측면

- 그간의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보급률 100% 달성 등 양적 부족문제는 완화되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여전히 불안
- 또한 작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2%이나, 수도권은 93.9%, 서울은 89.2%에 그쳐 여전히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 상존
- 주택보급률 추이 : 98.3%('01) → 100.6('02) → 101.2('03) → 102.2('04)

#### ○ 주거실태

- 330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3인가구 최소8.8평·방2칸·부엌·화장실)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이중 112만 가구는 단칸방에 거주
- 기초생활 수급자에 국한하여 매월 33~55천원씩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71.8만가구로 전체가구의 4.2%수준에 불과
-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서민생활 압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RIR(연간 임대료/연소득) : 20.9%('95)→20.7('00)→18.3('01)→21.3('02)  
(선진국 평균 16.0%)

### ○ 사회적 측면

- 서민층의 기본적인 주거수요는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등 사회통합에 장애로 작용
- 또한 전체 가구의 43%(615만)가 무주택 세대로 남의 집에 거주하여 주기적인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 지속

### ○ 임대주택 제고 수준

-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계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재고량이 절대 부족
-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10년이상 임대되는 실질적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공급한 36만호로 전체주택 재고의 2.7%에 불과
  - 재고율이 7~36%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시 절대량 자체가 부족

※ 유형별 임대주택 재고현황('05년말, 단위 : 만호)

총 계	공공기관					민 간			
	계	영구	50년	국민	5년	계	5년	민간건설	매입
124.3	46.3	19.0	9.2	7.7	10.4	78.0	43.5	13.5	21.0
(비중 100%)	37.2	15.3	7.4	6.2	8.3	62.8	35.0	10.9	16.9

### □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주택보급을 제고와 전반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저소득주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난방, 상하수도, 수세식화장실 등의 주택설비가 미비
  -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주택이 밀집하여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또한 열악한 상태
-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생활 유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시장 메카니즘에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주거수준 제고는 정부의 역할임

-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이 있으나 그 마지막 대안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임
  - 최소한의 개발이익이 확보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적 지원 없이는 주거환경 개선이 불가능
  -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협소한 면적에 부정형의 영세필지들로 구성되어 있고 과밀상태를 보이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는 오히려 개발손실이 초래될 수 있음
- ⇒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 보건위생, 도시안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노후불량주택지구는 한국전쟁 및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근대화 정책의 산물
  -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先성장 後분배의 정책기조로 농촌노동력의 이농·탈농 현상을 유발하였고, 이들 이농향도민들의 정착지로 도시내 불량주거지가 불가피하게 형성
- 도시내 저소득주민 밀집 불량주택지구는 과거 정부정책의 산물로서 국가는 불량주택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하겠음

### 3. 기대효과

#### □ 공공임대주택건설활성화

- 직접적으로는 재정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보다 낮은 주거비로 장기 거주할 수 있어 생활안정과 중산층 도약 발판을 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지불 임대료는 시장임대료의 23~65%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절감에 크게 기여
- 또한 3대 기본 생활요소의 하나인 주거권 요구에 정부가 부응하여 빈부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사회통합을 견인

- 한편 간접적으로 임금상승 요인이 완화되어 노사안정에 기여하고,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전후방에 걸쳐 생산과 고용 증진효과를 유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구 분	원단위	'03~'12	'03~'07
사업비	조원	56.1	28.1
고용창출효과	20.84명/10억원	1,169,124명	585,604명
생산유발효과	2.42636	136.1조원	68.2조원

## □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주거환경사업 전체 추진현황('05.12.31 현재)
  - 1989년이후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지구수는 814개

전체 지구수	완료	시행중	미시행
814 (100%)	308 (37.9%)	500 (61.4%)	6 (0.7%)

-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140개(17.2%)로 가장 많으며, 서울 105개(12.9%), 전남 69개(8.5%), 대구 64개(7.9%), 경기 61개(7.5%), 인천 57개(7.0%) 순으로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

- 사업방식별로는 현지개량방식이 대부분을 차지

전체 지구수	공동주택	현지개량	복합방식
814 (100%)	121 (14.9%)	660 (81.1%)	33 (4.0%)

-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서울·광역시지역에서는 공동주택방식이 많은 편이고, 사업성이 낮은 도지역에서는 현지개량방식이 대부분을 차지

## □ 1단계 국고지원대상지구 추진현황('05.12.31 현재)

- '00.1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가 시급한 482개 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계획('01~'05)」을 확정
- 국고·지방비 1.6조원을 투자(국고 50%, 지방비 40%, 교부세 10%)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
  - '01~'05년까지 국고 8,000억원 지원 완료, 482개 지구중 287개 지구 사업완료, 195개 지구 사업시행중
- 국고에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 생활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시설은 주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서 관리가 용이한 탁아소, 어린이집 및 노인정시설 지원

< 대상시설별 지원내역 >

(단위 : 억원)

구분	계	도로 (천㎡)	상하수도 (천㎡)	주차장 (천㎡)	공원 (천㎡)	놀이터 (천㎡)	탁아소 (천㎡)	어린이집 (천㎡)	노인정 (천㎡)
사업량	-	2,312	583	149	204	25	1	4	22
사업비	16,000	12,811	1,322	816	639	138	14	56	204

□ 2단계 국고지원대상지구 추진

- '05년부터 1단계사업에 이어 2010년까지 2조원(국고 1조원)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 추진
  - 2단계 사업은 철거민 임시거주시설 마련 및 원주민 재정착을 제고방안 마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05. 5월)

< 2단계 사업현황 >

구분	지구수	사업비 (국고)	사업기간	'06년예산
2단계사업	451개	2조원 (1조원)	'05~'10년	1,205억원

## II. 현황과 전망

### 1. 현 황

#### □ 공공임대주택건설활성화

##### ○ 국민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부족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 '98년부터 재정지원(10~40%) 하에 전용11~18평으로 건설되어 30년이상 임대되는 주택으로 '03~'12년간 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
  - 주공, 지자체가 공급주체가 되어 재정(10~40%), 기금(40%), 입주자(10~40%), 사업자(10%)로 차등화하여 사업비용을 분담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0%이하인 소득 1~4분위 계층에게 공급하여 입주자격 요건에 최초로 평형별 소득 차등화개념 도입

##### ○ 다가구매입임대주택('05년기준 5,042호 매입)

- 국민임대주택이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도심 빈곤층의 입주가 저조함에 따라 주공·지방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 '12년까지 3.6만호를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05년 현재 전국적으로 5,042호를 매입완료
  - 재정에서 사업비의 45%, 기금에서 40%를 지원하여 임대료가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저렴

##### ○ 기타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 재무구조가 건전한 연 기금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유도를 통해 민간 부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 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

구 분	사업주체	입주대상자	사업비 부담	평형(전용)	임대료 수준	재고물량('05 기준)
①영구임대	국가, 지자체, 주공	수급자, 모자가정, 청약저축 가입자 등	국가·지자체 재정 85% 입주민 15%	7~12평	보증금 : 250~310만원 월임대료 : 5~6만원	190,077호
②50년임대	국가, 지자체, 주공	청약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 '92~'93 : 재정 50% 기금 20% 입주자 30% · '94 이후 : 기금 70% 입주자 30%	7~15평	보증금 : 490~1,550만원 월임대료 : 58~230천원	91,949호
③국민임대 (30년임대)	주공, 지방공사, 지자체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청약저축 가입자	재정 10~40% 기금 40% 시행자 10% 입주민 10~40%	11~18	보증금 : 1,000~1,200만원 월임대료 : 13~14만원	76,646호
④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주공, 지방공사	소득 4분위 이하 수급자	재정 45% 기금 40% 시행자 10% 입주민 5%	11~18	보증금 : 250~350만원 월임대료 : 8~9만원	국민임대에 포함 (5,042호)
⑤ 5년임대	주공, 지방공사, 민간업체	청약저축 가입자	호당 최고 6천만원까지 기금 용자	25.7평이하	시중임대료의 70~100%	539,515호
⑥ 10년임대	REITS, 연기금, 보험사, 민간업체, 주공	청약저축 가입자	기금 용자	45평이하	- ('03.9 도입)	-
⑦민간건설임대	민간업체	제한없음	지원없음	제한없음	자율결정	135,423호
⑧민간매입임대	개인, 민간업체	제한없음	기금 용자 (전용25.7평이하)	제한없음	자율결정	209,721호

○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99~'00년 기준, %)

국가	자가율	임대주택 거주비율			사회조합	기타
		공공	민간	합계		
영국	68	22	10	32	-	-
네덜란드	50	36	13	53	-	1
독일	40	20	40	60	5	-
프랑스	56	17	21	38	-	6
일본	60	7	27	34	-	5
미국	65	1	34	-	-	-

- 미국은 재정보조 하에 임대료 보조제도를 중점적으로 운용하고 유럽 국가들도 모두 임대료 보조제도를 병행하여 운용

※주요 선진국들의 임대료 보조가구 비율('93~'99년 기준, %)

구분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덴마크	미국
비율	18.0	14.0	6.3	24.3	21.0	12.1

○ 도시빈곤층 주거현황

- 서울, 부산등 대도시 도심에 노숙자(4,500명), 쪽방생활자(9,000명) 등 주거빈곤계층이 상당수 거주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증한 노숙자는 '00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이나,
  - I.M.F 이후 쪽방생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쪽방생활자중 약 20%는 쪽방과 노숙을 반복
  - 이외에도 고시원, 단독주택내 단칸방, 비닐하우스, 지하셋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다수 있음
- 쪽방생활자 등 주거빈곤계층은 생활이 불안정하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

□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주거환경사업 전체 추진현황('04.12.31 현재)

- 1989년이후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지구수는 815개

	지구수	완료	시행중	미시행
▪ 전체지구	815(100%)	245(30.1%)	564(69.2%)	6(0.7%)
▪ 국고지원	453	60	387	6
▪ 지자체 자체사업	362	185	177	-

-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141개(17.3%)로 가장 많으며, 서울105개(12.9%), 전남 69개(8.5%), 대구 64개(7.9%), 경기 61개(7.5%), 인천 55개(6.7%) 순으로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

○ 사업방식별로는 현지개량방식이 대부분을 차지

전체 지구수	공동주택	현지개량	복합방식
815 (100%)	119 (14.6%)	664 (81.5%)	32 (3.9%)

-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서울·광역시지역에서는 공동주택방식이 많은 편이고, 사업성이 낮은 도지역에서는 현지개량방식이 대부분을 차지

## □ 1단계 국고지원대상지구 추진현황('04.12.31 현재)

- '00.1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가 시급한 485개 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계획('01~'05)」을 확정
- 국고·지방비 1.6조원을 투자(국고 50%, 지방비 40%, 교부세 10%)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
  - '01~'04년까지 국고 6,725억원 투입, '05년 1,275억원 투입 계획
  - 1단계 사업은 138개 지구 사업완료, 339개 지구 사업시행중, 나머지 8개 지구는 지구지정 절차이행중으로 '05년까지 차질없이 지원
- 국고에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생활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시설은 주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서 관리가 용이한 탁아소, 어린이집 및 노인정시설 지원

< 대상시설별 지원계획 >

(단위 : 억원)

구분	계	도로 (천㎡)	상하수도 (천m)	주차장 (천㎡)	공원 (천㎡)	놀이터 (천㎡)	탁아소 (천㎡)	어린이집 (천㎡)	노인정 (천㎡)
사업량	-	2,314	588	153	204	26	1	4	22
사업비	16,000	12,753	1,319	862	648	138	14	59	207

□ 2단계 국고지원대상지구 추진

- 금년부터 1단계사업에 이어 2010년까지 2조원(국고 1조원)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 추진
- 2단계 사업은 철거민 임시거주시설 마련 및 원주민 재정착을 제고방안 마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추진, 2월중)

< 2단계 사업현황 >

구분	지구수	사업비 (국고)	사업기간	금년예산
2단계 사업	430개	2조원 (1조원)	'05~'10년	166억원

2. 전 망('12년)

□ 공공임대주택건설활성화

- '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하여 장기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여, 재고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2.7% →12%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주택보급률은 116.7%에 도달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며, 인구 1천명당 주택수도 320호로 크게 증가
-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이 15%로 확대되고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면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이 향상

## □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가구간 주거 격차가 완화되고 전체가구의 23%에 달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6%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소방차·청소차량의 진입이 곤란하고 안전·위생상으로도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34만 주민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
  -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놀이터, 소공원 등 주민복지시설의 증가로 정주의욕이 고취되며, 지역 이미지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효과
- 도심지내 저소득층이 입주 가능한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량이 확대되어 사회적 통합(Social Mix)에 기여
- 2조원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로 20조원의 주택개량 투자를 유발하여 약 15만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표로 본 주거환경개선구역 5년후 모습 >

지 표	2004년	2009년
▪ 무허가 건축물 비율(%)	23.6	5.7
▪ 노후건축물('85.이전) 비율(%)	55.3	13.3
▪ 영세건축물(60㎡) 비율(%)	44.2	10.6
▪ 불량도로(4M미만) 비율(%)	10.4	2.5
▪ 상수도보급 비율(%)	37.1	8.9
▪ 하수도보급 비율(%)	44.7	10.7

### Ⅲ. 비전과 전략

#### 1. 비전과 목표

##### □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주거복지 지원로드맵 제시

《 계 층 》	《 특 징 》	《 지원 방향 》	
소득 1분위	· 임대료 지불 능력 취약계층	· 다가구 등 매입임대 ·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 주거급여 지원 확대	집값 안정 기조 유지
소득 2~4분위	· 자가주택 구입 능력 취약계층	·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소득 5·6분위	· 정부지원시 자가가능 계층	· 중소형주택 저가 공급 · 주택구입자금 지원강화	
소득 7분위 이상	· 자가주택 구입가능 계층	· 시장기능에 일임 ·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2년까지의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체계를 구축('03.9)
- 양적 지표인 주택보급률 외에 주거의 질적 측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04.6월 기준 고시)

##### □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2020년까지 “빈민가 없는 도시(cities without slums)”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된 바에 따라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들의 생활개선 달성을 목표로 도시빈민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되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및 보건, 취업지원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을 유도하여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구조적으로 해결

## 2. 추진전략

### □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15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중
  - '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호, 민간부문의 장기임대 50만호 등 총 15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토록 계획을 수립('03.9.3)

< 장기임대주택 건설 계획('03~'12) >

구 분	총 계	'03	'04	'05	'06	'07	'08~'12
국민임대	100	8	10	10	11	11	50
민간장기임대	50	-	3	5	6	6	30
합 계	150	8	13	15	17	17	80

-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달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
  - 택지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령을 제정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전담 기획단을 건교부에 설치('04.3)
- 도심 빈곤층이 영구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권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매입방식을 도입('04.6)
  - 임대료 수준(15평 기준) : 보증금 250~350만원, 월임대료 8~9만원
- 민간의 장기임대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택지·세제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을 위해 중형(전용 25.7~45평)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공공택지 공급확대 및 세제감면 등 지원
  - 장기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건설주체를 부동산투자회사(REITS),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에까지 확대

< 연도별 임대주택 건설현황(호) >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국 민	-	2,501	20,226	10,009	35,227	50,819	71,791	91,423	96,183
5년	108,115	91,294	89,107	85,923	66,980	35,767	12,977	4,923	5,540
민간건설	-	-	-	-	16,920	14,142	7,636	11,496	8,279

□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국고지원

-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자체에서 요청한 지구중 노후·불량도가 높고 투자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 451개를 사업지구로 선정
  - 수도권(39), 강원·제주(50), 충청(83), 호남(175), 영남(104)개소로 지구내 주택 92천동, 13만가구, 거주인구 39만명임
- '10년까지 국비·지방비 2조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등)을 정비하고 복지시설(탁아소·놀이터 등)을 확충
  - 1단계와 같이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Matching-fund방식으로 국고지원

총사업비	연도별 국고지원액(억원)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00	10,000	166	1,205	2,000	2,500	2,000	2,129

- 국민주택기금 융자(2천~12천만원, 연리 3%, 20년 상환),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을 통해 주택개량
  - 78개 지구는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시행(약 5만세대)

□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지원

- 주택 개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진입도로 확보는 물론 공용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등 주민복지시설 확충

- 공사기간중 거주민 임시이주를 위한 임시수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 ※ '05. 3.18 도정법 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임시수용시설 설치 비용지원근거 마련
- 빈곤계층의 주거실태와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건설의무화
  - 건설호수의 2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임대주택 건설량의 40%를 40㎡이하의 소형임대주택 건설
  - ※ '05. 5.1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반영

## IV. 중점 추진과제

### 1. 추진과제 선정배경

#### □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만큼,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 주거마련을 위해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
  - 또한 재무적으로 건전성을 가진 연 기금을 통한 10년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 □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00.12월 소위 '달동네'등 도시영세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계획인 「1단계 사업계획('01~'05)」을 확정·발표

- 국고·지방비 1.6조원을 투자(국고 50%, 지방비 40%, 교부세 10%)하여 전국의 482개 지구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
- '01~'05년까지 국고 8,166억원(1단계 8,000억, 2단계 166억)을 투입하고 '06년 1,205억원 투입 계획으로 있으나, 매년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따른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지구의 40.5%인 195개 지구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음
- 1단계 사업은 287개 지구 사업완료, 195개 지구 사업시행중
-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을 유도,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2. 추진과제 선정결과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장기 임대주택 50만호 건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입

## 3.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 현황과 여건

- 장기임대주택 부족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 '98년부터 재정지원(10~40%)하에 전용11~18평으로 건설되어 30년이상 임대되는 주택으로 '03~'12년간 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
  - '03~'05년중 목표 28만호 대비 92.9%인 259천호를 건설  
('98~'02년간 건설물량 11.9만호 포함시 총 37.8만호 건설)
  - 주공, 지자체가 공급주체가 되어 재정(10~40%), 기금(40%), 입주자(10~40%), 사업자(10%)로 차등화하여 사업비용을 분담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0%이하인 소득 1~4분위 계층에게 공급하여 입주자격 요건에 최초로 평형별 소득 차등화개념 도입

## ○ 문제점

- 참여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택지 부족, 지자체 및 주민 반발 등 장애요인 해소가 관건

## ○ 개선방안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제59차 국정과제회의 보고
  - 수요 부응형 공급체계 구축 ⇒ 『필요한 곳에 공급』
    - '07년중 전면적인 임대수요 조사 후 공급계획 재조정
    - 신규건설과 함께 공급방식을 다양화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12년까지 3.6만호)
  - 기존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후 임대('12년까지 3.2만호)
  - 기존주택 매입후 철거·신축·임대방식 도입
  -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공급』
    - 개발이 가능한 잠재 후보지를 최대한 발굴
    - 사업비를 현실화하여 분양주택과 큰 격차 없이 계층간에 혼합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공급
-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개선 ⇒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
  - 입주 및 계약갱신시 소득·자산 심사를 강화
  - 입주자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산정
- 관리 효율화 및 임차인 참여 활성화
  -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 임차인 대표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참여 확대 유도

## □ 장기 임대주택 50만호 건설

### ○ 현황과 여건

- 그 동안에 공급된 5년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5년 임대하고 그나마 2.5년 경과후 분양전환되어 할부분양주택화 함에 따라 장기임대 서비스 기능 상실
  -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 의사(%)

구 분	계	수도권	부 산	광 주
분양전환의사	63.5	75.0	84.0	25.5

- '03년 이후 분양전환실적이 건설실적을 초과하여 향후 5년 임대주택의 재고가 감소할 전망

- 5년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전환실적(호)

구 분	'00	'01	'02	'03	'04	'05
건설 실적	85,923	66,980	35,767	12,977	4,923	5,540
분양전환실적	28,652	21,778	31,441	16,768	34,314	39,322

-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부도임대주택이 10만가구, 이중 입주후 부도는 6만가구에 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및 주거불안 우려

- 이중 임차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매추진(예정) 주택은 31천호

- 부도임대주택 추이(단위 : 만호, 조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부도세대수	22	22	22	21	18	15	12	10
(준공후)	(12)	(12)	(13)	(12)	(11)	(9)	(7)	(6)

※ 공사중 부도임대의 경우 주택보증의 보증으로 임차인 피해는 거의 없음

## ○ 문제점

- '98년이후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구축효과와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분양주택 건설에 치중함에 따라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위축
- 또한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영세 주택업체들이 분양사업 보완 수단으로 참여함에 따라 경기변동 영향에 의한 부도문제로 임차인 피해 가능성 상존

## ○ 개선방안

- 임대주택 재고확충 및 실질적인 임대기능 확보 차원에서 10년 장기임대주택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
  - 민간위주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하의 장기계획(50만호 계획)의 재조정 여부 검토
- 임대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 부도발생위험 증가 등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부도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

-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장기자금 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
-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지원은 강화하되, 주거복지 제고 및 투기목적 악용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
  - 임차인의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공적 기능 강화
  - 다주택 보유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임대기간 연장 등 공적 규제 강화

## □ 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 '05년부터 1단계사업에 이어 2010년까지 2조원(국고 1조원)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 추진
  - 2단계 사업은 철거민 임시거주시설 마련 및 원주민 재정착을 제고방안 마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05. 5월)

< 2단계 사업현황 >

구분	지구수	사업비 (국고)	사업기간	'06년예산
2단계사업	451개	2조원 (1조원)	'05~'10년	1,205억원

## V. 추진체계

### 1. 예산

####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장기 임대주택 50만호 건설

-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대한 재원 조달 및 배분계획
  - 사업비 분담체계 변경안

구분		계	재정	주택기금	사업자	입주자
변경	I형(11~15)	100%	40%	40%	10%	10%
	II형(16~18)	100%	20%	45%	10%	25%
	III형(19~24)	100%	10%	50%	10%	30%
	사업비	66.8조원	13조원	31조원	6.7조원	16.1조원

※ II형과 III형의 경우 현행기준 유지시 임대료가 시세를 초과하는 단지가 많음.

## □ 주거환경개선사업('05~'10)

< 2단계 사업현황 >

구분	지구수	사업비 (국고)	사업기간	'06년예산
2단계사업	451개	2조원 (1조원)	'05~'10년	1,205억원

## 2. 성과 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2-3-1. 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	국민임대주택 건설 호수
2-3-2 장기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	총주택 중 장기임대주택 비중
2-3-3 주거 환경개선 사업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사업집행 실적



#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실현

2006. 10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빈곤율 및 빈부격차 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개선되다가 다시 악화 추세

< 실업률 및 빈곤 동향('97~'04) >

연 도	'97	'98	'99	'00	'01	'02	'03	'04
최저생계비 미만(%)	3.9	8.2	9.4	7.6	6.5	5.2	6.1	5.7
중위소득 50% 미만(%) (국제비교기준)	9.1	10.7	10.6	10.0	9.8	9.7	10.8	12.2

※ 지니계수 추이 : 0.316('98)→0.319('01)→0.312('02)→0.306('03)→0.310('04)

※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5.41('98)→5.36('01)→5.18('02)→5.22('03)→5.41('04)

※ 공공지출의 소득격차 개선율(사회지출 전후 지니계수 변화율)  
美 16.3%, 英 27.1%, 獨 28.7%, 스웨덴 47.6%('94-'95)

○ 안정적인 실업률 전망(3% 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양극화 및 고용 불안 등으로 근로빈곤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사회 근로빈곤층 규모('02년 도시가계연보 및 자활사업 실태조사) >

빈곤선의 120% (132만명)	차상위 빈곤층(168만명) (근로능력자 50만명)	
최저생계비(빈곤선) (82만명)	기초생활수급자(140만명) (근로능력자 30만명)	비수급 빈곤층(104만명) (근로능력자 52만명)
부양의무자 · 재산		

**□ 국민층에 대한 생활보장에 비해 빈곤화 방지 및 탈빈곤 지원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

※ 선진외국이 공공부조를 통해 10% 내외의 국민에게 의료비·교육비·주거비를 지원하면서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는 추세

**□ 국민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사업범위는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을 추진할 효율적인 전달체계 등 인프라 미흡**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범정부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적정인구에 근거한 범정부적인 인구정책의 추진 필요
- 고령화를 대비, 생산적 노인 일자리 사업의 단계적 확대 및 요양보장제도 실시에 대비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필요

**□ 건강가정사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동 노력 및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필요**

-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지원 시책 강화

**□ 장애인의 「빈곤」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마련 필요**

**□ 교육·취업기회의 제약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빈곤 문제에 보다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

- 직업활동 능력배양 및 직업활동 기회 제공 확대가 중요

**□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안정된 판로 확보등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보장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장애인생산품 매출액 30%이상, 근로장애인 임금은 10%이상 증가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 우선구매 품목 확대에 의해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 전망(장기적으로 우선구매를 위한 독립입법도 추진 검토 필요)
- 장애인 직업활동 등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편의시설 확충 등 여건 개선이 필수적
- 신체기능의 회복·유지를 위한 재활의료서비스는 그 필요성에 비해 공급이 적고, 사적 영역에서의 확충도 한계
  - 서비스 공급기반 확대가 요구되어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6개 권역별 재활센터 건립 반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시급
  - 지속적인 편의시설을 확충에도 불구하고, 철도·지하철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에 미달
-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및 일부 시설의 부적정 설치 등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편의시설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사회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대책 필요
  - 동반성장을 위한 인적자본(human capital) 투자,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사회안전망을 접근

## 2. 기대효과

### □ 빈곤 걱정 없는 사회 지향

-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기본생활 보장 및 빈곤위험계층의 빈곤예방·탈출 지원강화
  - 사후적 빈곤율(공적이전 후 빈곤율) 최소화

###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에 기여

- 비수급 빈곤층 축소(신규) : 12만명 축소(177만명 → 165만명)
- 긴급복지지원(신규) : 10만 가구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신규) : 16만명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율 인하(15%→10%) : 63만명
-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신규) : 12만명
- 노인, 자활사업 참가자 등 일자리 제공 : 16.7만명→41만명
- 차상위 중증 노인·장애인 시설입소비 지원(신규) : 7천명 내외
- 차상위 중증 노인·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신규) : 1.1만명 내외

### □ 빈곤율 및 빈부격차는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

- 소득재분배 및 빈부격차 해소
  - 사회안전망에 10조원 추가 투자시 Gini계수 0.306 → 0.289로 개선('03계수 기준, 보사연 추정)
  - OECD 평균 가처분소득 Gini 계수 : 0.272

## II.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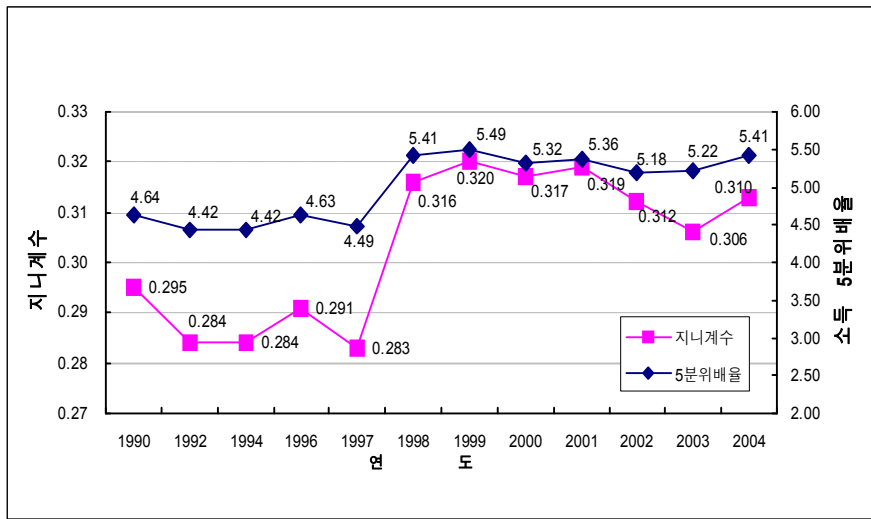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빈곤,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

< 사회안전망 현황 >

< 1차 사회안전망 >	< 2차 사회안전망 >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99)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00)
건강보험 365일로 급여 확대('00)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으로 확대('05)
고용보험 1인이상 사업장 확대('98)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산재보험 1인이상 사업장 확대('00)	

- 그러나, 산업구조/노동시장/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갈등과 경제효율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에 다수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제도 개선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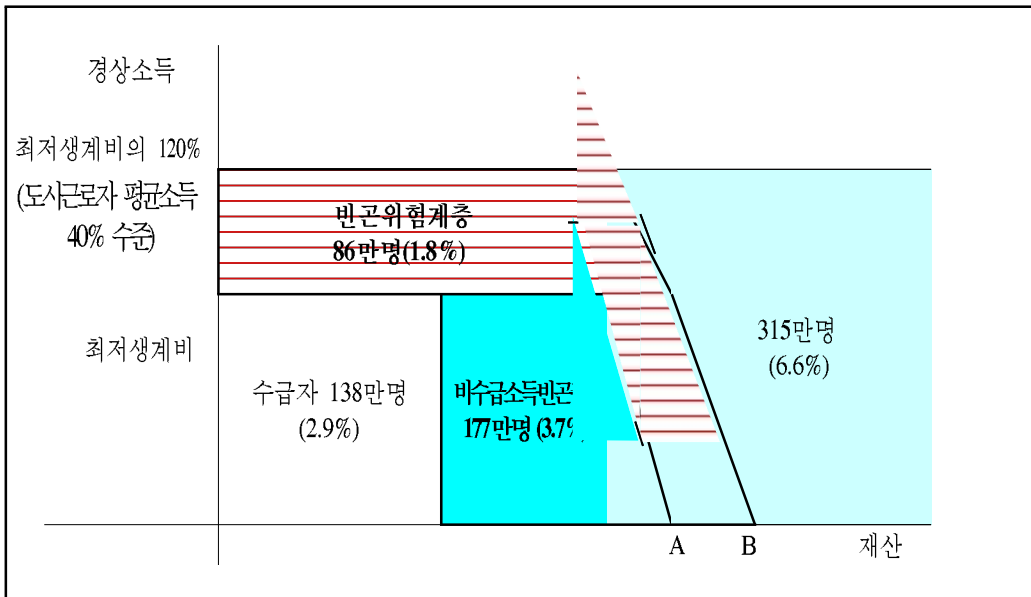


\* 자료: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 엄격한 책정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20% ~ 30%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

- 수급자(138만명)를 포함할 경우, 최저생계비 120%미만 규모는 총 401만명(인구대비 8.4%)로 잠정 추계('03년)
- 이 중 우선적 정책지원대상으로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고려한 차상위계층의 규모(소득인정액100 - 120%)는 263만명(5.5%)
  - 차상위계층 = 비수급소득빈곤층 177만명, 빈곤위험계층 86만명

<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0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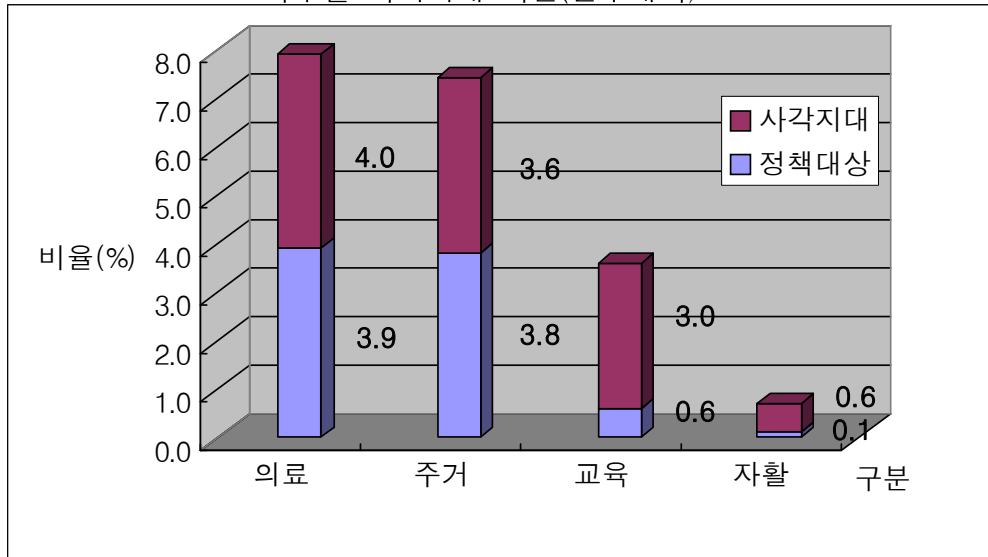


- ◆ A: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 ◆ B: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차상위계층 실태 조사'에 의한 잠정추계('05년.7월), 재산까지 고려한 정책대상을 정확히 추계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진행 중('05년 10월 마무리 예정)
- \*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 비수급 빈곤층과 최저생계비의 100% - 120%에 해당하는 계층은 총 578만명으로 잠정 추계('03년 기준)되나, 이 경우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많은 계층이 포함되어 정책지원대상으로 설정하기 곤란

○ 가구의 특정 욕구에 대한 지출(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제한 후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는 욕구별 사각지대도 상존

-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의 순으로 빈곤위험에 영향을 미침

< 욕구별 사각지대 비율(인구대비)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이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은 구축

- 그러나,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과반수이상의 노인이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함

※ 국민연금이 성숙되는 2010년에도 절반정도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질 전망

○ 5인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일반소득계층보다 크게 넓은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 비정규직의 증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조기퇴직 및 이에 따른 근로기간의 단축은 사회보험 가입기간의 단축 초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40.5%, 57.8%, 27.4%, 0.3%임(최저생계비 이하의 미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 79.2%, 고용보험 86.9%, 산재보험 63.1%, 비자발적인 건강보험 체납자 비율 2.8%)

-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자 등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주요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잔여적)

### □ 사회안전망의 정책전달체계가 취약

- 서비스 기관별 전달체계의 분산으로 복지-보건-고용이 연계된 One-Stop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 인력, 서비스 연계협력 구조 및 정보화 등 정책집행인프라도 미흡

### □ 이러한 느슨한 사회안전망은 낮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서 기인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1990년 GDP 대비 4.25%에서 2001년에는 8.70%로 확대되었으나, 복지선진국의 국민소득 1만불 시점과 비교시 크게 미흡한 수준
  - ※ GDP 1만불 달성시점의 각국의 사회복지지출 : 한국('01) 8.7%, 미국('78) 13.49%, 일본('84) 23.96%, 독일('79) 22.52%, 평균(22개국) 20.04%

<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 비교('01) >

구분	한국	멕시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GDP 대비, %	8.7	11.8	15.2	17.5	22.4	28.5	28.8	29.5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2004.8

※ 사회복지지출(OECD) : 노령, 유족, 무능력 관련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등 9개 항목에 대한 공공복지지출과 법정민간 복지지출의 합계

○ 국민연금이 성숙함에 따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급증 전망

- 그러나, 미래세대에게는 현 세대로부터 전가된 보험료의 인상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공적부조제도 의존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의 이중고통이 우려

※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GDP 대비 '05년 0.56%에서 '10년 1.03%(0.95%), '15년 1.3%(1.23%), '20년 1.75%(1.59%), '30년 3.29%(2.76%), '50년 7.09%(5.74%)로 늘어날 전망 [명목GDP 기준, ( )안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준, 국민연금연구원 추정]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 미흡

- OECD 평균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지니계수 기준)는 41.6%에 이르나, 한국은 '00년에 4.5%에 불과

< 각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비교 >

국가	스웨덴 (1987)	영국 (1986)	미국 (1986)	독일 (1984)	OECD 평균	한국 (1996)	한국 (2000)
시장소득 기준(A)	0.439	0.428	0.411	0.395	0.380	0.302	0.374
가처분소득 기준(B)	0.218	0.303	0.335	0.249	0.272	0.298	0.358
개선율(%)	101.4	41.3	22.7	58.6	41.6	1.3	4.5

\* 자료 : 보사연, 2002

\* OECD 평균은 주요 15개국 평균, 지니계수가 작을수록 소득분배 평등

\* 개선율은  $\{(A-B)/B\} \times 100$ 으로 조세·사회보장의 소득분배 개선효과 의미

-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작아, 이로 인한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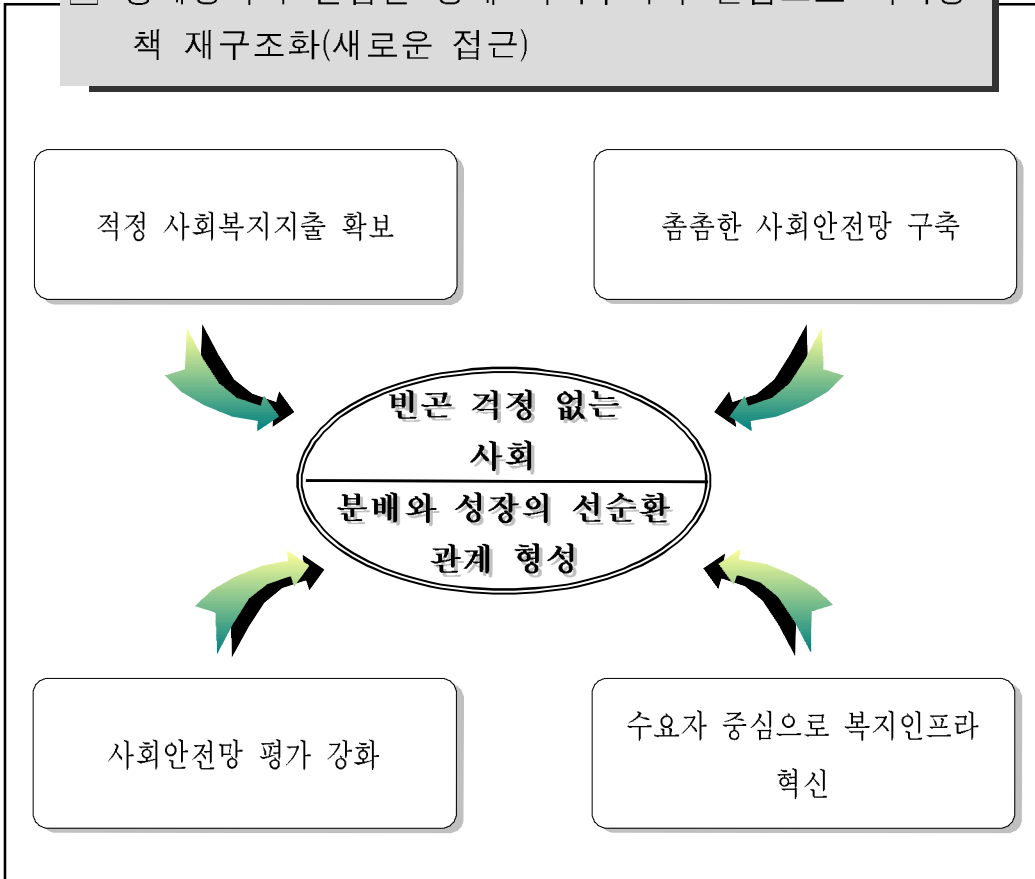
※ 이전소득 재배분 효과(조세연구원) : 한국 1.5%('03), 미국 10.9%('99), 영국 26.4%('01~'02), 일본 15.7%('96), 뉴질랜드 18.7%('96), 캐나다 16.7%('01)

### Ⅲ. 비전과 전략

비 전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정책목표	이 행 과 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제도 도입 <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콜센터 설립·운영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 강화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의료급여 확대 및 보장성 향상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개선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input type="checkbox"/> 자활지원제도 개선 <input type="checkbox"/> 노인일자리 확충 <input type="checkbox"/> 노인 수발보장제도 도입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확대 및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확충 <input type="checkbox"/> 치매·중풍 노인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input type="checkbox"/> 사회안전망 정책 평가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1. 비전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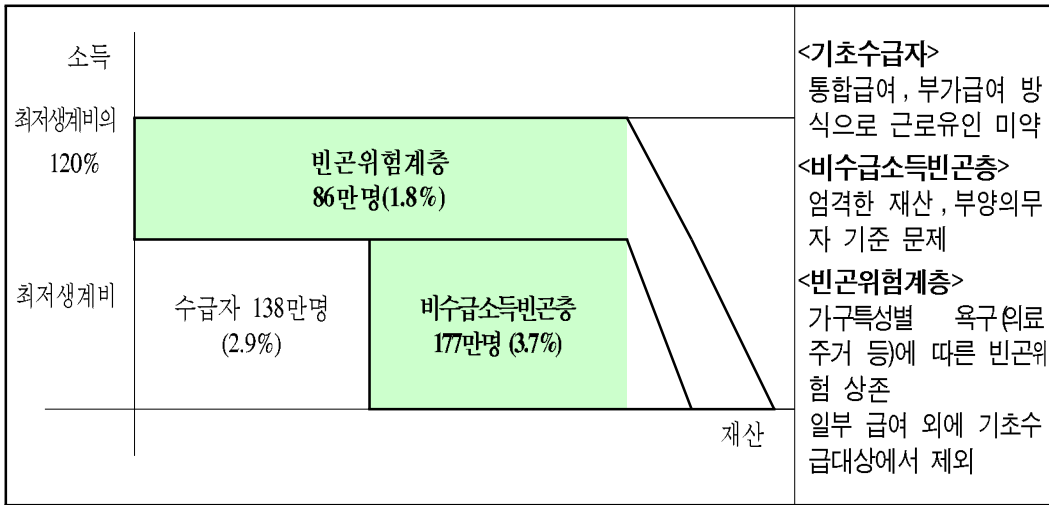
- 사회안전망 개혁으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희망 한국』 구현
- 경제정책과 결합을 통해 사회투자적 관점으로 사회정책 재구조화(새로운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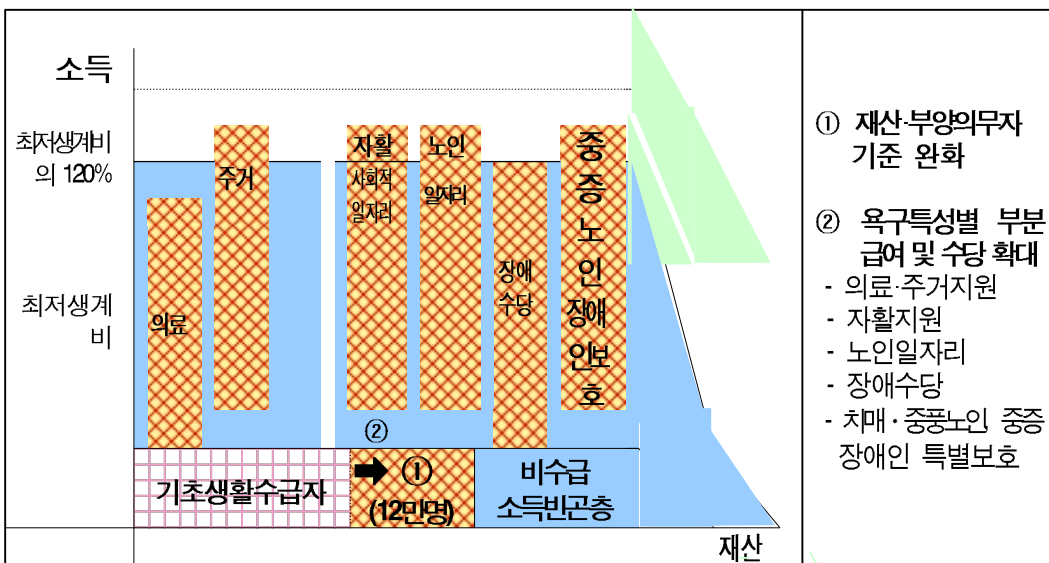
## 2. 기본방향

-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기본생활보장 및 사회통합 제고
- 사후지원에서 탈빈곤 및 빈곤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및 건강성 제고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 <현 행>



### <개선 방향>



### 3. 추진전략

- 적정 복지지출을 확보함으로써 선진경제에 걸 맞는 선진사회 기반의 구축
- 기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원배분 합리화
- 향후의 제도 유지비용과 도덕적 해이를 감안, 비용 효과적 (Cost Effective)으로 사회안전망을 재구성
  - 사회보험(본인기여) 내실화
  - 공적부조제도(무상보조) 강화
  - 기존 사회안전망 평가 및 제도개선
- 복지비용 부담 및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체계 마련

## IV. 중점 추진과제

### 1. 추진과제 선정배경

- 경제와 선순환하는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부조 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기본생활 보장강화, 사회보험 개혁 및 내실화를 통한 사회보험 재정의 장기 지속성 확보의 동시추진이 바람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혁 등 기 추진중이거나 별도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 최저생활보장

-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보장, 즉 최후의 안전망(last resort safety-net)으로서의 빈곤해소(Anti-poverty)기능 수행
- 이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확대와 욕구에 따른 지원수준의 차별화를 통한 보완 필요

## □ 빈곤예방 및 완화

- 기본욕구(의료, 교육, 주거)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보장(Affirmative Actions)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한 기회균등과 안정(Opportunity and Security) 추구
- 국가복지의 상대적 소외계층이었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욕구에 따른 지원(예. 자활, 의료, 교육)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각종 수당(예. 장애수당 등)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본욕구 해소의 공평성 제고 필요

## □ 경제상생

-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질 제고와 사회통합(Social Integrity)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
- 경제와 복지가 상충(trade-offs)적이라는 고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상생적(positive-sum) 사고로의 전환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 자본에의 투자와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장 잠재력에 기여

## 2. 추진과제 선정결과

###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긴급지원제도 도입
- 보건복지콜센터 설립·운영

### □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 강화

- 저소득층 의료급여 확대 및 보장성 향상
- 주거급여 개선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 자활지원제도 개선
- 노인일자리 확충
- 노인 수발보장제도 도입
- 장애수당 확대 및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확충
- 치매·중풍 노인,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 □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 사회안전망 정책 평가체계 구축

## V.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비수급소득빈곤층 : 선정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확대  
⇒ 비수급 소득빈곤층 중 12만명 내외 추가 보호

####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2000. 10월) 후 전인구의 3%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
-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질적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77만명(3.7%, 2003년 기준)으로 추정
  - 수급신청탈락 가구의 25.7%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 이들 중에 56.2%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지 못함

< 2006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라고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현행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130%로 완화('06. 7월)
  - 수급자 116천명 증가 예상('0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청규모 등에 따라 일부 변동도 가능)

## 2. 긴급지원제도 도입

###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긴급지원제도 도입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정부재정에 의한 긴급생계급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 적십자사의 긴급구호사업 등이 운영 중

- 그러나 공공부조제도의 엄격한 선정기준 및 절차, 사전심의로 인한 지연 사례 등으로 신속한 위기상황 지원에 한계

• 빈곤으로 인한 자살(명) : 454('00)→ 525('01)→ 600('02)→ 731('03)

### □ 긴급지원 제도의 도입

####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호 조치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시행

- 생계·의료·주거·기타지원 등 금전, 현물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상담 등 복지서비스 연계

#### ○ 긴급지원 인프라 구축

- 『보건복지 Call Center』 및 시군구 복지기획팀 설치

• 복지관련 유사전화번호를 3자리번호(129)로 통합·연계

• '05년 사회복지전담인력 1,830명 보강시 시군구별 평균 8명의 인력(복지기획업무 3명, 서비스연계업무 1명, 긴급지원업무 1명, 자활업무 1명 등) 보강

- 자원봉사자 및 지역복지위원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체계 강화

## 4. 보건복지 콜센터 설립·운영

###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관련 전화번호가 복잡하게 난립
  - 복지관련 전화가 10개 이상 상호 연계없이 개별 운영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위기가정 조기발견 시스템 기능 수행 미흡

### □ 보건복지 콜센터 설립

- 특수 전화번호(129) 확보, One-Line 체계상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 기능 수행
- 조직체계 : 5개반 132명
- 운영 체계
  - 전문분야별 상담·연계 → D/B(분석) → 제도반영
  - ※ 운영시간 : 주5일, 09:00~18:00(긴급지원상담은 24시간, 4조 3교대)
  - 상담 범위 등
    - 보건복지 관련 주요 민원 전반을 대상, 일반국민과 관련성이 적어 상담이 부적절한 사항 제외
    - 긴급지원상담 : (콜센터) 일반상담 및 1차접수 → (지자체·민간상담기관) 현장조사, 심층 면담 및 사후관리
    - 인터넷, 서면민원은 콜센터 안정화 후 단계적 처리

## 5. 저소득층 의료급여 확대 및 부양의무자 보장성 향상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질병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
-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확대  
⇒ 차상위 아동·임산부·장애인 16만명

### □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료는 보장
- 차상위계층의 경우 고액·중증질환 발생시 상당한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 우려
  - ※ 상위 20개 질환관련 비급여 포함 연간 1인당 평균 환자 부담 : 약 2,873천원

< 2004년 건강보험 급여율 현황(%) >

계	보험자 부담	본인부담			
		계	일부부담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100.	61.3	38.7	23.1	14.6	1.0

- ※ 2004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인용
- ※ 빈곤층 의료보장률 (전인구대비)한국 3.5→8.3%, 美 12.4%
- 의료급여제도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건강보험과 비교시 노인, 장애인, 고액 중증질환자의 비율이 높아 급여비 지출 급증
  - ※적용인구 : 의료급여 153만명(인구의 3%), 건강보험 47백만명(97%)
  - ※노인(65세이상) 비율(건강보험 : 의료급여) → 7.9% : 27.2% = 1: 3.44

※정신질환자 비율(건강보험 : 의료급여) → 2.8% : 11.4% = 1: 4.02

※희귀난치성 질환자 비율(건강보험 : 의료급여) → 0.2% : 5.0% = 1:25

※1인당 연간 급여비('04) : 건강보험(344천원), 의료급여(1,674천원)

※연간 1인당 급여비 증가율(12.4%) : 1,490천원('03년) → 1,674천원('04년)

## □ 개선대책

- 의료급여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단계적/선별적으로 확대
  - 18세미만 아동('06년), 임산부, 장애인('08년 이후)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확대(16만명)
    - ※18세 미만 아동 87천명, 임산부 12천명, 장애인 64천명 ('06 기준)
    -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04), 12세 미만 아동('05) 대상 기 시행
  - 차상위계층 노인 의료급여 지원은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관련대책 수립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비용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검토(총 362천명, '09년 기준 약 4,600억원 소요 추정)
  - 차상위 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재산·소득·자동차 기준에서 실제소득 중심으로 완화 적용 검토(제도개선)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63만명)의 본인부담율을 15% ⇒ 10%로 합리적 조정('07)
- 의료 과다이용(moral hazard)의 방지 방안 강구
  -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사례관리요원을 배치('05년 150명 ⇒ '06년 시군구 당 1명)
  - 연 365일이상 수진자에 대한 심층분석 및 관리강화

## 6. 주거급여 개선 및 저소득층 주거 안정

### □ 기초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거급여를 가구규모별로 정액 지원

- 주거형태(자가, 임차)별 구분이 없고, 주거비가 생계비에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

< 주거급여 수준('05) >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37,937	85,121	118,426	158,784	175,219	206,120
계 (최저주거비)	70,937	118,121	160,426	200,784	230,219	261,120

\* 최저주거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 □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전세가구 기준으로 설정되어 대도시 지역 기초수급자의 주거비는 부족한 실정

- ※ 기초수급자 가구 중 대도시 임차가구는 20만가구(전체 수급자의 25.7%)
- ※ 빈곤층 주거보장률 (전인구대비)한국 3→7.5%, 英 17.3%('03), 美 5.0%('99)

### □ 개선대책

- 기초수급자 대상 주거급여 현실화 유도
  - 대도시 거주 전·월세 가구에 대하여 추가지원 기준 마련
    - 현행 중소도시 임차가구 최저주거비 수준 → 대도시 임차가구 최저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지자체 부담) 검토
-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비 지원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간 정책협의 정례화

## 7. 자활지원제도 개선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30만명)에 대해서는 근로연계복지 강화
- 일자리가 없는 차상위 계층(74만명)의 빈곤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 일자리 확대('09년 7만개) 및 자활인프라 확대
- 지역단위의 복지-고용 연계·협력의 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사업 운영 중이나, 재정여건 등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제한적
  - 차상위 이하 실직자 87만명 중 7.8%에 대해 자활·사회적 일자리 제공 중
  - 복지부 : 자활근로 등 6.7만명, 노동부 : 직업적응훈련 등 3천명
- 취업·비취업대상자의 구분 및 자활사업 집행기관의 분리(지자체,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등)로 인하여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미흡

### □ 개선대책

- 저소득층의 특성별로 자활 및 고용서비스 내실화
  -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대책」(‘04.11, 제56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에 의한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다음 대책 보완

### □ 저소득층의 특성별로 자활 및 고용서비스를 내실화

-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 전문적 창업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시장재진입 등 종합적 자활대책 시행

- 근로능력있는 차상위계층 중 실직자·비경제활동활동인구, 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가구여건에 따른 조건부과제외자 등 대상(Targeting)
-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도입 추진을 통해 근로연계 소득지원
- 차상위계층 중 불안정 취업자, 기초수급자 중 취업에 따른 조건부과제외자 등 대상

## □ 자활사업 및 사회적일자리 사업 확대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대상 2만명 ⇒ '09년 6만명으로 확대
  - ※ 기초수급자(4만명) 포함시 '05년 6만명 → '09년 10만명
- 가사·간병도우미사업('05년 7천명) 등 사회적일 자리를 '07년부터 연간 1만개로 확충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참여 확대

## □ 자활사업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

-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자활담당공무원을 배치('05년 242명 → '08년 750명)하여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 근로·직업능력 판정(Work-Test) 매뉴얼 개발('05 하)을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 직업능력 판정 및 자활 프로그램 제공
- 시장진입이 높은 자활근로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립 촉진
  - 단순근로유지형의 비중을 축소하고 조기시장진입이 가능한 유형의 사업 위주로 전환('04년 46%→'05년 50%→'06년 55% 목표)

## 8.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 일할의사와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확대

- ※ 60세이상 노인취업 희망비율 78.8%수준
- '05년 35,000자리 ⇒ '09년 30만자리(예산사업 14만명, 비예산사업 16만명)로 단계적 확대
  - ※ 일자리 참여기간을 6 →7개월('06년)로 연장
  - ※ 고령자 고용률 58.7%('05), 日 63%('04)

< 공적노후소득보장 체계 >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피용자	자영자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차상위 저소득층	빈곤선이하 계층
추가 보장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금 (기업연금)				
1차 안전망	1층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연금		
(빈곤선) 2차 안전망					경로연금 + 노인일자리 (*33.7 이전)	(65세이상)
	0층					기 초 생활보장

- ▶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연계,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은 별도과제로 검토

## 9.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 □ 현황 및 문제점

-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 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와 그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부담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 요양보호 대상노인 현황 >

노인 현황		요양보호 대상 노인	시설 현황 ('04년말 기준)	비용부담
총 노인 4,383천명	기초수급자 352천명	43천명	무료시설 239개소 18천명	무 료
	서민층 2,716천명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하	242천명	실비시설 43개소 2,400명	본인부담 50% (40~70만원)
	중산층이상 1,315천명	117천명	유료시설 75개소 2,600명 요양병상 입원 2만명	전액 본인부담 (100~250만원)

※ 요양보호가 필요한 中症이상의 노인 수를 소득계층별 노인의 9%로 추정한 수치

###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 치매, 중풍노인가정의 고통 분담을 위해 사회공동의 부담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요양보장제도 도입
  - 요양보험료, 정부재정지원, 본인부담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重症노인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05. 7월~'08. 6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시범 사업 결과 및 시설인프라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
- 노인수발보장법안 제정 추진 및 적정 수가기준 마련 등으로 시설 인프라 확충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세부시행방안은 별도대책으로 수립, 시행

## 10. 장애수당 확대 및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인프라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전무
  - ※ 기초수급 장애인 285천명에 대해 장애정도별 월 2~6만원 장애수당 지급, 1급 중증장애아동 부양자 2.7천명에 대해 월 5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도 미흡
  - ※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대상(48천명) 의 15.3%(7,400명)만을 보호고용 중

### □ 개선대책

-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기준 완화
-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현행 기초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중증장애인(122천명)까지 확대(월 7만원, '07년)
  - ※ 현행 기초수급 대상 장애수당 단가도 인상(중증 6만원→'06년 7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 인프라 확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설('05년 248개소 → '09년 309개소)을 통해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도모
  - ※ 직업재활보호고용 장애인 수 : 7,400명('05) → 11천명('09)

## 11. 치매·중풍노인, 중증장애인 특별보호 대책 추진

-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의 조기 확충 및 확대
- 차상위층 실비시설 이용료부담을 완화하여 접근성 제고
- 돌보미 바우처를 도입하여 재가서비스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 현황 및 문제점

- 치매·중풍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설 절대 부족
  - 수급자 위주의 무료시설 확충으로 차상위·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이용시 이용부담 과중
    - ※ 요양시설 총족률: 수급자(96%), 차상위이상(20%), 중산층 이상(10%)
    - ※ 시설이용료 : 중산층 대상 유료시설 (월 100~250만원), 서민·중산층 대상 실비시설 (월40~70만원)
-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자체는 시설 신축을 기피하여 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상 장애 발생
  - 신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50%)과 주민의 혐오시설 기피가 시설확충에 걸림돌
  - 올해부터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문제 가중
- 재가서비스 시장의 부재
  - 재가서비스는 주요 대상이 기초수급자로 한정되고 실비·유료서비스는 미비하여 공급주체가 자립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시장 부재
  - 자활사업 등을 통해 간병·요양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시장의 부재로 자립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

## □ 특별대책 검토배경

- 치매·중풍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사회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보호체계 (care system) 강화 필요(관련 대통령님 지시 : '05.1.24, '05.3.18, '05.4.1, '05.5.4, '05.6.29)
  - ※ 사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청각장애인, 중풍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한 자식, 하반신 마비의 남편을 살해한 부인 등

- '07년 시행을 목표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 중이나 준비기간이 길고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어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 가족해체 방지와 노인·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우선 시급한 특별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
- ⇒ 대책은 최중증 14.5만명(노인:8만, 장애인: 6.5만)을 대상으로 마련하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조화될 수 있도록 고려

## □ 개선대책

### ○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장애인 요양시설을 조기 확충

- 노인요양시설은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 충족년도를 당초 계획인 '11년 보다 3년 앞당겨 '08년까지 조기 확충
  - 차상위·서민층 대상 실비요양시설을 '06~'08년 3년간 110개소 추가 확충
  - 3년간('06-'08년)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360개소, 재가지원 센터 180개, 폐교 등 기존시설의 기능전환 등 다양한 시설 확보방안 마련
- 가정 내 수발이 불가능한 뇌병변 및 최중증 지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무료·실비 요양시설 우선 확충
  - '06~'09년간 무료시설 169개소, 실비시설 81개소 확충
- ※ '09년 이후에는 제3차 장애인종합대책('08~'12년)에 반영하여 100% 확충 추진

### ○ 차상위층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 차상위 중증 노인·장애인에 대해 실비시설 입소시 이용료 지원 강화('07)
  - 노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25-40만원, 연 5천-6천여명)하여 부담비용을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
  - 장애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 지원(27만원, 연 800-1600명)을 통해 부담비용을 43만원에서 16만원으로 경감

※ 본인 부담률 감소 : 중증 노인(50%→약 20%), 장애인(100%→37%)

- 차상위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입소시 우선 입소 보장
-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실비 시설 이용자의 부양가족 부담 완화

### ○ 돌보미 바우처 제도 도입('07)

- 차상위계층 중증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가칭)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유료 재가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연간 노인 약 6천명, 장애인 5천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를 이용한 유료 요양서비스의 제공은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단체, 기존의 가정봉사원 파견단체가 담당
-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인대상 돌보미 바우처는 수발보험에서 재원조달

## 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행정자치부와 연계)

### □ 현황 및 문제점

- 서민생활안정대책 수립 등 각종 정책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복지수준은 제자리임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의 관련정책이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집중되는 "갈대기 현상"이 발생
- 현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는 늘어나는 복지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곤란
- ※ 복지업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7,200명)들만의 몫이라는 의식이 상존
- 복지-고용-보건 등이 연계된 수요자중심으로 전달체계의 개편 필요

## □ 개선대책

- 시·군·구·읍·면·동의 기능 확충 및 운영구조 개편
  - 최일선 사회정책(복지·고용·보건·주거 등)을 집행하는 시군구·읍면동의 사회복지조직 강화,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 설치(“국” 또는 “과”)
    - 모든 시·군·구의 조직체계를 개편,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국” 또는 “과”)를 설치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 제공
    - ※ 현행 “국”제 운영지역은 1개 과 추가 설치, “과”단위 운영지역은 과내 담당팀 확대 또는 1개과 추가 설치
    - 복지(여성·가족)·고용·보건·주거 등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회정책영역의 지방 기획기능 및 자원관리·연계 담당
    - 전문적인 기획·행정업무,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생활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상담, 복지수요자 관리, 서비스 연계 등 업무기능별 조직 편성(시군구-읍면동간 기능 조정 필요)
  -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단계적 확대개편
    -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창구(branch)로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복지센터”로 단계적 확대개편
    - 주민자치센터의 개편을 통해 주민 상담·정보제공 등 현장성·접근성 강화
    - 도시지역인 동과 농촌지역인 읍·면의 지역특성을 반영
    - ※ 민선 4기 지방자치 출범(‘05.7월) 이전 시행
  - 복지직, 행정직의 업무 배치 재편 및 교육 기회 확대
    - 올해 확충 계획된 복지직(1,830명)을 비롯하여 복지 기획 및 자원관리 담당 복지직(시군구)을 확대하고,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행정직 재배치 확대(현재 전체담당의 약 40%)
    - 전체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 관련 기획·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사회복지과목을 포함(‘06 상반기 관계법령 개정)

○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및 수요자 접근성 제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 복지, 보건, 고용 등 서비스제공 주체와 자원봉사단체, 종교기관, 기업, 노조, 대학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협의구조 활성화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05. 7월 전국 시·군·구 구성) 운영활성화 적극추진

- 수요자 접근성 제고

- 각급 서비스 제공기관간 원활한 연계 및 사후관리체계 정비

※ 보건복지부 추진 '보건복지콜센터'의 지역 현장 대응성 제고 방안 검토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05-'08)등 복지수요자 접근성 제고

### 13. 사회안전망 평가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개선 및 복지지출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개혁과제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평가체계 구축

####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보장수준의 개선 및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실효성 있는 추진·평가체계 미흡
-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일부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 □ 개선대책

- 사회안전망 추진 및 평가체계 마련

- 다양한 복지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확대개편

※ 사회보장기본법('05. 1. 27)·동시행령('05. 4. 27) 개정 : 위원 수 20→30인 확대

- 위원회 산하에 사회안전망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등을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민관합동의 지원조직(가칭 사회안전망 평가단) 설치·운영
  - ※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실무위원회(2개) 및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 사회보장 조사·연구·평가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의 전문위원 운영
-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분석을 통한 정부정책 방향 유도
- 복지계획의 적정, 복지사업 기반, 복지 질, 복지사업 성과달성 등 지자체 복지수준을 평가(보건복지부)
  - 지방재정 분석지표에 복지사무 이행도, 지자체 복지예산 규모의 적정성, 단체장의 관심도 등을 포함(행정자치부)
  -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추진
- 부정수급 방지 및 사회안전망 관련 실태조사 강화 등
- 행정신뢰도 확보 및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해 생계, 의료, 자활사업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동으로 부정수급 점검 강화
  -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조건부 수급제도를 더욱 엄격히 시행
    - ※ 자활사업대상자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자활담당공무원을 확대 배치('05년 242명 → '08년 750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사례관리요원을 배치

## VI. 추진체계

### 1. 예산 및 추진일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56,398	22,449	31,569	33,801	33,784	34,795
일반회계	79,541	10,610	16,012	17,248	17,431	18,240
기 금	39,317	6,665	7,744	8,128	8,313	8,467
지방비	37,540	5,174	7,813	8,425	8,040	8,088

### 2.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2-4-1.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연도별 신규수급자수
2-4-2. 탈빈곤정책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보 실적
2-4-3.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평가체계 구축 실적



#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2006. 10

- 소관부처 : 노동부
- 협조부처 :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한국은 2004년 8월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완화,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체계적인 고용관리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시행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무단이탈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불법체류자 다수 존재, 사후관리 서비스 기능의 미약, 일부 송출국가의 송출비리로 인한 근로자 권익침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합법적·합리적인 외국인력 활용체계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고용질서를 확립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 **I. 연수제 폐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원활한 일원화 추진**

1. 전략목표 : 외국인력 고용 제도의 일원화

2. 실행계획 :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천명과 함께 추진 일정을 공표한다.

- '05.7월 기 공표하였으므로, “일원화 추진일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대신함이 바람직
- 산업연수생 사용 사업주의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고용절차를 간소화 하고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 II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및 도입 기간 단축

1. 전략목표 :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개선

2. 실행계획 :

- 국내 고용절차를 간소화한다.
- 도입기간 단축을 위해 송출국가 송출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 III. 외국인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근로자 보호장치의 내실화

1. 전략목표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2. 실행계획 :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 귀국비용, 상해, 보증보험)의 가입률을 높인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및 차별금지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를 내실화한다.
  - 이미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보호를 “내실화”하는 것으로 표현 수정 필요

## IV. 불법 취업·불법 고용 근절을 통한 합법적인 고용 관행 정착

1. 전략목표 : 합법적인 고용관행 정착

2. 실행계획 :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인 고용관행을 정착한다.

○ 불법취업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고용허가제의 취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불법 취업 및 불법 고용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인 고용관행을 정착한다.”로 수정 필요

□ 정부대책의 일관성,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통해 불법체류자 발생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 V.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 서비스 기능 강화

1. 전략목표 : 외국인 근로자의 사후지원 강화

2. 실행계획 :

□ 통역 등 언어 지원 서비스 보강, 사후관리 서비스 전담 기구 확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후관리 서비스 기능 확충 등을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 VI. 송출과정의 투명성 제고

1. 전략목표 : 외국인 근로자 송출절차 개선

2. 실행계획 :

- 송출국가별로 「자체적인 송출업무 투명성 증진 방안」을 마련·추진하도록 요청(MOU에 명시)한다.
  - 송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송출업무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송출국가의 송출업무 투명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송출비용, 인력송출 방법 등에 대한 송출국가 현지 설명회 및 홍보를 실시한다.

3.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2-5-1. 산업연수제 폐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원활한 일원화 추진	외국인력고용허가제 일원화 세부추진방안 수립시행 여부
2-5-2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및 도입 기간 단축	외국인력 도입 소요기간
2-5-3 외국인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근로자 보호장치 내실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률
2-5-4 불법 취업·불법 고용 근절을 통한 합법적 고용관행 정착	불법체류율
2-5-5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 서비스 기능 강화	외국인근로자 지원서비스 운영실적
2-5-6 송출과정의 투명성 제고	송출업무 투명성 증진방안 송출국가 MOU명시 여부

## 국내 난민보호를 위한 대안

2006. 10

- 소관부처 : 법 무 부
- 협조부처 : 보건복지부  
노 동 부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 대통령님께서 6.1일 제12회 국정과제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것을 지시
- 2005. 8. 31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지침(안) 협의, 주제선정
- 법무부는 민간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과제로 채택한 『국내 난민보호를 위한 대안』을 받아들여 이행계획 수립과제로 선정

## 2. 필요성

- 한국에서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지위부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되어 있으나 권리구제 및 구호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난민인정절차의 개선 및 구호지원 등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3. 기대효과

- 난민인정신청 절차의 객관성 확보 및 간소화로 국제기준에 맞는 난민제도 운영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법적지위 향상 및 인도적 지원으로 실질적 구제
- 난민인정제도의 개선으로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 II. 현황과 전망

### 1. 현황

#### □ 연도별 신청 및 인정 현황

구 분	계	94-'02	'03	'04	'05	'06.9월
신 청	978	167	84	148	410	169
허 가	50	2	12	18	9	9

#### □ 난민심사 현황

총신청자	허가	인도적지위	불허	철회	이의 신청	1차 심사중
978	50	44	246	107	34	497

-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340명에 대한 난민 인정율은 14.7%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님

※ 2005년도 각국의 난민인정율은 미국 33.3%, 영국 13.6%, 프랑스 12.8%, 독일 8.1%, 일본 7.9%임 (우리나라 8.3%/UNHCR자료)

-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인도적 배려에서 체류(인도적지위)를 허용한 사람 44명을 포함하면 총 94명으로 전체 난민보호율은 27.7%에 이름
- 신청자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고 있어 분류심사 기법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2. 전망

-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연간 400~500여명이 난민신청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하반기에 난민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위가 향상되어 실제 난민이 아닌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신청하려는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됨은 물론 신청자의 지위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력과 난민지원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Ⅲ. 비전과 전략

### 1. 비전과 목표

- 난민인정자에게 의료지원·직업상담·기초생활보장 등 실질적 지원 추진
- 난민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한편, 일정한 기준 하에 선별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생계유지 방안 강구

## 2. 추진전략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  
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도 일  
정한 기준 하에 선별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지원 추진

## IV. 중점 추진과제

### 1. 추진과제 선정배경

- 최근 난민인정 신청자 및 난민인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  
한 권익보호 및 인도적 지원 필요성 제기
- 법무부는 민간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과제로  
채택한 『국내 난민보호를 위한 대안』을 받아들여 이행계획 수  
립과제로 선정

### 2. 추진과제 선정결과

- 난민인정 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추진 상황을  
지속가능발전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2005. 2. 2. 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난민법제(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난민의 권익보호 등을 포함한 난민인정제도 전반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 2006.7.12.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상정 예정임
- 난민보호를 위한 대안을 출입국관리법령을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  
의 마련에 착수함

##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 1. 추진과제명 : 국내 난민보호를 위한 대안

#### □ 현황과 여건

- 우리나라는 1992. 12. 3. 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 7. 1.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규정을 신설한 이후 2006. 9월말 현재 총 난민신청자는 978명으로 그 중 50명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44명에게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현재 497명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 중임
- 그러나 신청자의 대부분은 난민협약 제1조가 규정한 난민에 해당되지 않고 경제적인 방편으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형사 사건 또는 개인적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도 적지 않아서 이를 정확히 분류 심사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월평균 10여명에 불과했던 난민신청자는 2005년 들어 매월 40~50명으로 급증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적절한 처우가 필요한 상황 이어서 난민전문가 양성과 인력 증원 및 난민구호시설 등이 긴요함
- 또한 난민법제(개)정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난민인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 문제점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법적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실정임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근거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난민신청자의 국적 및 신청사유의 다양성 그리고 신청자의 급증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난민심사 전문부서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금년 2월 법무부 본부에는 국적업무와 난민업무를 전담하는 국적난민과가 신설되었으나, 신청자의 면담조사를 담당하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아직 전담조직이 없는 상태임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직업상담, 기초생활보장 또는 의료 지원 등을 위해서는 노동부 또는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불가피한 실정임

## □ 개선방안

- 난민신청자 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는 선별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협약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 하에 취업활동 허용
-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비 보조 및 의료 지원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직업상담을 실시하는 등 국민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현재 법무부는 의료비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에게 진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33만원 이하인자, 동산 및 부동산이 3,100만원 이하인자 및 부양자가 없는 자가 생계비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근로능력자는 18~60세로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 가족을 초청할 경우에는 난민인정자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녀에게도 난민의 지위 인정
- 난민인정을 받은 미성년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V. 추진계획

### 1. 예산

구 분	2006년 ~ 2010년			2011년~2015년
	확정예산	추정예산	소계	추정예산
공공부문	245,000	-	245,000	7,129,549
민간부문				
계	245,000	-	245,000	7,129,549

※ 확정예산(2006~2010년) : 2억 4,500만원(4,900만원×5년)

-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국민기초생활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비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등을 협의

### 2. 추진일정

- 2006년 하반기에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국회상정 추진
- 법률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령, 부령,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정 예정

### 3.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2-6-1. 인도적 지원	출입국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여부
2-6-2. 난민 인정자에 대한 지원	난민인정자 정착 지원 실적



## 건강과 환경연계성 평가

2006. 10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환경부
- 협조부처 : 노동부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환경과 건강문제의 사회이슈화

- 2000년대에 들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환경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공단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 호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의 아토피 피부질환, 천식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 새집증후군 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의 사회 문제화
- ⇒ 이는 환경오염 원인이 다양화·통합화와 더불어 생활속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생활양식의 확산에 따른 환경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진데 기인

### □ 환경오염과 질환 발생간 밀접한 상관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국내외 연구결과의 증가

- 산업국가의 질병 중 25 ~ 33%는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세계보건기구, 2002)
- 유럽의 오염된 공기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수는 약 31만명으로 추정(유럽위원회, 2002)
- 최근 유럽 어린이 7명중 1명이 천식 우려가 있으며, 영국에서만 연간 치료비로 39억 유로가 소요됨(유럽환경청, 2002)
- 65세 이상의 노인은 기준이하의 낮은 미세먼지 농도에서도 심혈관계, 폐렴 및 만성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미국 환경보호청, 2005)

- 국내에서 어린이대상의 천식, 알러지질환 연구에서도 아토피질환을 경험한 어린이가 40%에 이르고, 국내 천식 유병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4년에 3.4%에 불과했던 어린이 천식 유병율은 2003년에는 16.3%(6-12세 기준)에 달해, 40여년 사이에 천식 유병율이 4.8배나 증가

**□ 오염현상의 복잡다기화로 매체중심 환경관리정책의 한계 노정**

- 헌법상의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
-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하에 매체통합적 환경정책으로의 변화
- 현행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은 실질적인 국민들의 요구와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비용-효과적이지 못함
- 특히, 오염현상의 복잡다기화와 이에 기인한 질환의 증가는 국민건강에 기준한 환경보건정책의 필요성을 확산시킴

**□ “환경의 질”이 “삶의 질”이라는 국민 전반의 인식 확대**

- 2003년 국민환경의식 조사에 의하면,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더라도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여론 증대
- 최근 소득증가와 더불어 웰빙 등 지속가능성과 건강을 고려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확산

**2. 기대효과**

-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천식, 아토피, 암 등의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저감효과 기대**
- **환경오염과 환경성질환 발생의 인과관계 규명 등 연구결과 자료를 대기, 수질 환경관리기준 설정 등 효율적인 매체관리**

## II. 현황 및 전망

### 1. 선진국에서의 환경보건정책

□ '80년대 이후 환경오염문제와 국민보건문제가 함께 해결책이 모색될 필요성이 평가되면서 EU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건정책이 본격화

- 일찍부터 환경오염에 의한 공해병의 경험을 가진 일본 등에서는 60-70년대부터 환경보건 정책이 태동

□ 화학물질 노출증가와 더불어 환경보건문제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환경보건 이슈가 강화

□ 최근에는 환경성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대책보다는 위해성 평가 및 질병 감시활동 등을 통한 사전예방 정책이 강조되는 추세

□ 세계보건기구(WHO)

- 2001년 Health Impact Assessment in Development Policy and Planning 보고서 발표, 건강영향평가의 역할 강화를 제안
- 2001. 12에는 WHO와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mpact Assessment : 국제영향평가협회) 간에 “지속가능한 개발 및 건강의 향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모든 정책, 프로그램, 계획, 개발사업에는 인간 건강을 포함하는 적절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표준영향평가절차는 스크리닝/스코핑, 과업지시서의 범위,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권장수단의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부문간 실행계획의 개발로 구성되어야 한다.

- 건강영향을 예방 및 저감시키기 위한 권고사항이 건강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WHO는 ①환경, 사회, 행태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 건강과 관련된 위해성 요소들을 저감하고, ②사회, 경제, 개발 정책에서 효과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건강영향평가 확산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

- 리우선언의 Agenda의 제6장인 「인간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구체화한 방안으로 ①건강과 환경과의 연계 검토 ② 건강과 관련된 위해성 관리 등 6가지의 이해 범위를 제시

#### □ 미국

-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NEPA) 제102조는 인간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연방기관의 행위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 1980년대부터 환경영향평가 중 건강위해성 평가(Health Risk Assessment)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상정

#### □ 캐나다

- British Colombia, Nova Scotia, Newfoundland 등 일부 주에서 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시행 법제화
- 보건부에 환경보건평가과(Environmental Health Assessment Service : EHAS)를 설치 운영하고 환경평가청(Canada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 CEAA)와 협력

## □ 호주

- 1992 국가보건 및 의학연구위원회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 NHMRC)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권고
- 1994년에 NHMRC는 「Nation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 Assessment」 발표

- 기타 영국 런던시청은 정부와 NGO의 통합조직인 「London Health Commission」을 중심으로, 태국은 국가건강시스템연구원 「The Health System Research Institute : HSRI)를 중심으로 환경적 위해 등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중임

## Ⅲ.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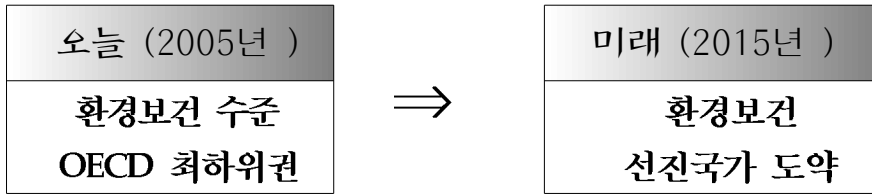
### 1. 계획의 비전

#### □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위험인구)을 최소화

- 환경오염 위험인구를 10년 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 □ 환경성 질환 위협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 환경성 질환 발생을 사전에 감시, 경보할 수 있는 예방체계 확립
- 환경성질환 규명, 질환 피해자 지원 등 관리체계 확립



## 2. 기본원칙

### □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환경오염 현상의 비가역성, 치명성 등을 감안, 불확실성이 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상의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 때 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 예방정책을 수립·추진

### □ 수용체 중심의 접근 원칙

- 환경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관련 오염매체 관리정책을 통합 조정, 선도

### □ 취약·민감계층 보호우선

- 유아-산모,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에 정책의 눈높이를 둠으로서 국민 전체의 건강을 보호를 담보하고, 환경보건 정의를 실현

### □ 참여와 알권리 보장

- 유해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관련 제반자료 및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Risk communication)체계 구축
- 환경보건 정책의 추진에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3. 추진전략

#### □ 기존 매체관리 계획 및 정책과 연계, 이를 통합조정 및 선도

- 환경보건계획이 각종 환경기준 등 매체별 계획과 정책의 우선순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 □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최소화

- 공공 및 민간의 폭넓은 연구 및 조사기반 구축, 환경과 보건분야 학제간 공동협력을 통한 과학적 규명체계를 구축

#### □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 폭넓은 환경모니터링, 위해성 평가기법 확립을 통한 인체영향 예측 및 지속적인 질환발생 세베일런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질환 조기감지 및 예방체계 구축

#### □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Risk Communication)을 통한 시민단체, 일반대중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참여를 촉진

#### □ 지구적, 아-태 등 지역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 WHO, UNEP등 국제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 북한, 몽골 등 아시아 국가간 지역적 협력프로그램 적극개발·추진

## IV. 중점 추진과제

### 1. 추진과제 선정 배경

- 정부 정책 및 민간 경제활동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키워드로서, 단순히 인권이나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집합적 노동력의 보호, 증진이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과 환경의 연계성 평가체계는 전혀 실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학계에서조차 그 내용에 대한 개념규정부터 새롭게 시작해야할 처지에 있는, 한마디로 불모지대라 할 수 있음
- 한편,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속가능발전의 명제와 함께 건강과 환경의 연계성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환경의 건강영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영향 평가제도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건강과 환경의 연계성 평가를 통해 국민 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WSSD에서 제시된 건강과 환경 연계성을 평가하는 국제능력배양 이니셔티브에 착수하고, 환경오염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국가 및 지역정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추진과제 선정 결과

- 건강과 환경 연계성 감시 기반 구축

- 환경성 질환 실태 조사 강화
-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방안 마련

### <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

#### 1) 건강과 환경 연계성 감시 기반 구축

##### □ 현황과 여건

- 국가 정책 및 민간 개발활동 등 각종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아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건강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대기, 수질화학물질, 전자파, 소음,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위협요인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산업국가의 질병 중 25~33%는 환경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어느 정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는 규명되지 않음
  - WH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3백만명(실내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2.8백만명, 실외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0.2백만명)이 사망(이 수치는 전 세계 연간 사망자 55백만명의 5%에 해당하는 수치)
- 그 외에도 지구온난화로 지칭되는 기후변화는 이미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속되리라 예상됨.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 활동에 있음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인간의 기후 적응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 문제점

-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환경의 위해를 선언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기존 매체중심의 환경성 질환 관리를 수용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 국민들의 현재 건강수준, 유해요인과 건강장애의 크기, 유해요인에 노출된 집단 크기 등 특정 건강 장애와 특정 환경 유해요인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와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환경보건 감시체제가 필요

## □ 개선방안

- 정부 차원의 환경 건강 감시 체계구축
  - 환경보건 정책을 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행정조직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전담위원회 설치
  - 관련 부처간 수평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복지부· 노동부· 건강부를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체계 구축
  - 환경성 질환 의혹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인간과 환경을 대상으로 질병을 연구하는 전담조직(환경질병연구센터)을 신설하고, 기존 환경연구조직과 협력연구체계를 구축
- 통계적 감시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환경의 건강영향은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통계적 수치에 바탕을 둔 변화 추이 감시가 필수적
  - 환경성 질환의 인과 관계 규명을 위하여 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현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 등 기존 자료를 연계 분석할 수 있는 data base를 구축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은 기존 자료의 종합과 신규 자료의 생산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됨
  - 정부 추진 체계 산하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별도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일괄 처리하거나,
  - 실무추진체계 관리 하에 몇 개의 장기 용역과제로 구분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 현장 감시 활동 체계 구축

-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오염노출과 환경성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병원·대학 연구실·정부 연구기관의 삼각 감시 체계구축
  - 국·공립 및 민간병원(5~10개)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하고 환경성질환 연구 운영비 국비 지원
- 민간의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파괴를 현장에서 감시할 인력확보를 위해 기존 환경부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중요
  - 기존 관련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나, 담당인력별로 새로운 업무 증가가 예상될 경우 인력 충원이나 별도 인력을 확보
- 환경성질환은 그 피해의 책임소재가 규명이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
  - 환경성 질환 의혹에 대해 오염노출과 환경성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피해를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지원체계를 마련
- 효율적인 질환관리와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 기존 질병감시체계를 활용하여 주민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현장 담당 인력 확보방안 마련
  - 주민 신고에 따른 포상 등 유인책 검토

○ 지구적, 아-태 등 지역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WHO, UNEP등 국제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 북한, 몽골 등 아시아 국가간 지역적 협력프로그램 적극개발·추진

- 또한 WHO, UNEP 국제회의 및 지부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환경과 건강에 관한 국제적 능력배양 이니셔티브 착수
  -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 등 역내논의에 적극 참여, 황사문제 등 아시아 환경보건 논의를 주도

○ 지속적 재원조달 방안 수립

- 환경영향 감시 전국 net work 구축은 정부 정책 및 민간 경제활동에 따라 야기되는 환경 악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업이 정부의 일반 예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한정된 정부 재정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에 대한 추정 및 개연성의 원칙 및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원인 행위에 부과하는 환경건강기금 조성이나 기존의 국민 건강증진기금 등 관련 기금의 일부 활용방안을 검토

**2) 환경성 질환 실태 조사 강화**

□ 현황과 여건

- 그간 여러 역학연구를 통해 환경오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특정 질병의 이환, 장애 혹은 사망 등의 건강 결과의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온산병 의혹, 도시 연탄공장 분진으로 인한 지역주민 진폐증, 대구 폐놀누출, 인천 고잔동 유리섬유 등 지난 70년부터 공단지역과 폐광지역, 소각장, 매립지 등에서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성질환 발병 의혹이 제기, 사안별로 역학조사 등이 진행
- 최근에는 고성 이타이이타이 발병 의혹, 광양만권 환경오염 관련 질환 증가, 경북 수철광산 중금속오염 등 관련 민원과 우려가 급증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
- 아울러, 대도시 및 공단지역에 어린이들의 천식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어린이 천식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
- 각종 조사를 통하여 오염지역내 오염물질 노출과 환경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환경성 질환 피해에 관련한 지원 등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

## □ 문제점

-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개인 혹은 인구 집단의 특성,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다름
  - 특히, 임산부 및 태아, 어린이,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민감군과 취약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
  - 폐광산, 산업단지, 대단위 매립지, 소각장 등 오염 취약지역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누적적인 오염물질 배출과 노출로 지역주민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해 연간 170여개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되고 있으나 주로 생물적·물리적 환경을 위주 평가
  - 사업으로 인한 환경보건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 지지 않고 있으며, 위생·보건항목이 평가대상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단순 의료기관및 의료인 현황만을 조사하는 등 기초조사에 국한

## □ 개선방안

- 국민 환경 건강 실태 조사 실시
  - 환경오염에 기인한 유해영향의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환경건강 실태 조사 실시
    - 국민 혈중 중금속농도조사, 다이옥신·PCBs 등 잔류성 유기화합물 농도 조사 실시
  -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환경보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군에 대한 집중관리 대책이 필요
    - 어린이, 저소득 취약집단, 폐광지역등 오염우심지역 주민의 환경노출 수준과 그에 따른 건강영향 우선조사
-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
    -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지침 및 절차마련,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성 소통체계 구축 등

### 3)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방안 마련

####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 수질오염, 전자파, 소음등 환경요인이 사람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규명되고 있음
  - 오염된 공기로 연간 31만 명이 조기 사망추정(유럽위원회)
  - 대기오염이 급증하는 어린이 바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질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
  - 먹는 물 중 미량 유해물질 및 미생물 등으로 인한 인체 유해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
- 최근, 화학물질이 대량 사용·유통됨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다이옥신,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새로운 유해물질이 대두됨
  - 각종 플라스틱류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해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계층의 건강장애에 우려가 증가
  - POPs 협약, PIC 협약, 바젤협약 등 국제협약을 통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준 강화
- 그 외 산업구조, 새로운 과학과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영향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
  - 특히, LMOs에 의한 건강 및 환경영향, 미세 나노입자에 의한 건강문제, 환경보건 이슈가 속속 등장

#### □ 개선방안

- 환경오염 통합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 전략 수립
  -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먹는 물, 소음, 전자파 등 환경요인으로 인한 국민노출 모니터링을 통해 요인별 건강 위해성을 평가
    - 오염요인별로 지역별 발생원 분포조사 및 경로분석, 노출자료를 토대로 한 위해성 및 건강영향을 종합평가
  - 위험인구 저감을 위한 분야별 적정 환경기준 항목 및 기준안 마련,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요인별 위험인구 감소 전략 개발

- 지역별·오염물질별 위험인구 추산,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안 제시

○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안전관리수준을 국제화 하기위한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방안 마련
  - 내분비계 장애물질, 다이옥신, 휘발성유기화합물, 항생물질 등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실시
  - 위험인구 감소를 위한 적정 화학물질 관리기준 마련 등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해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휘발성유기화합물, 프탈레이트,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목록작성, 유해제품의 사용및 폐기형태에 따른 위험요인 평가등

## V. 이행과제별 주관부처

추진과제별 이행과제의 주관부처는 현재 선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행과제 수행을 위한 양부처의 협의체를 설치하여 공동협의 이행한다.

### 1. 건강과 환경 연계성 감시 기반 구축

- 정부 차원의 환경건강감시 체계 구축(보건복지부/환경부)
- 통계적 감시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보건복지부/환경부)
- 현장 감시 활동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환경부)
- 지구적, 아-태 등 지역적 협력네트워크 구축(보건복지부/환경부)
- 지속적인 재원조달 방안 수립 (보건복지부/환경부)

### 2. 환경성 실태 조사 강화

-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관한 실태조사(보건복지부/환경부)
- 건강영향평가제 도입(보건복지부/환경부)

### 3.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방안 마련

- 환경오염 통합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 전략 수립(환경부)
-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수립(환경부)

## VI.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2-7-1 건강과 환경 연계성 감시 기반 구축	건강과 환경 연계성 감시 실무추진체계 구축 여부
2-7-2 환경성 질환 실태 조사 강화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추진 실적 어린이 오염우심지역 등 취약군대책 수립 실적
2-7-3.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방안 마련	천식 또는 COPD로 인한 활동제한일수, 입원일수 폐광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대책수립여부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건수



#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대책 강화

2006. 10

- 소관부처 : 환 경 부
- 협조부처 : 보건복지부  
노 동 부



## <요 약>

### 1. 추진배경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2년을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부산, 광주 등 기타 비수도권 지역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음
-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등 국내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외국 주요도시와 비교할 경우 약 2~3배로 높은 수준임
- 미세먼지는 사회적 피해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여 조기사망의 원인
-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1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경기개발연구원, 2003년)
  - 서울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연간 9,641명으로 노출인구중 조기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2000년)

### 2. 비전과 목표

- 비 전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국민의 건강 보호
- 목 표
  - 미세먼지 오염이 높아지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을 현재수준의 절반으로 삭감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배출량: 16,400톤/년('03년) → 8,999톤/년('14년)
- 서울 연평균( $\mu\text{g}/\text{m}^3$ ): 69('03년) → 40('14년)
- 미세먼지 오염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지역에 지역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대책 수립

### 3.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 □ 제작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 제작차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EURO-4 수준('06.1)으로 조정
- 저공해자동차의 단계적 확대·보급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부착한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
- 미세먼지 없는 천연가스차량 보급
  - 도시지역 미세먼지 배출의 획기적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목표연도를 연장하고 차종도 확대
-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지원(Eco-STAR 사업)
  - EURO-4 수준의 DPF 기술적용 차량기술 개발 등

#### □ 운행차량 미세먼지 저감대책

- 운행 경유차에 공해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차로 개조
-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 '14년까지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노후차량 208천대 조기폐차 계획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 정밀검사 실시 대상지역을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 실시

## □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 대기배출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시행('05.1)
  - 발전시설, 용광로 등 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2010년 시행 예정인 배출허용기준 예고 추진('07.1)
- 먼지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실시
  - 수도권 지역에 먼지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실시('07.7)
  - 특별대책지역내 대형사업장에 먼지 등 오염물질 삭감 자발적 협약 추진('05~'06)
-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투자 촉진
  - 배출부과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스스로 저감 배출 유도
  - 발전시설의 굴뚝 TMS에 의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 □ 비산먼지 관리대책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점검 강화
- 기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 나대지와 농경지 등 관리, 도로비산먼지 관리

## □ 대기환경기준의 조정 등 기타 대책

-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합리적 조정
  - 수도권 특별대책의 목표( $PM_{10} 40\mu g/m^3$ , 2014)등과 연계된  $PM_{10}$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

- PM2.5에 대한 지속적 연구조사 및 국제동향분석 추진

○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도입 추진

- 서울시 자체 조례로 시행('05.2.1)되는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안정적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 상황을 평가·보완
-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수도권지역 확대 시행

# I.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2년을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부산,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음

□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등 국내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외국 주요도시와 비교할 경우 약 2~3배로 높은 수준임

□ 그간의 추진상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마련('02.1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목표 설정, 자동차 관리 방안 마련, 사업장 총량제 추진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설정 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03.12)

-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 설정, 경유자동차 관리 강화  
- '07.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총량제 실시 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04.12)

- 대기관리권역 설정(서울, 인천, 경기 24개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 대상 설정,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총량제 대상 사업장 설정 등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05.11)

- '05 예산(1,300억원) → '06 예산(2,081억원)

-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추진('04.12~'05.12)
  - 수도권외 5대 광역시, 광양만권 등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 등에 활용

## 2. 필요성

### □ 미세먼지는 사회적 피해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여 조기사망의 원인이 되므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

-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경기개발연구원, 2003년)
- 서울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연간 9,641명으로 노출인구중 조기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2000년)

<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비율 비교('99년) >

구 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서 울
조 기 사망자수(인)	5,576	31,692	3,314	9,641
노출인구중 조기사망비율(%)	0.07	0.05	0.05	0.09

\* 자료출처: WHO(1999),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2000)

- 미세먼지 10~30% 감축시 수도권의 사망자수가 연간 40~120명, 호흡기질환은 연간 2,800~8,300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EPA 2001 연구용역보고서, KEI 조승현 박사팀)

## 3. 기대효과

### □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II. 현황 및 전망

### 1. 미세먼지 오염 현황

####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감소 추세

- 부산, 광주 등 기타 비수도권 지역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는 않음

<수도권지역 및 기타 대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추이>

(최근 5년간 연평균,  $\mu\text{g}/\text{m}^3$ )

	'01	'02	'03	'04	'05
·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및 경기 5대 도시)	68	72	67	63	61
· 기타 대도시(부산 등 5대 광역시)	58	62	49	55	53

\* 경기 5대 도시 : 수원, 안양, 안산, 성남, 부천시

#### □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등 국내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외국 주요도시와 비교할 경우 약 2~3배로 높은 수준임

(단위:  $\mu\text{g}/\text{m}^3/\text{년}$ )

서울, 인천, 경기	5대 광역시	동경	파리	런던	뉴욕	LA
61 (05)	53 (05)	33 (02)	22 (02)	20 (01)	21 (00)	44 (01)

#### □ 미세먼지의 단기환경기준( $150\mu\text{g}/\text{m}^3/24\text{h}$ ) 초과횟수는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미세먼지 단기환경기준 초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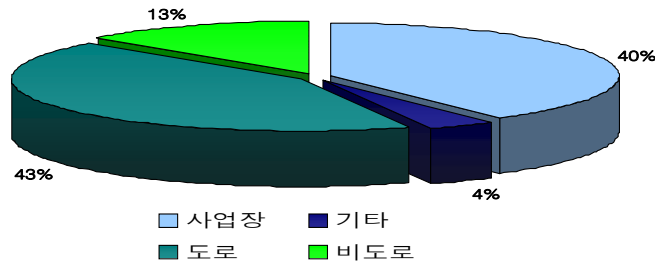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초과 횟수	2004년	157	70	453	49	13	3	10	5
	2005년	148	79	445	29	1	16	9	4

## 2. 발생원별 미세먼지 총배출량

□ 전국의 미세먼지 총배출량('03년 70,120톤)의 56%가 이동오염원 (도로 및 비도로 이동)에서 비롯됨

○ 에너지 산업 및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 등의 사업장에서도 40%차지

< 전국 발생원별 PM10 배출량('03, 70,120톤) >



□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총배출량('03년 17,868톤)중 이동오염원에서 80%, 사업장은 14%, 기타 6%를 차지

○ 이동오염원중에서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여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65% 차지

- '04년말 현재 전국 총 경유차량(5,385천대) 중 2,247천대(41.7%)가 수도권에 집중

## 3. PM10중 PM2.5이하의 미세먼지 농도 증가 전망

□ 경유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가스 상태의 1차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으로 통하여 생성되는 PM2.5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대

□ 국내에서는 PM2.5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PM10중 PM2.5의 비중이 도심지역이 60~70%를 차지하여 비도심지역의 20~4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Ⅲ. 비전과 전략

#### 1. 비전과 목표

##### 비 전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국민의 건강 보호

##### 목 표

- 미세먼지 오염이 높아지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을 현재수준의 절반으로 삭감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배출량: 16,400톤/년('03년) → 8,999톤/년('14년)
  - 서울 연평균( $\mu\text{g}/\text{m}^3$ ): 69('03년) → 40('14년)
- 미세먼지 오염 주요 도시 및 사업장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단계적으로 강화
  - 지역별 오염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추진
-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의 조정

#### 2. 추진전략

#####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 IV. 중점 추진과제

### 1. 추진과제 선정배경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매체별로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 자동차, 사업장, 비산먼지 등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통한 대기오염도 저감

### 2. 추진과제 선정결과

제작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운행차량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비산먼지 관리대책

대기환경기준의 조정 등 기타 대책

## V.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 1. 제작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 □ 제작차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기준(EURO-3 수준)보다 강화된 EURO-4 수준('06.1)으로 조정
  - 대형트럭 PM10 기준 : 0.1g/kWH → 0.02g/kWH로 강화
  - 경유다목적형 차량 PM10 기준 : 0.07g/km → 0.04g/km로 강화
  - 경유승용차 PM10 기준 : 0.05g/km → 0.025g/km로 강화
- ※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14년까지 약 32,800톤(수도권: 16,400톤)의 미세먼지 저감 예상
- '08년~'10년에 적용될 차차기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비

#### □ 저공해자동차의 단계적 확대·보급

- 미세먼지를 80%이상 줄이는 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부착한 저공해 경유자동차의 보급
  - 도심내 운행이 많은 택배회사·운송회사용 화물차와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이후 대형화물차로 차종 확대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및 대도시(수도권의 5대광역시)에 '10년까지 약 7,270대의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추진
  - 중·대형 경유차(화물차, 버스) 대당 700만원, 소형 화물차 대당 200만원 보조
- 수도권외 지역에 대하여 오염원, 대기환경용량 등을 기초로 저공해 경유자동차 단계적 보급('06년부터)

< 연도별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목표 >

(단위 : 대)

연 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650	780	1,430	1,430	1,490	1,490
수 도 권	650	650	1,300	1,300	1,300	1,300
비수도권	-	130	130	130	190	190

(단위 : 백만원)

구 분	확정예산	추정예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계
공공부문	0	0	0	0	0	0
민간부문	3,245	3,280	3,280	3,415	3,415	16,635
계	3,245	3,280	3,280	3,415	3,415	16,635

□ 미세먼지 없는 천연가스차량 보급

- 도시지역 미세먼지 배출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목표연도를 연장하고 차종도 확대
  - 보급계획 목표연도를 '07년에서 '10년까지 3년 연장
  - 대상 차종을 통학버스, 공항버스, 통근버스, LNG 고속버스, LNG화물트럭, 5톤 청소차로 대폭 확대
    - 현재 차종 : 시내버스, 마을버스, 11톤 청소차
- '10년까지 약 23,026대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 수도권지역: 총 13,355대(버스 12,525대, 청소차830대)
  - 수도권외지역: 총 9,671대(버스 9,411대, 청소차 260대)

< 연도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목표 >

(단위 : 대)

연 도	계	'00~'04	'05	'06	'07	'08	'09	'10
수 도 권	13,355	3,574	1,448	1,580	1,633	1,691	1,703	1,726
기타지역	9,671	2,588	1,055	1,137	1,182	1,225	1,234	1,250
합 계	23,026	6,162	2,503	2,717	2,815	2,916	2,937	2,976
누 계	23,026	6,162	8,665	11,382	14,197	17,113	20,050	23,026

(단위 : 억원)

구 분	확정예산	추정예산					추정예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계	2011~ 2015년
공공부문	0	0	0	0	0	0	0
민간부문	498	395	696	751	781	2,623	2,717
계	498	395	696	751	781	2,623	2,717

### □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지원(Eco-STAR 사업)

- EURO-4 수준의 DPF 기술적용 차량기술 개발
- EURO-4 수준의 대형차량용 후처리기술 개발
- 복합재생, Partial DPF 시스템 개발
- Nano-particle 측정방식 및 기준 설정을 위하여 KPMP(Korea Particle Measurement Program) 추진

## 2. 운행차량 미세먼지 저감대책

### □ 운행 경유차에 공해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차로 개조 추진

-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중 차령 3년 이상(대형차량) 또는 6년 이상(중·소형차량) 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 CNG)으로 개조
  - 우선 수도권 지역부터 '14년까지 총 96만대에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실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계획 >

(단위 : 천대)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3	38	100	124	140	127	89	89	87	88	77	962

- 수도권외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한 광역시(부산, 대구 등)를 중심으로 차령 3년 이상 또는 6년 이상된 경유자동차)에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사업 실시('06년)

### □ 노후차 조기폐차

- 정기검사 불합격 차량, 특정경유자동차중 정비, 차량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통하여도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 유도
  - '14년까지 208천대 조기폐차 계획
  - 차령 10년 이상된 경유자동차는 '03년 이후 출시된 경유자동차에 비교하여 81% 이상 많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 정밀검사 실시 대상지역을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역으로 확대
  - 3개 광역시와 주요 대도시를 정밀검사 시행지역으로 추가 지정

< 정밀검사 시행지역 및 대상차량 >

구 분	대상지역	대상차량(천대)
대기환경규제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3,184
주요 인구 50만 이상 도시	-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 청주, 전주, 포항, 창원시	1,106
합 계		4,290

###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측정법 개선

- 운행차 수시점검 매연측정방법을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개선(선진국의 경우 광투과식 방식 사용)
  - 여지반사식은 측정가능한 가스가 흑연으로 제약되어 있고, 측정자의 측정행태나 습도·온도에 따라 측정값 변동가능성이 높아 부실·부정검사 가능성이 높음

※ '03년 수시점검 결과 매연차량 적발율은 약 1.5%로서 정밀검사 불합격을 약 3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여지반사식 및 광투과식 매연측정법 비교 >

구 분	여지반사식	광투과식
측정방법	- 여지에 흡착된 매연농도 측정 - 측정자 수동측정	- 배출가스를 부분 채취후 광원으로 투과하여 측정 - 컴퓨터 자동측정
측정가스	흑연	흑연, 청연, 백연
측정오차	±3%	±0.5%
기상조건영향	- 습도·온도에 따른 측정값 변동 가능	- 습도·온도 영향 없음
적용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유럽, 호주

### 3.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 □ 대기배출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시행('05.1)
  - 발전시설(석탄사용 500MW이상)은 50mg/Sm<sup>3</sup>→40mg/Sm<sup>3</sup>
  - 소각시설(2톤/시간 이상)은 80mg/Sm<sup>3</sup>→30mg/Sm<sup>3</sup>
  - 일반보일러(석탄사용 배출가스량이 30,000m<sup>3</sup> 이상) 50mg/Sm<sup>3</sup>→30mg/Sm<sup>3</sup>
- ※ 강화된 먼지 배출허용기준 시행시 미세먼지가 약 15% 감소 예상
- 발전시설, 용광로 등 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2010년 시행 예정인 배출허용기준 예고 추진('07.1)
- 특별대책지역내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일반지역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기존시설에는 엄격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특별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중·장기적으로 강화된 엄격·특별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및 특별대책지역 추가 지정 검토

## □ 먼지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실시

- 수도권 지역에 먼지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실시
  - '07.7월부터 1종사업장 233개소, '09.7월부터 2~3종까지 확대
  - ※ 총량규제 시행시 '14년 기준 주요 사업장 미세먼지(PM10) 배출량(3,824톤)의 33%(1,245톤)까지 삭감 가능
- 특별대책지역내 대형사업장에 먼지 등 오염물질 삭감 자발적 협약 추진('05~'06)
  - '07년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총량규제 방안 강구
  - ※ '04년 기준 동 지역에서 2년간 매년 먼지 배출량의 2~3% 삭감 예상

## □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투자 촉진

- 배출부과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스스로 저감 배출 유도
  - 대기 배출허용기준의 30% 이하 배출시 기본 배출부과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로 먼지집진시설 투자 유도
  - ※ 발전소의 경우 '05년에 먼지삭감을 위하여 약 782억원 투자('04년)
- 발전시설의 굴뚝 TMS에 의한 상시모니터링으로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 유도
  - 설비용량 100MW 이상 발전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 40톤 이상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굴뚝 TMS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관리

## 4. 비산먼지 관리대책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 ◇ 건설업,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등 10개 업종 30개 사업(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 ※ '05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35,794개소
- ◇ 대형공사장 또는 대규모 공사구역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 특별관리지역 986개소, 특별관리공사장 4,140개소('05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점검 강화
  - 일반사업장은 연 1회,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관리공사장은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매년 건조한 봄철(3월~5월)에는 특별점검 실시

## □ 기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 나대지와 농경지 등 관리
  - 공유지의 주차시설로 이용 또는 식재 등으로 나대지 방치 금지
  - 배출사업장 및 먼지 다량 배출업소 나대지 녹지화 권장 제도
- 도로비산먼지 관리
  - 진공청소차량 단계별로 확보하여 도로 비산먼지 저감
  - 도로변 화단경계석 설치 및 개선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유도
  - 도로 굴착공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중복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 토사 등 분체상 물질 운반차량 관리
  - 토사 운반차량의 과적, 과속 등의 운행으로 인한 흙먼지 발생 단속

## 5. 대기환경기준의 조정 등 기타 대책

### □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합리적 조정

- 수도권 특별대책의 목표( $PM_{10}$   $40\mu g/m^3$ , 2014년)등과 연계된  $PM_{10}$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 검토
  -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경제·기술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준 수준 및 조정시기 대안 마련('05.12)
  - $PM_{10}$  환경기준( $\mu g/m^3$ , 연평균): 미국:50, 영국:40, EU:20, 한국:70

※ 연평균 기준이 없는 일본의 일평균 기준은 100으로 한국(150)보다 높음

○ PM2.5에 대한 지속적 연구조사 및 국제동향분석 추진

- PM2.5 이하 미세먼지의 발생특성, 인체유해성 등에 대한 국내 연구·조사와 국제적 논의의 동향분석 등을 지속적 추진

□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도입 추진**

○ 서울시 자체 조례로 시행('05.2.1)되는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 상황을 평가·보완

-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관계전문가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

○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수도권지역 확대 시행

## VI. 추진체계

### 1. 예산

- 미세먼지를 포함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사업비 : 1조4,671억원

(단위 : 억원, 국고 기준)

세부 추진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합계	'06	'07	'08	'09	'10
총 계	14,671	2,081	2,640	3,205	3,166	3,579

※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임

- 비수도권의 투자 계획은 현재 수립중임

### 2.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2-8-1 제작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저공해자동차 보급 비율
2-8-2 운행차량 미세먼지 저감대책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사업 실적
2-8-3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장 미세먼지 지도점검 대비 위반율
2-8-4 비산먼지 관리대책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 대비 위반율
2-8-5 대기환경기준의 조정 등 기타 대책	대기환경기준 강화 추진실적(계획대비)



## 공공보건의료 확충

2006. 10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00. 1. 12)

-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최초로 제도화

### □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

-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수준을 30%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 제공

###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국정과제 보고 ('04. 9. 9)

-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정부정책의 큰 틀로 채택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토록 대통령 지시

### □ 공공보건의료 4조원 규모 투자방침 결정 ('04. 11. 16, 국무회의)

-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향후 5년간 ('05~'09) 4조원의 공공보건의료 투자방침 결정

### □ 범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팀에서 총 10회 조정회의를 거쳐 실무안 마련
- 관계장관간담회(총리 주재)에서 잠정 정부안 결정('05.5.11)
- 공청회 개최로 공공의료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05.5.25)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차 심의('05.6.15)
- 국립대병원, 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의견수렴('05.6~10월)

## 2. 필요성

### □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의 실패에 의한 비효율성

- 과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행태로 의료자원 낭비 초래
  - ※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 OECD 평균의 2배(한국 12.3회, 미국 5.8회, 영국 5.4회, 독일 6.5회, 프랑스 6.5회, 이탈리아 6.0회)
  - ※ 급성상병 입원일수 OECD 평균의 1.6배(한국 11일, OECD 평균 7일)
  - ※ 제왕절개율 : 한국 39.2%, 미국 23%, 일본과 EU 20%, WHO권고 5~15%
- 의원과 병원이 외래와 입원진료를 상호 경쟁하는 의료기관간 기능 미분화와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병·의원의 영세성 등으로 의료자원 낭비 초래
  - ※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 병원 수의 83.1%, 병상의 54.1%로 중소병원 경영난의 원인으로 지적됨
- 급성기병상은 약 3만 병상 공급과잉인 반면, 요양병상은 약 7만 병상 부족('04년 현재)
- 인구 1천명당 병상수가 7개이나 제주 4.9~광주광역시 9.1로 의료자원 지역별 불균형

### □ 고령화와 만성질병 확대로 국민의료비 급증 전망

- 평균수명 증가('01년 77세)와 출산율 저하('03년 합계출산율 1.19명)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 고령화 진행 중
  - ※ 고령화사회 → 초고령사회(한국 26년, 프랑스 154년, 미국 86년, 이탈리아 74년, 일본 36년)
- 현재의 낮은 국민의료비는, 향후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어 고령사회에 국가 성장잠재력을 제약하지 않도록 대비 필요
  - ※ GDP대비 국민의료비('00) : 한국 5.1%, 미국 13%, 영국 7.3%, 프랑스 9.5%, 일본 7.4%

< 향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추계 - 중립적 시나리오 가정시 >

연 도	2002	2010	2020
국민의료비	34.4조원	74조원	171조원
GDP대비 비율	5.1%	8.1%	11.4%

\* 자료 : 김창엽,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2004

□ 필수 보건의료 공급기반 취약

- 그 동안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의 비약적 확대로 의료의 보장성과 접근성 크게 개선
  - ※ 병원급 의료기관 : 341개('80년) → 1,425개('03년)
  - ※ 의료인력(인구 10만명당) : 156명('80년) → 513명('03년)
- 보건의료 정부투자 부족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인 공공의료 비중 과 응급, 혈액, 전염병격리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 보건의료 공급기반 취약
  - ※ 병상기준 공공의료 비중(OECD, 2000) : 한국 18.54%('02년), 미국 33.2%, 일본 35.8%, 독일 48.5%, 프랑스 64.8%

3. 기대효과

□ 필수 보건의료 제공기반 확충

- 전염병 관리, 희귀·난치성질환, 응급의료 등은 시장실패에 영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역할과 책임 수행
- SARS, 조류독감 등 국경없는 신종전염병의 확산에 대비한 환자 격리 진료 병실과 장비는 구축
- 입원치료가 필요한 재활의료 수요대상자(약 2만 4천명) 등에 대한 재활병상의 확대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R&D 및 진료여건 구비

- 응급인프라 확충으로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대폭 축소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보유 노인의 요양과 부양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한 요양병상 및 시설의 적정 공급

#### □ 의료접근성과 공공의료의 질적수준 보장

- 지방공사의료원(34개소), 적십자병원(6개소)은 시설·장비 현대화 및 경영혁신으로 중산·서민층이 최후에 의지하고 호소할 의료안전망 구축
- 보건소는 지역주민, 학생·근로자 등을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와 사전예방적 기능수행으로 전환
- 농어촌과 대도시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진료 제공능력은 확대로 의료접근성 및 형평성 제고

#### □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상승요인의 억제

- 민간위주 보건의료공급체계 현실에서 의료시장(정보의 비대칭성, 공급자 유인)에서의 의료수요 지속 증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고도화 등의 따라 공공의료의 사전예방적 대응이나 모범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의료비는 폭등가능성 억제
- 과잉공급된 급성기병상체계에서 장기요양병상을 확충하여 요양환자가 급성기병상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 해소

## II. 현황과 전망

### 1. 공공보건의료의 오늘과 미래

구분	현황	2009년
공공병원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 낮은 병원</li> <li>○ 민간의료에 대한 보조</li> <li>○ 관료주의 조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적이고 우수한 병원</li> <li>○ 표준진료로 질병관리의 중심 역할</li> <li>○ 서비스 지향의 경쟁력 있는 조직</li> </ul>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적 의료서비스</li> <li>○ 부처별 분절적 운영</li> <li>○ 양·한방 이원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중심의 예방과 질병관리</li> <li>○ 부처간 연계 효율화</li> <li>○ 양·한방 협진의료제공</li> </ul>
국립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의료원</li> <li>- 공무원 조직의 국가기관</li> <li>○ 국립서울병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의료원</li> <li>- 표준진료기준 마련, 공공의료지원</li> <li>- 특수법인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의 제고</li> <li>○ 국립서울병원 현대화</li> </ul>
국립대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암센터 3개소</li> <li>-</li> <li>○ 어린이병원 2개소</li> <li>○ 지역특수 여건 미약</li> <li>○ 보건사업 수행지원 취약</li> <li>○ 교육인적자원부 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암센터 9개소</li> <li>○ 노인보건의료센터 3개소</li> <li>○ 어린이병원 5개소(3개소 신규 건립)</li> <li>○ 농부중, 광부병 등 특수질환센터</li> <li>○ 공공보건의료사업부 설치</li> <li>○ 보건복지부 소관</li> </ul>
지역거점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사의료원 (34개)</li> <li>○ 적십자병원 (6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화된 지방의료원 (34개)</li> <li>○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6개)</li> </ul>
보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246개소</li> <li>○ 보건지소 1,273개소</li> <li>○ 보건진료소 1,901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246개소</li> <li>○ 보건지소 1,273개소</li> <li>○ 보건진료소 1,901개소</li> <li>○ 도시보건지소 확충</li> <li>○ 주민건강증진센터 확충</li> <li>○ 한방HUB보건소 20개소(지정)</li> <li>○ 구강보건센터 확충</li> </ul>
노인치매병원	○ 54개소 5,547병상	○ 85개소 7,734병상
요양병상 전환	○ 재특용자지원 3,441병상	○ 재특용자지원 15,036 병상
전염병 격리병상	○ 280병상	○ 400병상(고도음압 80, 일반음압 320)
권역 재활센터	○ 3개소(인천, 강원, 제주)	○ 6개소 - 기존 3개소 증축 + 3개소 신설
응급의료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전문의 344명</li> <li>○ 시설장비 지원 110개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전문의 814명</li> <li>○ 256개 응급의료기관 체제 보강</li> </ul>
정보체계 및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미흡, 독자수행</li> <li>○ 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단</li> <li>○ 적자보전 지원체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Health 기반 IT공공보건의료체계</li> <li>-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정보연계</li> <li>- 보건소정보화</li> <li>○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li> <li>○ 지속적인 경영혁신 유도·확산</li> </ul>

### Ⅲ. 비전과 전략

#### 1. 비 전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여 보건의료를 지속발전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의 보호**

#### 2.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효율화**

- 표준진료 등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
-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 공공보건의료의 연계 강화
- 양적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
- 전문진료와 양·한방 협조체계 구축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
- 전략적 질병관리의 강화
- 원활한 공공보건의료 인력공급체계 마련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 비시장성 필수공공재 공급기반 확충



## IV. 중점 추진과제

### < 전략 1: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과 효율화 >

#### 1.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정립

국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수준 높은 공공기관으로 육성

##### □ 모범진료 선도 등 정책의료 지원 및 수행

-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는 “표준진료기준” 개발·확산의 중추기능 수행
  - ※ 표준진료지침 시행 국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과잉·과소진료 없이 표준진료기준에 따라 충실히 모범진료를 수행하여 전체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효율화 선도

##### □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및 예방기능 수행

- 국민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주요 사망원인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진료제공(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등)
- 예방, 건강증진 및 만성질병관리를 핵심기능으로 수행

#####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료 안전망

- 의료급여환자, 노숙자, 중산·서민층, 농어촌 등 취약계층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최종안식처(last resort) 역할

## 2.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역할에 부합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정비 및 보강

### □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예산·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연계와 효율화 지속 추진

### □ 현 국립의료원을 개편

- 국립의료원을 인력과 예산운영이 탄력적인 특수법인으로 개편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
- 전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중추기관의 하나로 기능하도록 공공의료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안전망 역할
  - 표준진료지침 전파, 양·한방협진,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지원 및 사업 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공공의료의 수준제고 유도
  - 응급, 장기이식수급, 희귀난치질환, 저소득층의 고난도 의료수요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

### □ 현 국립서울병원을 정신보건 중추기관으로 육성

- 정신보건관련 연구, 정책·기술지원과 정신보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정신보건기관으로 육성

### □ 국립대 병원을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

- 농부증·광부병 등 지역특색에 맞는 전문질환센터의 운영과 광역지자체에 대한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업 수행
  -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국립대병원 주관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 □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운영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료원을 「지방의료원법」에 의한 특수법인 지방의료원으로 전환,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

## □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 부과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 인증제’ 도입 검토

## □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

- 건강증진과 만성질병관리 등 예방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진료기능 지속 수행
- 보건소는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보건지소는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역할 분담
-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지역사회 연계, 방문보건, 재활 및 만성질병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제공
- 아웃소싱 등 프로그램 형태의 탄력적 조직과 인력운영을 통해 건강증진, 정신보건 등 새로운 보건서비스 욕구 충족
  - 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을 충족토록 노력

### 3. 공공보건의료 연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 공공보건의료 정책조정체계 구축

- 공공병원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조정
  - ※ 위원회 산하에 공공보건의료 전담 분과위 구성·운영

#### □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수직적 연계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간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민간기관과의 연계로 확대 추진
- 협력 및 연계 수행정도를 평가와 지원에 반영

#### □ 특수병원의 특수성 및 공공성 동시 강화

- 군병원은 응급 및 평시 대민진료를 확대하고, 잠수병, 화생방, 말라리아 등 신종·특수 질환 전문진료 기능 확충
- 산재병원은 예방중심의 산업보건 사업 강화, 직업병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국가중앙의료체제와의 연계 강화
- 보훈병원은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특성화하고, 보건기관과의 국가유공자 진료네트워크 구축
- 경찰병원은 화상 등 전문진료 기능, 대테러 등 재난의료구조기능의 강화와 함께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 수행

## 4.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 수준 제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국민의 만족도 제고

### □ 우수인력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 국립대 교수의 파견근무제,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총정원제, 연구비 우선 지원 등 제도와 지원대책 마련
- 보수 현실화 등 인사체계 혁신을 유도하고 임·직원에게 대한 서비스와 전문성교육을 통해 경쟁력 확보

### □ 시설·장비의 확충과 현대화

- 노후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경쟁력 향상 지원
  - 지역거점병원은 규모의 경제에 이르도록 300병상 규모로 확대하되, 요양·정신·재활병상의 증축을 우선 추진
  - 농특세를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2014년까지 지속 추진

### □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체계 구축

- 수익성 이외에 수행하는 공공서비스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공익성에 대한 비용보상 원칙개발과 성과에 따른 보상
  - ※ 현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서 평가지원업무 수행, 공공의료지원센터 설치시 동 기능 이관

### □ 경영혁신 선도기관으로 양성

- CEO 임용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영전문가 참여 확대 유도
  - ※ 지방의료원 원장 신규 임용시 공개채용 적극 활용
- 경영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혁신을 위한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며 혁신성과를 평가 및 지원에 반영
  - ※ '09년까지 주요 공공병원에 대한 보건기관에 대한 기능진단 실시, 경영혁신 모델 개발·확산

## □ e-Health기반의 IT공공보건의료로 개편

- 보건의료정보표준화를 기반으로 ‘공공보건 e-Health사업’ 추진
  - 수행성과 제고, 진료비용 절감, 국민편익 제고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 강화에 기여

## < 전략2: 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

### 5.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

공공병상 신설은 요양병상을 우선 추진하고, 민간의 과잉 급성병상의 요양병상 전환을 적극 지원하여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 □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기능적 역할 분담 유도

- 병상수급구조를 고령사회 도래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국가병상수급기본계획” 주기적 수립·평가
  - 시·도별 지역병상 계획에 대한 중앙단위 평가·권고제 도입
- 대형병원은 시설, 기술, 인력의 집중이 필요한 급성기 입원 진료, 중소병원은 장기 요양 진료 중심으로 역할 분담 유도
  - ※ 의원은 외래위주로 유도하되, 사회적 합의에 바탕 한 적정병상 기준 마련
-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에서 분산 규정하고 있는 의료자원 수급계획을 의료법령에 통합 규정

## □ 급성기병상의 장기요양병상 전환 유도 및 지원

- 요양병상 시설 및 인력 기준과 건강보험 수가 개발 등 요양병상 운영 수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요양병상 전환 민간병의원에게 융자 등 재정지원 적극 추진
  - ※ 요양병상 전환 실적과 계획(누적) : 3,441개('04) → 22,036개('09)

## 6. 전문진료와 양·한방 협업체계 강화

국립(대)병원 진료전문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한방 협업체계 구축

### □ 국립(대)병원의 전문진료기능 제고

- 국립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국가중점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과 희귀·난치질환 연구 및 진료 강화
- 우울증 등 정신병은 국립정신병원, 결핵은 국립마산·목포병원, 암은 국립암센터가 각각 담당
- 국립대병원에 지역암센터, 노인전문병원, 어린이병원, 특수구강질환센터 등 전문진료센터 설치 지원

### □ 저출산 대응 출산지원·모자보건 사업추진 인프라 강화

-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보건분야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체계로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를 설치
-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 영유아 장애예방 검사 및 발견 환아 의료비 지원

### □ 양·한방의료 협업체계 구축

- 국립의료원을 통해 양·한방 협진 모델을 개발·확산
- 공공의료기관내 한방진료부를 통한 양·한방협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층의 만성질환 효율적 관리 도모
-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한방HUB 보건소(20개소) 지정·운영으로 지역단위 한방보건서비스 제공

## < 전략 3: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

### 7. 건강증진 강화를 통한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역·학교·사업장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 건강증진사업과 기반의 확충

- 금연·절주·운동·영양의 건강증진사업을 대폭 확충
- 지역보건기관이 학생, 근로자 및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주민건강증진센터 등)

####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예방 및 관리기능 강화

- 보건지표에 의한 건강 및 질병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중심의 질병예방관리 사업 개발 및 표준화 시행  
※한국인 질병 및 건강지표 개발
- 지방자치단체 보건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문 기술지원 등 관리기능 수행

#### □ 학교와 산업장에 건강증진 기반과 사업 확충

-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질병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
- 포괄적·체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수행

####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분야 역할 제고

- 과다의료이용 방지 및 개별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강화
- 공단의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지역보건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8.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강화

주요 질병에 대한 연구 강화, 진료체계 정비 및 예방사업 추진

### □ 암의 국가관리체계 강화

- 국가암관리체계 보완 및 평가 방안, 암관리 정보체계 개발 및 인력 양성, 암연구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국가 암관리종합10개년 계획('06~'15) 수립
- 국립암센터를 아시아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암검진지원센터 건립, 양성자치료센터 운영, 암연구인력 확충
- 국립대에 지역암센터 확충과 말기암환자 전문기관 지정 및 호스피스 서비스 모형 개발 등 암관리인프라 확충

### □ 주요 만성질환관리 강화

- 우리나라 2대 사망원인인 심·혈관질환의 감소를 위한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심·혈관질환 종합계획 수립·추진
-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대상을 현재 질환을 갖고 있는 중장년 및 노년층뿐만 아니라 유소년층으로 확대하여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 핵심 위험요인 관리

## 9.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 마련

예방과 필수보건의료 담당 전문인력의 중장기 확보대책과 공중보건의 등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

### □ 일차의료 담당인력 확충

- 가정의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응급의학과를 1차의료 전문의군으로 선정하여 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 추진

## □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

- 공중보건의사 활용도를 평가하고 경쟁배치를 유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효과적 활용 도모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치 중인 공중보건의 제도를 질병관리와 예방서비스 수요가 큰 도시지역에도 배치하는 방안 등 공중보건의사제도 전반을 재검토
- 공중보건의사의 중장기 수급전망, 보건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제도가 보건의료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질병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기여토록 운영방안 마련

## < 전략 4: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

### 10. 전염병 위기 대응 체계 확립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격리병상, 필수장비 및 약품을 확보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 강화

## □ 고위험 신종전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

-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차단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을 연차적으로 확보
- 두창 백신 등 생물테러에 대비한 물자 확보

## □ 전염병관리 행정체계의 역량 강화

- 질병관리본부는 국가표준검사실·공중보건실험실의 질 향상을 통해 고난도 연구개발 업무 수행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염병 관리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보강으로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

## 11. 비시장성 필수 공공재 공급기반 확충

응급, 혈액, 재활 등 시장에 의해 공급되기 어려운 필수공공재의 국가 공급기반 확충하면서, 민간투자도 유도

### □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

- '09년 응급환자 사망률 20%대를 목표로 시설장비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화상·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육성으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응급의료기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운영
-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보험수가체계의 개선 추진

### □ 안전한 혈액공급(국무회의 기 보고 내용)

- 개인헌혈 중심으로 채혈구조 개선('03년 35%→'10년 70%)을 위하여 헌혈의 집 확충, 헌혈자 건강검진 등 인센티브 제공
-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로 혈액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국가가 상시로 감시·평가 수행

### □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 6개 권역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 건립
  - ※ 기존 3개 권역(인천, 강원, 제주)은 증축, 3개 권역 센터 신설
- '재활병원 인증제'를 도입, 민간병원도 장비보강 등 정부가 지원하여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도

## V. 추진체계

### 1. 재정투자

#### □ 투자 원칙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4조 3,474억원을 신규 및 기존사업의 확대에 투자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 ※ 신규사업 2조 4,254억원(56%), 계속사업 1조 9,221억원(44%)
  - ※ 지방의료원 이전·신축예산 BTL 심의 확정시 1,237억원 추가 반영 예정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관이 재정을 적절히 분담하도록 국고, 지방비, 자부담을 적절히 조화
  - ※ 국비 32,658억원(75%), 지방비 6,193억원(14%), 자부담 3,369억원(8%), BTL 1,255억원(3%)
- 사업주체의 책임과 역량 강화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06~2010						2011~
	'06	'07	'08	'09	'10	소계	추정예산
공공 부문	7,481	7,930	9,637	10,889	11,978	47,915	71,873
민간 부문	572	-	-	-	-	572	-
계	8,053	7,930	9,637	10,889	11,978	48,487	71,873

\* '09년 이전은 투자계획, '10년 이후는 추정예산

\* 민간 부문은 BTL 예산

## □ 주요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	주요 투자 분야
□ 합 계	43,474	· 국비: 32,658, 지방비·자부담: 9,561, BTL: 1,255
○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 및 현대화	18,580	· 국가중앙의료체계 건립, 지역거점병원 확충, 보건소 현대화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6,650	· 지역암센터 및 암검진지원센터 설치, 구강보건실 운영, 학교보건 및 산업보건프로그램, 주민건강증진센터, 산재의료원 지원
○ 고령사회 대비	4,591	· 노인전문병원 설립, 병상전환 자금 지원, 보훈병원 건립 및 증축, 어린이병원 설립, 한·양방협진체계구축
○ 필수 보건의료 체계 구축	9,545	· 재활센터 건립, 전염병 격리병상, 응급의료 및 혈액체계관리개선, 경찰병원 지원
○ 보건의료 기초 인프라 구축	2,112	· BCG 백신생산시설 신축, 희귀난치성 정보체계 구축, 병원감염 감시체계 구축, 국립암센터 연구소
○ 경영혁신 효율화	1,996	· 경영진단 평가, 공공보건의료기관 e-Health, 기술·자문지원

## □ 재원별 규모

○ 국비(3조 2,658억원)는 일반회계, 농특, 재특, 기금 등으로 구성

※ 일반회계 1조 2,988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946억원, 농특 3,199억원, 재특 900억원, 응급기금 3,060, 산재기금 1,328억원, 보훈기금 237억원

## □ 투 용자계획의 조정

○ 매년 재정여건, 사업의 타당성, 추진실적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투 용자계획을 조정

- 지방재정의 현실과 사업별 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 수준으로 조정

○ 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투자계획은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강화

## 2. 추진일정

- '05년(종합대책 확정 등 정책결정단계) : 분야별 예산결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관련연구 수행
- '06년~'09년(정책 추진 단계) : 사업별 예산확보 및 추진, 주기적 점검 및 보고, 필요시 보완 조치
- '09년(평가 및 보완) : 종합대책 추진 결과 평가와 필요시 2단계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주요사업별 추진일정(로드맵) >

주요 과제	1단계('05)	2단계('06 ~'08)	3단계('09)
<b>1.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b>			
<b>1-1. 국가중앙의료체계 설립</b>			
○ 기본계획 확정	-마스터플랜 수립		
○ 이전부지 선정 등 건축	- 부지선정	- 건축	- 시범가동
○ 국가중앙의료체계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	-법안 마련	-법률 시행	
<b>1-2. 적정진료 방안 마련 및 확산</b>			
○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질 표준 확산 및 실행을 위한 체계 구축 -기준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장기적으로 질 표준과 평가 및 심사의 연계방안 마련	○ 기반구축 -기준 개발 TF 구성 -기준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안 수립 -기준 마련을 위한 의학회, 임상학회, 정부기관 등 협력 체계 구축	○ 개발단계 -기준개발 전문기관 설립 -기준개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외국연수프로그램 개발·실행 -근거중심 방법론을 적용한 기준 개발 -진료기준 승인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활용단계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표준을 활용한 집중평가지표 선정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피드백 결과를 토대로 장기 발전방향 모색

<b>1-3.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b>			
○ 국립대학병원설치법개정 ○ 공공보건의료사업부 설치 근거 마련	-방안 마련 -	-법제도 보완 및 시행 -관계기관 협의 및 병원별 정관개정	
<b>1-4.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확충</b>			
○ 이전·신축 ○ 지역거점병원 현대화 ○ 임직원 전문성 강화 ○ 경영진단·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개소 -개보수 4개소, 장비보강 4개소 등 지원 -1,000여명 교육훈련 -경영진단 실시 -상반기 제정·시행 -관리권 이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매년 2~3개 공공병원 대상 지원 -매년 3~4개 병원 지속 지원 -교육훈련 지속 실시 -발전방안 처방 및 우수기관(상위10%) 인센티브 제공 -운영평가, 지도·지원 강화 및 제도보완	
<b>1-5. 농어촌 보건기관 현대화 및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b>			
○ 농어촌 보건기관 현대화 - 보건(지)소, 진료소 신·중축 -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 개선 - 보건(지)소 등 방문보건 차량지원	-289개소 -73개소 -	-588개소 -213개소 -153개소	-196개소 -79개소 -52개소
○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운영 후 확대운영	-모형개발, 4개소 -	-시범사업확대(4→10개소) 및 성과평가 -64개소 신축	-본사업으로 추진 -32개소 신축,
○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20개 보건소)	-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	-건강증진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지역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실화)
<b>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b>			
<b>2-1. 병상자원의 수급 적정화</b>			
○ 병상자원관리법령 보완	-법령(안) 마련 및 의료법 개정	-제도 시행	
○ 국가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및 지역병상 수급계획 평가·조정	-지역병상수급계획 평가·조정·시행 -“병상수급계획수립 및조정에관한규칙”	-매4년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지역병상수급계획 주기적 수립·시행	

	<p>제정</p> <p>-병상자원 적정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수행</p>	<p>-1년마다 집행실적 평가·반영</p> <p>-병상자원 적정 관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p>	
<b>2-2. 일차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b>			
<p>○일차보건의료인력의 양성</p> <p>-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등 인력 매년 확대 유도</p>	<p>-일차보건전공의 확보 : '04(400명) → '05(441명)</p>	<p>-매년 10% 수준 이상 증원 유도</p>	
<p>○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p> <p>-공중보건의 배치 적정성 평가</p>	<p>-증장기인력추계 및 효과적 활용방안 전문연구</p> <p>-공보의배치기관 대상의 적정성 및 평가</p>	<p>-배치지역·기관·인력관리등의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개정</p>	
<b>2-3.노인질환 및 요양보호 기반확충</b>			
<p>○ 장기요양병상 확충사업 실시</p> <p>-중소규모병상의 장기요양병상 전환사업 용자·지원(제특)</p>	<p>-62개소 5,186병상</p>	<p>-125개소12,686병상</p>	<p>-145개소15,036병상</p>
<p>○ 요양병상 시설·인력기준 마련</p>	<p>-요양병상 시설·인력 기준(안) 마련</p> <p>-장기요양수가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제특 지원병원 포함)</p>	<p>-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인력 기준 확정</p> <p>-의료법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p>	
<p>○ 노인보건의료센터 설립</p> <p>-대학병원 중심 센터건립</p>	<p>-2개소설계(3년사업)시작</p>	<p>-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전문병원과의체계적 정립 후 확대</p> <p>-노인보건의료센터는 노인질환의 심층진료·전문인력양성 등을 담당</p>	
<p>○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확충</p> <p>-노인의료복지시설 10년 계획에 따라 추진</p>	<p>-8개소건립(개소당 평균 60병상)</p>	<p>-년평균 6개소 건립지원</p> <p>-'09년까지 총85개소(7,734병상)건립</p>	

<b>2-4. 저출산대비 어린이병원 설립 및 진료여건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li> <li>- 병원건립지원 세부계획 마련</li> <li>- 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및 신규건립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용역 추진</li> <li>-기존병원 시설장비 보강(1개소)</li> <li>-신규건립(1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09년까지 3개소 건립</li> </ul>
<b>2-5. 지역단위 암관리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암센터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소 추가지정으로 6개소로 확대 예정 (각센터당 국비100억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암환자 관리 체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에 재가암환자관리팀을 구성</li> <li>-재가암환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총2,440백만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공공병원, 호스피스 기관,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망 구축을 통한 관리의 체계화</li> <li>-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치료약품 간병용품 등 소모품 지원강화</li> </ul>
<b>2-6. 양한방 표진협진을 위한 한방진료부 설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거점공공병원 한방진료부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도 수요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3개소에 한방진료부 설치</li> <li>-우수협진사례 모형 개발(R&amp;D)</li> <li>-모든 지방의료원에 설치 확대('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지원</li> <li>○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li> <li>○ 한방보건센터 설치</li> <li>○ 한방지역보건사업단 운영지원</li> <li>○ 한방지역보건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개 보건소 선정</li> <li>-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655개소에 필수 장비지원</li> <li>-평가단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범운영 결과 확대 지원</li> <li>-한방필수 의료장비 확대 지원</li> <li>-한방프로그램개발·운영, 기술지원</li> </ul>
-177개보건소 지원		
<b>3.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b>		
<b>3-1. 학교보건사업의 적극 발굴 및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보건사업 확대</li> <li>○ 건강실태 및 요구도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보건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li> <li>-정책연구 실시</li> <li>· 건강실태 조사</li> <li>· 표본설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보건법 개정 및 시행</li> <li>· 학교보건 중·장기 계획 수립</li> <li>-정기적 실태조사 및 요구도 조사(490교)</li> <li>· 중·장기 학생 건강목표 설정</li> </ul>

○ 다양한 학교보건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개발 · 4개 과제 (시도별 초·중·고별 각 1개교)	· 실태조사 결과 및 요구도 사업 수행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보급 · 개발된 프로그램 시범적용 (지역교육청별 초·중·고별 각 1개교) · 시범운영 결과 일반학교에 보급
○ 보건교육 강화	-실태조사 추진 · 2개 과제 (제도개선 추진)	-정책연구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정책연구 추진 ·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추진
○ 학교신체검사제도 개선	-학교보건법 개정 · 학교신체검사규칙 개정	-개선된 학교 신체검사 적용 · 학교 신체검사 순응도 조사
○ 학교보건 지원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관계부처 협의 · 법령개정 추진	-학교보건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 학교보건 전산망 구축 및 운영 -시·도교육청 학교보건기획단 구성 운영
○ 학교보건 인력확충	-정책연구 추진 · 직무분석 및 배치 기준 등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 · 보건교사 등 배치기준 및 양성제도 개선 등
○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간의 MOU 체결	-MOU 체결 · 재정투자계획 수립	-MOU 체결 보완·시행 · 재정투자계획 수립

### 3-2.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강화

○ “안전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제2차 산재예방 5년계획 (‘05-’09)	-Action Plan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정비(5대분야 113과제)		
○ 주요 산업단지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보건관리체계 구축	-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수정·보완 -사업장 대상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 반영	’06년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산업단지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수행·평가 후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간 바람직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시행	
○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간 MOU 체결 및 관계 법령 정비	-MOU 체결 · 재정투자계획 수립	-관계법령 정비 추진	

	· 관계법령 정비내용 협의·확정		
<b>3-3. 건강검진 자료 건강증진사업 활용</b>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용을 위한 건강보험건강검 진 DB자료 구축·활용	-법적 근거 마련을 위 한 산업안전보건법 규 개정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한국산업안 전공단에 건강보험건강검진 DB 구축 및 근로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에 활용	
<b>3-4. 정신보건체계 확충</b>			
<b>3-4-1. 정신보건 관리체계 강화</b>			
○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선별도구 개발 및 수 요조사	-사례관리 2개권역 /연간 200명 -통합관리지침 개발	-사례관리 5개권역/연 간 600명 -평가 및 확대
○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 및 연 계체계 구축	-지역자원과 국립정 신병원간 협력방안 마련	-지역사회정신보건 자원 확충  -민간병의원 병상 현상유지	-광역형 정신보건센 터 4개소 설치 -정신보건센터, 사회 복귀시설 알코올상담 센터 각 15개소 증
○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 예산확보 추진	-설계 및 건축	-준공
<b>3-4-2. 국립서울병원의 정신보건연구 활성화</b>			
○ 정신보건정보망 구축 (신지식 및 신기술 제공)	-5개 국립병원에 정 보화 전략계획(ISP) 구축	-정신질환 에 관한 연구 -EMR, OCS 등 진료정보화체계 구축	
○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국 정신보건연구 기관의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 파악	-연구과제 분담 및 연구성과 공유체계 구축방안 마련 -임상연구센터 설치	-연구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화
<b>4. 필수보건의료의 국가적 공급시스템 완비</b>			
<b>4-1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b>			
○ 예방가능 응급실 환자 사망율	40%	30%	20%
○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100개소	440개소	256개소
- 응급의료시설 확충	14개소	42개소	14개소
○ 응급의료 대불사업 추진	1,700명	6,000명	2,500명
<b>4-2. 혈액안전관리 :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04.09.21) 대로 추진</b>			

<b>4-3. 전염병대응체계 강화</b>			
○ 고위험 신종전염병 대비체계 - 격리병상 확충 - 음압유지시설비 지원 - 음압유지시설 유지비 지원		- 400병상(100%) - 400병상(100%) - 400병상(33%)	- 400병상(100%) - 400병상(100%) - 400병상(67%)
○ 전염병관리 행정체계 강화 - 실험실 장비지원	-	- 17개소(60%)	- 17개소(40%)
<b>4-4. 권역별 재활센터 건립</b>			
○ 인천재활병원증축	- 50병상(50%)	- 100병상(100%)	-
○ 강원재활병원증축	-	- 100병상(100%)	-
○ 중부권재활병원신축	-	- 150병상(50%)	- 150병상(50%)
○ 제주재활병원증축	-	- 100병상(100%)	-
○ 호남권재활병원신축	-	- 150병상(50%)	- 150병상(50%)
○ 영남권재활병원신축	-	- 150병상(50%)	- 150병상(50%)
<b>5. 특수기능병원의 공공의료 확대</b>			
<b>5-1. 군 병원</b>			
○ 민간응급/외래진료 시행 - 근거규정 정비 - 초기개설준비 - 소외계층 환자등 대민진료 활성화	-“ 군 병원 공공의료법” 등 제정검토 -전방 7개 병원부터 진료방안 강구 -연15,000명	-규정 제정·시행 -13개 병원으로 확대 -연20,000명의 진료실시	
○ 군특수의학 활용(잠수병치료센터) - 초기개설준비 - 해양의료원 시설 보강 - 3개 치료센터 추가 운영	-관련예산 확보 -관련예산 확보	-시설/장비/물자/운영 -시설/장비/물자/운영	
○ 화생방, 신종특수질환 전문병원 신축 - 초기개설준비	-300 병상(일만200, 격리:100)운영 예산 확보	-시설부대비 지원 -위치선정/부지매입/설계 및 시설공사	
<b>5-2. 경찰병원의 공공의료기능 강화</b>			
○ 의료장비임차료 PACS, EMR, OCS 교체 (5개년 총167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및 장비도입	
○ 응급·외상·화상진료기능 강화 등 전문병원 육성	-장비구입비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	-관련장비(74종 135점)연차적 도입	

	-관련과신설 및 인력확보	-진료과 신설 및 전문의 충원	-관련 시설장비 도입
○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등 필수노후장비교체(15억원)	-연차별 장비구입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		
○ 검진기능 강화	-검진센터확장예산 확보	-확장공사 완료, 소요장비 구입	-1일 250명 검진
○ 소방직공무원 진료전담병원 추진	-진료근거법 마련 -예산 및 인력(200명) 확보	-진료근거법 시행 -인력 충원	
○ 재난의료구조팀 운영	-계획 수립	-인적구성, 교육 시행('06)	
<b>5-3. 보훈병원의 공공의료기능 강화</b>			
○ 보훈중앙병원 건립	-설계공사	-착공·준공('09)(800→1,400병상)	
○ 대구병원 200병상 증축	-보훈공단법 개정	-준공('06)(300→500병상)	
○ 참전군인 질병조사연구	"	-연차별 연구역량 강화	
○ 위탁진료비 심평원심사위탁	"	-심사·평가및 제도개선	
○ 보건소 진료비 감면	전국 시군구 확대	-지속실시	
○ 공공치매병원등 진료참여	부처 협의	-진료참여 시행	
○ 국립의대교수 보훈병원 겸직	부처 협의	-시행 및 평가	
<b>6. 공공보건의료 운영의 효율화</b>			
○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설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설치(연구원14명참여)	-농특사업, 공보의운영 등 기술적·집행적 성격의 사업 위탁 수행 및 연구자문 등을 위한 운영 효율화	
○ 지역보건의료지표·공공보건의료지표 등 개발	-연구용역 실시 -지표에 대한 공감대 확산	-평가지표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와 지표 등을 실시하고, 동 평가결과에 지원을 연계할 제도화	
○ 경영진단·평가	-평가체계 개발	-연평균 40개 기관을 경영진단	
○ 정책조정체계 구축	-「보정심」에 「공공보건의료 전담분과위」 구성 협의	-관계부처·전담분과위·국정과제위원회등간의 업무협조·연계 및 조정체계 운영	
<b>□ 공공보건의료 정보화</b>			
○ EMR시스템 구축	-ISP수립	-시범 3개소 구축 후 51개소 확산	
○ Web-PACS시스템 구축	-ISP수립	-6개소	
○ 정보연계센터 설립	-설립모델 수립	-센터설립	
○ 국가보건자원정보시스템 개발	-	-시스템 설계·개발	

### 3.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2-9-1.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과 효율화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
2-9-2. 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장기요양시설 확충 실적
2-9-3 예방중심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평균수명
2-9-4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응급, 혈액, 재활 등 필수공공재 국공급기반 확충실적

## 갈등관리체계 구축

2006. 10

■ 소관부처 : 국 무 조 정 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 요약 >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갈등이 누적되면서 그 양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추세
  - 억압형 → 잠재형 → 표출형 → 확산형으로 갈등양상이 변화
  - 합리적 협상과 이익의 조화보다는 감정적 대립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들이 노출
- 시스템 차원에서 갈등관리 없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곤란

### II. 현황과 전망

-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주요 국책사업들의 추진이 중단되어 막대한 예산 손실 및 시간 낭비를 초래
- 최근 원전센터 부지선정과 관련된 갈등이 해결됨으로써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관심이 고조
  - ⇒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대한 실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갈등의 폭 및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III. 비전과 전략

-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도입·운영을 통해 사회통합 실현

- 갈등관리 프로세스 개발을 통해 체계적으로 갈등을 관리
-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법·제도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의 정착 유도

## IV. 중점 추진과제

### 1.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정책의 전 과정에 적용되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공공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정책결정전 : 갈등영향분석·참여적 의사결정방법, 정책결정후 : 갈등조정회의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 공공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규제협상 등
-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전문가 양성·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
-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

## 2.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 운영

□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7조~제19조

□ 형태 : 공법인(정부출연기관)

□ 기능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해결프로세스 지원
  - ※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회의
- 프로세스별 매뉴얼 제작
- 갈등관리 관련 정책사례, 법·제도 등의 조사·연구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관련 전문가 양성
- 민간부문의 갈등관리 관련 활동 지원

## 3. 법 · 제도 개선

□ 공공개발 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 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추진(2005년)
- 3차례의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개선정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청와대 서면보고 후 세부과제별 추진

□ 주요정비안 : 5개부처 10개법률 개정안 제안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강화

- 연안의 통합적 관리 강화
- 자연자원의 적정한 배분과 이용
- 공유수면 매립제도 개선
- 국가환경계획과 국토계획간의 대화체계 구축

□ 추진시기 : 2006년이후 부처별로 개선추진

## V. 추진체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갈등관리법 제정	○	→	→	→	→
갈등관리지원센터		○	→	→	→
법·제도 개선	○	→	→	→	→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결정(decide) ⇒ 발표(announce) ⇒ 방어(defense) 순으로 추진된 기존의 정책추진 방식이 한계에 도달

-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합의형성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책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요소
- 따라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대두

□ 사회적 합의형성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책결정기간을 다소 길어지게 하는 측면은 있지만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적 비용과 희생을 줄여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

※ 새만금, 천성산 터널문제 등도 정책결정 후 집행과정에서 관련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

□ 공공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적용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03.10-'04.1)
-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님께 연구내용 보고('04.2.12)
  - 대통령님께서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시
- '지속위'에서 시스템 구축방안을 대통령님께 보고('04.9.30)

## 2. 필요성

- **우리사회는 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갈등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현상이 발생**
  - 처음에는 노사갈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환경·교통·전력·항만·댐·건설·식품 등 사회 쏠분야로 확산
- **참여요구의 폭발 속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미비하여 참여제도의 위기가 지속**
  -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거나 탈법적인 형태의 의사표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 **사회변화에 걸 맞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합의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

## 3. 기대효과

- **대화와 타협,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긍정적 효과**
  - 갈등의 예방·해결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시간 낭비 방지
  - ⇒ 참여를 바탕으로 한 갈등의 원만한 예방·해결을 통한 민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 < 해외 사례 >

### □ 개요

- 미국은 20년이상 갈등조정경험이 축적되고 사회적·인적기반이 다져진 상황에서 갈등관리가 정부의 기구화·제도화 단계로 진입
  - 공공·민간분야의 갈등해결서비스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 중

### □ 관련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1996)
    -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DR)을 적극 권장하는 법
  -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법(The Negotiated Rulemaking Act, 1996)
    - 연방행정절차법(46년제정)상 告知와 書面意見提出 방식에 의한 규칙 제정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는 데 한계점을 노출
    - 告知前에 핵심 이해관계인간 협상을 통해 규칙초안을 마련함으로써 규칙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
- ⇒ 갈등해결에 있어 상기 두 법의 적용여부는 행정청이 판단

### □ 갈등조정 지원기구 현황

#### < 범정부차원 >

- 법무부 주관으로 「Interagenc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orking Group」을 운영 중('98.5, 대통령 훈령에 의해 설립)
  - 정보교환, 공동교육훈련, 프로그램 보고·평가 등을 수행

#### < 부처차원 >

- '90년대 후반부터 농림부, 환경청, 에너지부 등에 부처별로 정부 기구 형태로 「갈등예방 및 해결센터」를 설치·운영
  - 분쟁해결 정책개발·시행, 교육훈련, 갈등해결시스템 디자인, 분쟁발생시 적절한 중재자 추천 등 지원

#### < 주 차원 >

- 주정부산하, 주의회산하, 주대법원산하, 국립대학교 부설 등 다양
  - 오하이오주의 「분쟁해결 및 갈등관리위원회('88년 설립)」는 주·지방 정부, 법원, 학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분쟁해결 프로그램 개발·지원 △분쟁해결 지원서비스를 실시

## II. 현황과 전망

### 1. 현 황

-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주요 국책사업들의 추진이 중단되어 막대한 예산 손실 및 시간 낭비를 초래
- 최근 원전센터 부지선정과 관련된 갈등이 해결됨으로써 공공 정책에 있어서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관심이 고조
  - ⇒ 갈등의 예방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로 갈등예방·해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갈등관리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확산

### 2. 전 망

-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대한 실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갈등의 폭과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이로 인해 정책추진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전반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분열이 발생해 사회통합이 어려워져 국력 상실을 초래

## III. 비전과 전략

### 1. 비전과 목표

-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통합 달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갈등관련 관행을 개선

□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체계적인 갈등 관리**

- 갈등예방·관리 프로세스 설계

□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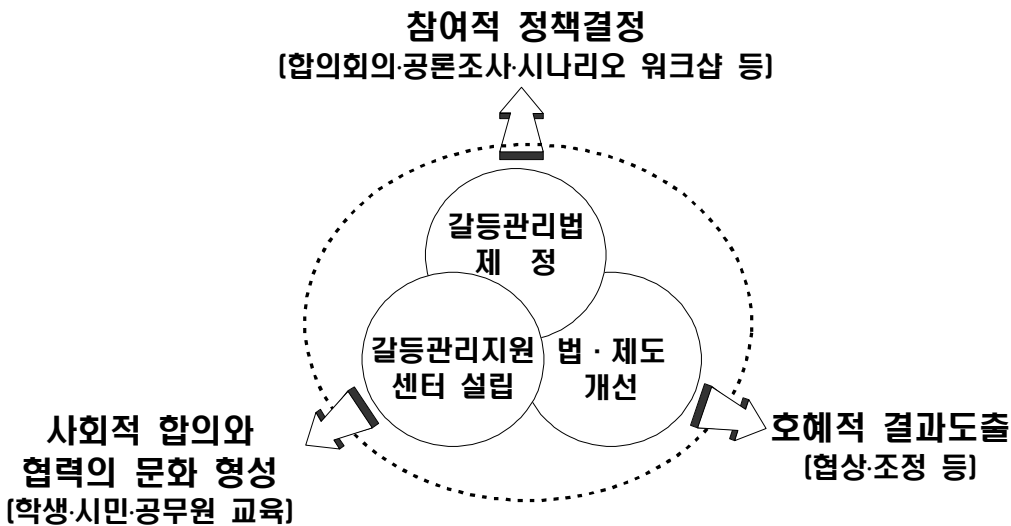
- 갈등관리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한 갈등연구 및 교육훈련 강화
- 학생,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강화

□ **법·제도 준비를 통한 효율적 갈등관리시스템의 정착**

- 사회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제고

2. 추진전략

**선진국 갈등관리 프로그램 중 우리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적극 도입**



## IV. 중점 추진과제

### 1. 추진과제 선정배경 및 결과

#### □ 범정부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관리 능력 강화와 협상능력의 선진화를 도모

#### □ 갈등관리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특별기구들의 설치 및 지원 확보

- 갈등관리 관련 정책 자문·지원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기 위한 기구 설립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

###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

#### □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이후 정부의 국책사업은 물론 자치단체의 혐오시설·재개발사업 등이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거나 장기간 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
  - 이러한 사례 중에는 공청회·설명회·간담회 등 기존 법상의 의견수렴 제도와 설득·자문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
- 이제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공공기관이 새로운 주민참여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핵심은 정책의 내용만큼 중요해진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형성'을 도출하는 것
    - ※ OECD에서도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정보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로 분류하고 있는바 기존 법제도는 정보제공과 협의단계의 참여제도에 해당

- 일부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주민참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갈등관리시스템의 필요성 및 실효성 입증
- ※ 8.31부동산대책(재경부)시 공론조사 활용
-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문제(울산 북구청)를 시민배심원제로 해결

## □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 제정취지

-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주민참여제도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 동법의 대상 : 공공기관의 공공정책 등(공공정책 · 사업, 법령 제 · 개정)

- 공공기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정책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간의 갈등
- 행정절차법 · 환경분쟁조정법 등 개별법에 의해 갈등해결이 가능하면 그 법을 먼저 적용함

## □ 주요내용

### ○ 갈등영향분석

- 행정기관이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심각한 갈등유발 우려가 있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파악'하는 절차
  - 먼저 핵심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직접 찾아가 개별 면담(30분-1시간)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파악
  - ※ 공무원이 할 수도 있으나, 복잡한 사안은 중립적인 제3기관 (대학, 연구소등)에 의뢰하여 시행 가능
  - ※ 세부절차 : 갈등영향분석 계획수립 ⇒ 설문지 작성 ⇒ 해관계자 면담 등영향분석서 작성(필요시 공람)
- 공공기관은 쟁점사항, 갈등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해관계인은 정책학습, 의견반영,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설치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구성 : 민관합동 11인이내 (위원장은 민간인)
- 갈등영향분석서를 공공기관의 차원에서 검토·심의하고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능력 향상(교육훈련, 법제정비등)을 위한 자문 역할

##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시민, 전문가등이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학습·토론하고 합의를 형성하여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방법
  - 공공기관의 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하여 제안된 대안을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성실히 반영
- 주민이 정책대안 형성과정에서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는 청문회 등의 방식보다 한 단계 진전된 방식
  - ※ 종류(예시) :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규제협상 등

## ○ 갈등조정회의

- 공공정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안별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 조정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이 기존 행정기관의 것과는 다름
  -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제3의 조정자를 선임하고 기본규칙(Ground Rule)을 제정하여 조정을 하는 방식
  - ※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도 행정프로그램에 대해 민간인 중재방식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
  - ※ 민간인중재방식의 대표적인 공공갈등 해결사례 : 미국의 시애틀 인근 상습침수지역인 스노퀼미강 주변의 홍수방지대책(1974)

## ○ 갈등관리지원센터

- 형태 : 공법인(정부출연기관)
- 주요기능
  - 갈등관련 정책·문화·제도·법령 등의 조사연구
  - 공공기관의 동법의 절차 적용지원, 매뉴얼 개발
  -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관련전문가 양성
  - 민간부문의 갈등관리 지원
- 필요성
  - 민간전문가 및 관련기관이 거의 없는 초기단계에서는 구심점 확보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주도로 갈등관리 연구 및 지원이 바람직
  - ※ 공공갈등 관리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초기에는 시장창출과 수익모델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전문가가 양성되고 제도운영의 경험이 축적되면 향후 민간 부문으로 기능이양이 가능
  - ※ 갈등프로세스연구는 센터에서, 분야별갈등사안의 연구는 출연연등에서 수행하는 협력체제 구축가능

## 3.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 전 분야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인프라 구축은 취약한 상황
- 정부에 분쟁조정기구는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갈등관련 전문기구가 없음
- 갈등전문연구기관은 거의 없고 민간의 일부 연구소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도

- 갈등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취약한 수준
  -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갈등관련 교육을 시행

**□ 개선방안 : 지원센터를 갈등관리법에 규정, 설립 추진**

- 설립필요성 : 갈등관리체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갈등예방과 해결 프로세스별로 지원이 가능한 전문적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
  - 갈등해결은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정한 프로세스가 중요한 바, 갈등관리 지원, 매뉴얼 제작, 교육훈련 등 전문기관의 지원 필요
  - 인적·사회적 인프라가 적박한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구심점과 강력한 추진력 확보
  - 갈등예방·해결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확산하고 갈등해결 서비스 시장 창출 유도
-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7조
- 형태 : 공법인(정부출연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사업진흥원 등과 유사
- 소속 : 국무조정실
- 기능 :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지원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 등 조사·연구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지원
  - 갈등영향분석·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지원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지원
  - 민간부문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활동의 지원 등
- 인력 : 약 75명(연차적 선발)

○ 조직 : 1실 3부

- 기획운영실 : 기획팀, 운영팀
- 조사연구부 : 정책연구팀, 법제도문화연구팀, 프로세스연구팀
- 교육훈련부 : 교육과정개발팀, 전문교육훈련팀, 시민교육홍보팀
- 갈등관리지원부 : 공공지원 1팀(중앙행정기관), 공공지원 2팀(지방자치단체), 공공지원3팀(정부산하기관)

○ 예산 : 약 90억원

- 예산규모는 최소화 하되 연구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의 집중 배정을 통한 연구기능 활성화 도모

#### 4.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사회가 민주화, 다원화되고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시민의 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분출
  - ※ 국민들의 승복문화의 부재 등 준법의식의 약화,
-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문화의 미성숙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미숙
- 공공갈등이나 분쟁을 야기하는 법제의 유형
  -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이해관계인 등 시민참여와 절차의 기회가 미흡한 경우(절차의 적정성 부족)
  - 법률의 내용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법률의 현실적합성 부족)
  - 법 집행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법 집행의 효율성 부족)

## □ 개선 방안

-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법률 중심으로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법제의 개선 보완방안 도출
  - 이해관계자 등 시민참여 절차 확대 등 의사결정과정의 개선
  -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정보의 공유 확대
- 추진경과
  - 법제연구원 주축으로 관련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기초 연구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3회)를 거쳐 개선방안 최종 마련('05.1~12월)
  - 관계부처 추가협의를 거쳐 10개 법률에 대한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청와대에 서면보고('06.4)
  - 소관부처별로 개선과제를 추진하도록 시달('06.5)
- 주요내용 : 부처별 정비제안 법률 : 총 10개 법률

소관부처	개선대상 법률
건설교통부 (3개)	-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개)	- 연안관리법 - 공유수면매립법
환경부 (2개)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자원부 (1개)	-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자치부 (2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법률(제정)

- 주요 개선과제 내용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절차 보완
    - 댐건설 기본계획단계 수립단계에서 주민 의견수렴 강화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 등
  - 해상경계관련 갈등해소 및 관행수리권 개선
    -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갈등예방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 유수·저수에 대한 허가수리권과 관행수리권의 조화
- 공유수면 매립제도 개선(사정변경에 의한 시정조치)
  - 특별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
- 연안 통합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 연안육역과 해역의 범위 설정기준을 탄력적으로 보완
  -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용도구역 도입
  -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체계 구축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시에 상호고려
  -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한 계획간 연계의 유도

○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 추진 과제	개(제)정 법률	'06	'07	'08 이후	주관부처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확대 등 - 댐건설계획 주민 의견수렴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수렴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주민의견수렴 - 전원개발계획, 산업단지지정 승인 취소근거 신설	댐 건설법		■		건설교통부
	공유수면매립법	■	■		해양수산부
	폐기물시설축진법시행령	■	■		환경부
	전원개발법, 산업입자법	■	■		산자부, 건교부
2. 해상경계갈등해소 및 관행수리권 개선 -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편입 - 댐 저수이용권 개선 - 자치단체 해상경계 관련 근거 마련	하천법	■	■		건설교통부
	댐건설법	■	■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법	■			행정자치부
	해상경계 법률(가칭)	■	■	■	행정자치부
3. 개발과 보전 관련 갈등예방 제도개선 ○ 공유수면 매립·면허제도 개선 등 ○ 연안의 통합관리계획 실효성 확보 ○ 국토계획·환경계획간 연계체계 구축 - 국가환경계획 수립주기 조정 - 사전환경성 검토시 연계 강화	공유수면매립법	■	■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	■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		■	■	환경부
	동법 시행령	■			

## V. 추진체계

### 1. 예산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에 맞추어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추진

### 2. 추진일정

	2006	2007	2008	2009	2010
갈등관리법 제정	○				
갈등관리지원센터		○			
법·제도 개선	○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2006년도 하반기 국회통과 추진

※ 국조실 주관으로 입법추진팀 구성 및 관계부처 협의('05.3.31~4.10), 입법예고('05.4.12~5.2), 공청회('05.4.28), 국무회의('05.5.23), 국회제출('05.5.27), 정무위('05.11.24), 정무위 법안소위논의(11.28, 12.6, 12.8),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 실시('06.3.9)

- 갈등관리지원센터

- 국회 통과 6개월후(경과기간) 개소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동시에 설립위원회·설립준비단 구성·운영하여 예산확보 등 추진

- 법·제도 개선

- 개선안에 대한 보고결과 5개부처 10개 법률에 대한 정비추진 계획에 따라 2006년이후 세부 법률정비 추진

### 3.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2-10-1.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갈등관리법 제정 여부
2-10-2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2-10-3 공공개발관련 갈등예방 법률정비	갈등예방 법률정비방안 추진여부